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투자 유치와 지방재정의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raction for Corporate
Investment in Local Government and the Local Finance

2014. 12

연구진

신 두 섭 (수석연구원)

이 희 재 (수석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진의 견해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서 문

1995년 민선 단체장 선출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재정력 확충이 큰 화두가 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특히 지방세 수입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원의 비율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 건전성 확충 및 재원 확보를 위해 대내외적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과도한 인센티브 경쟁으로 인해 오히려 재정적으로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을 유치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러한 활동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들을 파악해야만 이를 개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이 지방 재정확충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구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 사례조사와 설문조사, 그리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지방재정운용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를 위한 재정지출이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 간 과열경쟁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 단위에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전략과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과제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14년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이 승 중

요 약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이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지자체간 과다 경쟁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으로 직간접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역 단위에서는 기업 유치가 있어 보조금 지급, 조성금 지원, 감세 정책 등 그 유형이나 내용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당근)은 초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어느 정도 성공하였던 것을 기존 연구 등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현실적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 및 해외로 리턴하는 현상이 발행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각종 지원책을 앞세워 기업을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재정적 지원 등)을 순식간에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놓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행·재정적인 지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 왔지, 실제 재정적 지원을 왜 해야 하며, 어떠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실제 기업을 유치했을 때 기업이 얼마나 많은 지방세 부담을 하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에 세입으로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기업의 투자유치는 과열 경쟁에 따른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된다면 편익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로섬 결과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적 차원에서 큰 손해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주의하여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 정책 방향 수립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재원의 투입과 유출의 범주와 시차를 체계적으로 설정한 기업유치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와 지방재정과의 관계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와 함께, 기업투자유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화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첫째, 음성군의 2005년 이후 유치된 8개 기업들을 사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산세나 지방소득세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23.1, 19.1 등으로 높았으며, 자동차세 4.1, 주민세 -21.4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산이나 소득과세 부분의 순증은 인정되나 소규모의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종업원들의 지역 내 유입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규모 기업의 유치에서는 직접적인 세제 지원보다는 세액공제제도와 같이 간접적인 지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실증분석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내 소득 창출과 고용의 역외 유출이 이러한 사례분석에서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8개 기업의 매출액과 4개 주요 세목의 납세 현황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역시 지방소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0.72와 0.69로 4개 세목 중 높은 상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일본의 사례에서는 2006년말 시점의 기업유치보조금이나 조성금의 상한액을 2007년에 일부 지자체가 상향 조정한 경우를 볼 수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차별화 및 독자적 입지우대 조치를 실시하며 입지정보 입수 및 파악에 전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기업 유치를 통해 기업들이 부담하게 되는 지방세수는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 고정자산세(토지, 가옥, 감가상각자산), 사업소세 순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기업유치 노력과 지방세 수입과의 관계 규명을 한 제4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과 지방세 수입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지방세수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 탄력성은 1에 미치지 못하여 탄력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를 얻었다. 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는 지방세수 탄력성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지방세제의 구조적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의 지방세수 탄력성의 변화로 반영되지만, 그 크기는 크게 탄력적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통제변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정도를 반영해주는 취업률을 추가하는 경우, 취업률은 총 지방세수 중에서 취득세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재산세나 주민세의 변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이 지역의 경제력에 미치는

영향(경제력 증가)을 분석한 결과, 지방경제력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 탄력성은 1에 미치지 못하여 탄력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는 지방소비지출 탄력성의 차이가 존재하며 수도권의 탄력성이 높았다. 대도시권과 비도시권 사이에도 지방소비지출 탄력성의 차이가 존재하며 대도시권의 탄력성이 높았다.

아울러 지자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는,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재정에 미치는 편익효과에 대해서는 고용증가, 소득증대, 인구증가, 유관기관 유입의 순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3장과 제4장의 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주민세나 취업률과 같이 실제 인구 유입과 직접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변수들은 상관관계와 탄력성이 낮은 값을 얻었다. 이러한 결론으로부터 중소기업의 기업 유치는 실제 인구 유입과 관련된 세입 부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기업 유치로 인한 지방재정의 비용효과는 인프라설비, 토지조성비, 세금 감면과 보조금지출, 혼잡 및 공해 비용 등의 순으로 비용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비용효과 측면에서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 항목별로 10% 이하로 나타나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재정의 비용효과에 대해서는 큰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과도한 지방정부간 유치 경쟁은 67% 이상이 오히려 재정 감소를 발생시킨다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유치에 있어서 기업들이 선호하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금전적 지원과 국내 대기업 유치가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것은 제3장 및 제4장에서 분석한 결과와 같은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론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업유치와 지방재정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결과로부터는, 기업이 유치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기업 유치는 거

시적 지표들은 증가할 수 있으나, 소비 및 지출과 관련한 지표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가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둘째, 기업유치는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실제 이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지출을 반드시 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것은 본 분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의 결과가 지방세원으로 연계될 수 있는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사후 관리이다. 즉 기업 유치와 함께 지역에서 인큐베이팅 될 때까지의 케어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 기간 동안에 행·재정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기업을 유치 한 이후 케어기간 동안에 어떠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지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
제2장 기업유치와 지방재정에 관한 이론	9
제1절 기업의 지역 유치와 지역경제에 관한 연구	9
제2절 기업의 지역 유치와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	14
제3절 기업과 지방재정 관계 규명에 대한 논의	19
제4절 소결	24
제3장 기업유치와 재정과의 관계에 대한 제도현황과 사례분석	27
제1절 법·제도적 현황 분석	27
제2절 국내·외 사례 분석	59
제3절 국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78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와 지방세 수입관계 분석	81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와 지방세 수입관계 분석	8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와 지역경제력의 관계 분석	96
제5장 기업유치와 지방재정간 관련성에 관한 설문조사	109
제1절 조사의 개요	109
제2절 설문조사의 분석 내용	110

제3절 설문조사 결과로부터의 시사점	123
제6장 결 론	125
제1절 기업유치와 지방재정 관계 규명에 대한 분석 결과	125
제2절 분석 결과들을 통한 시사점	128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계획	130
【참고문헌】	132
Abstract	137
【부록】	139

표 목 차



〈표 2-1〉	선행연구 종합	24
〈표 3-1〉	국세 분류	27
〈표 3-2〉	지방세 분류	28
〈표 3-3〉	지방세목 변화 추이_통계청	30
〈표 3-4〉	지역별 국세 변화 추이	33
〈표 3-5〉	지역별 지방세 변화 추이 (결산기준)	34
〈표 3-6〉	지방소득세 과세물건별 과세현황(단위 : 억원)	37
〈표 3-7〉	지방세목 중 법인관련 항목	38
〈표 3-8〉	기업 관련 지방세 비율	39
〈표 3-9〉	기업관련 지방세 세액의 지역별 현황 (2008년 결산)	40
〈표 3-10〉	기업관련 지방세 세액의 지역별 현황 (2009년 결산)	41
〈표 3-11〉	기업관련 지방세 세액의 지역별 현황 (2010년 결산)	42
〈표 3-12〉	기업관련 지방세 세액의 지역별 현황 (2011년 결산)	43
〈표 3-13〉	기업관련 지방세 세액의 지역별 현황 (2012년 결산)	44
〈표 3-14〉	산업단지 지정 및 관리현황('13.4/4분기 기준)	48
〈표 3-15〉	산업단지의 법적근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49
〈표 3-16〉	지방투자 활성화 관련 지원제도	50
〈표 3-17〉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내용	51
〈표 3-18〉	기업이전 지원기준	53
〈표 3-19〉	국가보조금의 비율 변화	54
〈표 3-20〉	지자체별 입지보조금	54
〈표 3-21〉	지자체별 투자보조금	56
〈표 3-22〉	지자체별 교육훈련보조금	57
〈표 3-23〉	지자체별 기타지원금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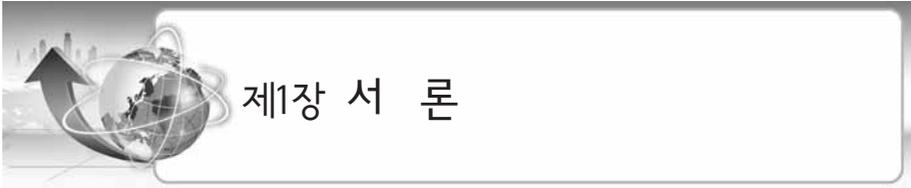
〈표 3-24〉 음성군 인구추이	59
〈표 3-25〉 지역내 총생산 추이	60
〈표 3-26〉 전체 사업체 및 제조업체 현황	60
〈표 3-27〉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체	61
〈표 3-28〉 예산규모 추이	62
〈표 3-29〉 조세징수 실적	62
〈표 3-30〉 이전재원 및 자주재원 추이	63
〈표 3-31〉 수도권내 중소기업 지방이전 시 감면 내용	63
〈표 3-32〉 유치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내용	64
〈표 3-33〉 음성군 8개 유치 기업의 주요 세목별 납세 현황(평균값)	65
〈표 3-34〉 기업유치보조금·조성금 상한액 순위	68
〈표 3-35〉 도도부현·정령시의 기업유치 정책의 실시현황	69
〈표 3-36〉 시정촌의 기업유치 정책의 실시현황	70
〈표 3-37〉 기업이 납부하는 주요 도도부현세의 개요	71
〈표 3-38〉 기업이 납부하는 주요 시정촌세의 개요	72
〈표 3-39〉 주요국의 법인과세의 비교(2008년)	76
〈표 3-40〉 제도 개선의 방향	80
〈표 4-1〉 지방세수의 자치단체 기업유치 성과 탄력성 (2002년~2012년)	87
〈표 4-2〉 지방세수의 자치단체 기업유치 성과 탄력성 (2002년~2012년)	90
〈표 4-3〉 지방세수의 자치단체 기업유치 성과 탄력성 (2002년~2012년)	92
〈표 4-4〉 지방세수의 자치단체 기업유치 성과 탄력성 (2002년~2012년)	95
〈표 4-5〉 지방경제력의 자치단체 기업유치노력 탄력성 (2002년~2012년)	103
〈표 4-6〉 지방경제력의 자치단체 기업유치노력 탄력성 (2002년~2012년)	106
〈표 5-1〉 설문 응답자의 특성	111
〈표 5-2〉 편익효과 문항	112
〈표 5-3〉 비용효과 문항	113
〈표 5-4〉 안정성 문항	114
〈표 5-5〉 지방정부간 경쟁에 관한 문항	115

〈표 5-6〉	지원제도 관심에 관한 문항	116
〈표 5-7〉	선호제도에 관한 문항	116
〈표 5-8〉	지역역량 문항	117
〈표 5-9〉	지방세 감면 문항	118
〈표 5-10〉	부담금감면 문항	118
〈표 5-11〉	입지보조금 문항	118
〈표 5-12〉	기타보조금 문항	119
〈표 5-13〉	금융지원제도 문항	119
〈표 5-14〉	투자환경조성시책 문항	120
〈표 5-15〉	지방재정에 미치는 기업군 문항	121
〈표 5-16〉	업종에 관한 문항	121
〈표 5-17〉	제조업종에 관한 문항	122
〈표 5-18〉	고용유발효과에 관한 문항	122
〈표 5-19〉	고용유발효과 저조 원인에 관한 문항	122

그림 목차



〈그림 2-1〉	재정과 지역경제의 상호순환 매커니즘	16
〈그림 2-2〉	투자세액공제와 투자 확대	22
〈그림 3-1〉	국세 vs 지방세 현황	32
〈그림 3-2〉	국세 vs 지방세 비율	35
〈그림 3-3〉	지방세비율의 연평균증감률	36
〈그림 3-4〉	지방세 비율의 분산값	36
〈그림 3-5〉	지방세 세목별 구성 비율 (2012년)	37
〈그림 3-6〉	지방세 납부 비율	39
〈그림 3-7〉	기업(법인, 공장 등)관련 지방세 납부 규모	45
〈그림 3-8〉	재산세 감면 비율	46
〈그림 3-9〉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기업부담분의 비율(2009년도)	73
〈그림 3-10〉	주요 지방세에 있어서 세수액의 추이	74
〈그림 3-11〉	기업이 부담하는 지방세수의 추이	75
〈그림 3-12〉	법인소득과세의 실효세율의 국제비교 (2011년 7월 현재)	77
〈그림 5-1〉	기업유치 유인책 선호도	12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20여년이 되었으며, 자치단체별 발전도와 재정력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도를 평가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으로 지방의 재정력 확보 문제는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임에 분명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은 공공재 생산과 민간 자본의 투자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이를 세수와 관련해서 본다면 해당 지역에 위치한 기업과 그러한 기업의 생산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들의 지역 발전 전략은 지역의 총생산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우선적으로 민간 투자유치(기업지원, 기업유치) 활성화 전략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세방화 시대의 진전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발맞추어 지역단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노력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국내외 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다. 기업 유치는 국내에서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수도권 기업이나 외국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과 함께, 이를 위한 수단으로 각종 지원책이 지역단위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지역 단위에서는 기업 유치에 있어 보조금 지급, 조성금 지원, 감세 정책 등 그 유형이나 내용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당

근)은 초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어느 정도 성공하였던 것을 기존 연구 등을 통해 기늬해 볼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이와 같은 지원은 결국 자치단체 간 출혈성 지원책으로 지목받게 되었고 성공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또한 유사한 지원책의 출현으로 인해 더 이상 기업들에게 ‘당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 및 해외로 리턴하는 형상이 발행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각종 지원책을 앞세워 기업을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재정적 지원 등)을 순식간에 다시 제로로 되돌려놓게 된다.

기업유치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유치 이후 기업의 납세를 통해 재정적 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일부 보고에서는 이러한 세입에 대한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행·재정적인 지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 왔지, 실제 재정적 지원을 왜 해야 하며, 어떠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실제 기업을 유치했을 때 기업이 얼마나 많은 지방세 부담을 하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에 세입으로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기업의 투자유치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개발에 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지방 세수 확보로 이어져 다시 지역에 대한 재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방에서는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조세지출에 민감하지 않을 것으로 기존 설문들은 언급하고 있다.

만일 지역적 역량을 마련하기 위해 투입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재원들이 비효과적이거나 과대하여 지방재정에 부정적 효과를 야기한다면, 기업유치에 따른 편익이 지방정부가 기대하는 수준보다 낮을 수도 있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지역별 특성을 살려 제반 경제적 조

건을 감안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특히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열 경쟁에 따른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된다면 편익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로섬 결과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적 차원에서 큰 손해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이 입지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당초 계획대로 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가 용이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무리한 재정 투입이 지방재정의 발전에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 간 과열 경쟁을 방지하며, 실제 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 기업유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얼마나 재정적 정(+)의 효과를 얻게 되는지에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에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기업유치 정책 방향 수립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재원의 투입과 유출의 범주와 시차를 체계적으로 설정한 기업유치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기업이전 및 신규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투자유치가 지방정부 보다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논의가 있다. 기업을 유치하는 주요 목적과 범위, 투자재원 등의 기업유치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을 검토하여 정부 간 역할 및 입장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에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으며, 꼭 필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증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방세 감면 등의 유인책에 들어가는 비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세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일정부분의 투자를 위한 감세 등 비용은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며, 이 비중이 크면 클수록 지자체의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한 사례에서는 이러한 과도한 유인책 비용이 과다 투입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회수(지역경제 활성화의 실패)가 부진하여 그대로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한편,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소요되는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원의 지출로서 앞선 조세감면과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세감면은 간접지원이지만, 보조금 지급은 직접 보조로서 그 규모 또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물론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지는 개별 지자체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으며, 단체장의 기업유치에 대한 마인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정책이 과열되다 보니 과도한 지원으로 인해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 세입인 조세(국세 및 지방세)와 보조금(국비 및 지방비)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와 지방재정 간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와 지방재정과의 관계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기업투자유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화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시사점을 도출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방정부의 투자유치노력이 성과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그 성과가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정도는 실제적인 운영상의 문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현실적인 특성들은 양적 분석에 의해 발견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정성적인 부분은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업투자유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안들을 정의하고, 또한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기업투자유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

향 요인들의 중요도를 규명하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정책적인 시사점은 무엇일까, 즉, 지방의 기업유치가 지방재정과 어떠한 관계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이 결과를 통한 지자체의 재정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 국내외 지역의 기업유치 사례를 통해 실제 기업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재정적 지출(조세 지원 및 감세, 조성금과 지원금 등)과 세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분석하여 관계 규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한편, 일본의 사례에서는 실제 세부 자료 구득이 어려워 광역 단위의 기업의 세부담 및 유치를 위한 지원책 등에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기업유치와 지방재정과 관계 규명을 위해 실제 지자체의 기업유치 노력과 지방세 수입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산단의 숫자, 면적, 종업원 수, 생산액 등의 생산물의 가치 증가가 지방세 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추정하게 된다. 또한 시간 상호작용변수를 고려한 추정을 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과 지역경제력의 관계 분석을 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는 1인당 민간 최종소비지출이 지역 경제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 값이 산단 수, 산단면적, 가동기업 수, 종업원수, 생산액과 탄력성을 추정하게 된다.

셋째, 마지막 제5장에서는 기업유치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실제 기업유치가 지방재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지에 대한 정성 분석을 하게 된다. 이 분석은 앞선 사례분석이나 실증분석의 보완 분석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추구하는 기업 유치의 유형,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은 다양할 것이다. 따라서 이 유치 노력을 통한 소귀의 목적 달성이전에 발생하는 제반의 장애 요인들이 결국 사업지연과 연관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재정적인 지출로 뒤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는 기업투자사업의 자율권에 대한 논의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과 함께 재정지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게 된다.

결국 기업유치는, 이러한 장애 요인들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한 기업유치의 활성화, 이는 결국 지역의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정(+)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로드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적절한 역할분담은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오히려 이러한 소극적 지원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직, 간접적인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지방재정에 정의 효과보다 오히려 부(-)의 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업유치에 있어 일부 재정적 지원이 국가와 지방, 지방에서는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하며, 행정적 지원보다는 재정적 지원에 포커스를 맞추어 접근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이 연구의 대상은 국내외 사례에 대한 연구와 함께, 실증분석을 함께 하고자 하며, 그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특히 정성적인 상황 파악 및 해석을 위해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설문과 실증분석에서 이용하는 자치단체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시계열데이터를 이용한 제도검토, 사례분석, 지방재정 영향분석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최근 10년을 대상으로 하되 자료 획득의 용이성, 통계처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연구 과정에서 일부 보정된 자료 처리가 있을 수 있다.

2)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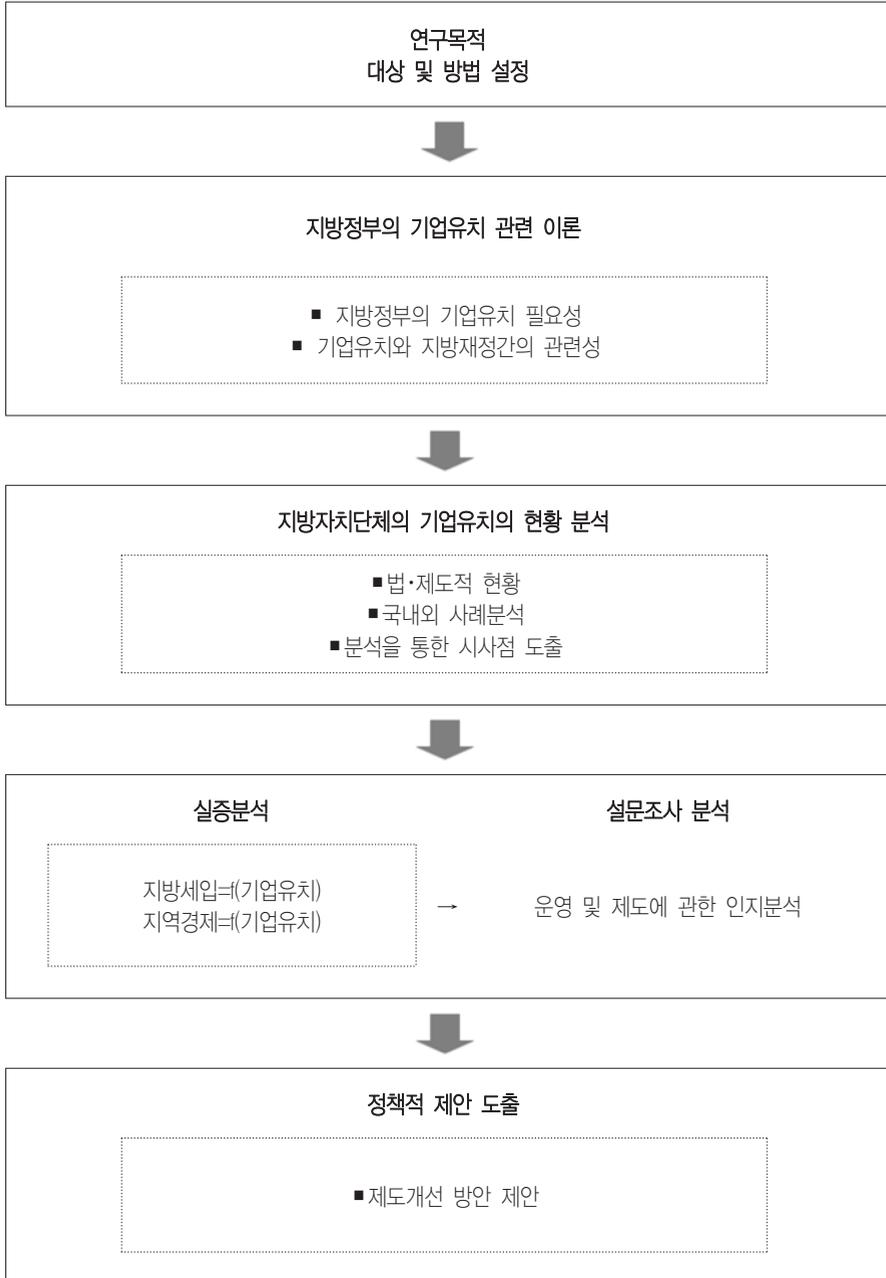
첫째,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지금까지의 지방재정과 기업유치에 대한 연구의 내용 및 진행 방향에 대한 정리 작업과 함께, 이 과정에서 현 기업유치에 따른 지방재정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 속에서 과거 연구에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결론과 연계하여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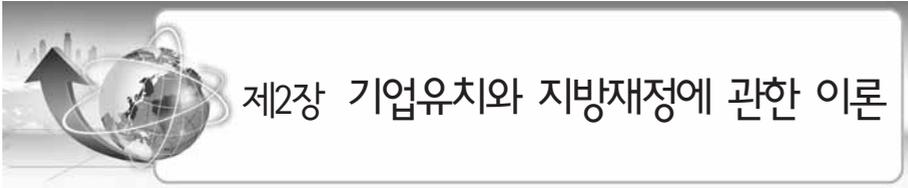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실무 담당자들 중 일부를 선택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 설계에 필요한 내용과 향후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현장의 아이디어를 정리하여 본 연구의 개선안에 포함시킴으로 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 제언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 과정 속에 설문 결과를 전문가 집단과의 일대일 자문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셋째,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방재정 효과 분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증가와 기업유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기업유치를 살펴볼 수 있는 대리변수를 선정하여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전국의 98개 지방산업단지의 실무 담당자(예산, 세무, 기업유치 담당의 지방공무원 등)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크게 지자체의 기업유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재정적 측면에서의 ‘유치정책’, 유치된 기업을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구분하여, 지금까지의 투자유치 노력, 방법, 저해요인,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3) 연구의 흐름





제1절 기업의 지역 유치와 지역경제에 관한 연구

1) 기업의 지역 유치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기업의 투자는 최적자본스톡이론, 가속도이론, 토빈의Q이론 등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나 지역투자는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으로의 입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지리학의 입지이론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대표적 입지이론으로 Porter(1990, 1998)의 경쟁우위이론과 Hayter(1997)의 입지이론이 있다.

Porter(1990, 1998)는 클러스터, 지역, 국가 내에서 기업의 경쟁우위를 결정짓는 원천을 네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째는 노동력, 토지, 천연자본, 자본, 인프라 등 생산요소조건이며, 둘째는 세분화된 소비자의 존재, 전문분야의 수요 등 수요조건이며, 셋째는 지역 내 부품 공급산업의 존재 등 관련 산업 또는 지원 산업의 존재이며, 넷째는 기업의 전략 및 구조 등이다.

Hayter(1997)는 투자 관련 요인을 입지여건(location conditions)과 입지요인(location factors)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입지여건은 기업이 입지하는 지역 간의 차이를 의미하고, 입지요인은 개별 기업이 소재지를 선택할 때 입지여건에 대해 기업이 판단하는 중요성의 정도를 의미하게 된다. 입지여건은 투자환경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시장, 노동력, 원재료, 수송, 세금 및 인센티브, 외부경제, 에너지, 지역 인프라, 자본, 토지, 환경 등이 포함된다.

한편, 집적경제와 관련하여 기업의 입지선택 연구가 이루어져왔는데, 기업이 입지 선택 시에 고려하는 사항은 선택대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외부효과이다.

Marshall(1920)에 의하면 동일 산업의 기업집적에 따른 외부효과는 노동력확보, 부품 및 서비스 확보, 기술이전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게 된다. 대상지역이 가지고 있는 입지조건 등에 따른 외부효과를 극대화하는 하는 방향으로 기업은 입지를 선택하게 된다. 즉, 기업은 신규 또는 추가투자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대상지역별 외부효과를 고려해서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측정하게 된다.

지역경제발전 전략은 역외기업의 투자유치(inward investment)와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을 근거로 하여 지역 내 혁신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역외기업의 투자유치, 특히 쇠퇴·정체지역으로의 유치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지역발전정책의 주요 목표였으나 역외기업의 쇠퇴·정체지역으로의 유치는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단순 생산기능만을 수행하는 분공장 형태의 입지로 나타남으로써 해당 지역에 숙련도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였고, 나아가 지역경제와의 연계도 미미하다는 문제에 직면해왔다(Vázquez-Barquero, 1999).

이후 역외기업의 생산시설이 관리기능 또는 연구개발기능 등을 부여받아 자율성을 얻게 되었고, 규모의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 of scale)와 같은 경쟁이점을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생산시설이 입지하게 됨에 따라, 역외기업 투자와 지역경제 간의 연계가 확대되고 있다. 지역경제와의 연계 확대라는 조건 하에서, 유치된 역외기업은 해당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역내 연고기업으로의 기술 및 지식의 확산 등 긍정적 이전효과(positive spillover)를 일으킴으로써 해당 지역의 생산성 제고와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Driffield, 2004).

그렇다면, 기업이 어떤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생산요소를 투입할 때에 그 생산요소의 투입량(input)과 생산물의 최대생산량(output)간에 성립하는 일정한 기술적 관계를 정의하는 생산함수에 따르면, 기술수준, 노동, 자본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 기업의 지역입지는 지역총생산(GRDP)을 증가시키게 된다. 여기에 인적자본을 강조하는 내생적 성장모형이 사용되고 있고(Lucas, 1988 ; Barro, 1991), 사회간접자본의 경제성장효과를 증명하는 연구도 이미 주장되고 있다(Hirschman,1958).

2) 지역의 기업유치와 지역경제효과

지자체 입장에서 기업유치정책에 열심을 내는 이유는, 유치에 성공할 경우 고용창출, 세수증가 등 지역경제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武者, 2010:108). 이것은 여타 국가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기업입지의 지역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지역산업연관분석, 다지역산업연관모형(multi-region input out model)을 이용하여 생산, 소득 고용 등의 지역 경제활성화 파급효과를 분석하게 된다. 여기서 고용창출효과와 같은 지역경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기존의 연구에는 赤井(2003), 鈴木(2007) 등의 서베이에서 명확히 하고 있으며, 다른 연구에서는 기업유치 정책을 세부담의 경감이나 보조금 교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武者(2008)에서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일본의 칸사이 지역의 기업입지 효과를 계측하였다. 특히 기업 유치를 통해 인구 증가, 고용자 보수 증가(개인 소득증대), 주변지역에 관련기업이 진출하여 새로운 산업집적, 지역경제에 영향이 더욱 증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정의 효과를 얻는다고 할 때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규모의 이익이 창출되는지, 그리고 투입한 비용측면에서 볼 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은 역시 자치단체의 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다.

최외출(1995)의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I-O표 작성에 의한 지역산업연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특히 입지상접근법을 이용하고 있다. 지역산업의 유형화를 통해 지역별, 산업별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를 측정하였다(최외출,1995:99).

조계근·황규선(2004)의 연구에서는 하이트맥주가 흥천군에 입지하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고용증대 효과를 보기 위해 고용형태별 고용실적 추이, 고용증대효과와, 소득창출 및 파급효과를 보기위해 고용형태별 급여액 추이와 소득의 지역파급효과 및 부가가치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거래실적을 검토하였다.

윤갑식(2011)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치기업의 업종선정이 중요하고 실제 지역효과는 건설단계 보다는 운영단계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여야함을 주장하며, 수도권 내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 제조업이 5+2광역경제권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하여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간의 상관관계의 지역별 차이를 보였으며,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양자 간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아 강조하는 효과에 따라 유치업종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기업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조세 및 재정 수단을 포함한 지역입지요인과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투자유인정책 수단들의 자본비용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인 연구는 King and Fullerton(1984), Jorgenson and Landau(1993) 등에 의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도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인식, 196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기간 동안 정부가 시행한 자본소득의 과세와 관련된 각종 정책들이 기업의 투자 및 개인의 저축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1980년대 중반부터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이는 중앙정부의 투자유인제도를 중심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곽태원,1985; 원윤희,1996; 윤건영, 1988¹⁾). 이삼주(2000)의 연구에 따르면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세금감면, 공단면적, 도시집적이익, 기술집약도가 기업유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매출액이 낮은 기업 그룹에서만 세금감면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Blume(2006)은 요인분석을 통해 지역의 기업환경(local business climate)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 9개를 최종적으로 추출하였는데, 이들 설명변수는 ①지방자치단체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②지방자치단체의 혁신 정도, ③산업용지의 가격 및 공급, ④지방자치단체 내 부서 간 협력 서비스 제공 정도, ⑤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경제주체들(상의, 협의, 연구기관들 등) 간 협력 네트워크 정도, ⑥인허가 소요시간, ⑦직적

1) 곽태원(1985), 윤건영(1988): 자본소득세 정책수단들이 기업의 자본비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원윤희(1996): 자본소득세정책이 자원조달 등에 따라서 미치는 효과 분석
윤건영·김종웅(1998): 자본비용의 변화와 투자의 변화를 분석

정도(1인당 인프라투자, 1인당 공공서비스 지출, 1인당 예술 문화 세금 지출 등), ⑧지역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출 정도, ⑨지역 내 민관협력 정도 등임을 고려하고 있다.

박재곤·이원빈(2005)은 기업체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투자의 주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지역투자의 결정요인은 ①공장용지 확보 용이(49.9%), ②생산요소 비용 저렴(47.9%), ③협력업체의 집적(39.9%), ④기업가의 연고지 등 개인적인 요인(31.7%) 등으로 나타났으며, ⑤지역투자 인센티브(15.9%)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기초하여 박재곤외3(2008)는 정책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지역설비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²⁾

박재곤(2010)은 조세, 재정, 기타 인센티브로 투자인센티브를 유형화하고, 기업의 투자결정에 있어서 투자인센티브의 영향력은 낮고 단기적으로 투자인센티브는 유효한 수단이나 비용이 혜택보다 클 수 있는 등의 한계를 내포한다고 주장하였다.³⁾ 시·도별 재정 인센티브(보조금) 규모를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의 내부 자료로 산정하고, 토지는 향후 자산가치 상승 기대가 높은 요소로서 토지 매입비에 대한 인센티브의 폐지 및 비중 축소를 제안하였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조세감면 방식보다 보조금 방식이 투자유치를 협상과정에서 탄력적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⁴⁾

국내 지역선택에 대한 연구인 이기동 외(2008)의 연구결과를 보면 외국인 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동일 산업의 국내외 기업의 집적도, 기업의 다양성, 비즈니스서비스 집적도, 후방연계 기업의 집적도, 고등교육이수 근로자 수, 공단 분양가, 외국인 전용산업단지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김종웅외, 2010). 다만 전방연계기업의 집적도 등 일부 결정요인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부족한

2) 지역설명변수 후보권의 정의 및 측정지표와 자료원천(p100,101)

3) Rondinelli and Burpitt(2000)는 투자인센티브 대신 투자 유치를 위한 대안(공공자원, 산업클러스터, 공공서비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4) 영국의 투자보조금(Grant for Business Investment)는 협상에 의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그 내용은 비공개함(박재곤, 2010, p72).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김승민(2004)에서는 세계 각국의 외국인 투자인센티브 유형을 조사한 UNCTAD(2002)의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선진국의 경우 현금보조금 등을 직접 제공하는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재정이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은 재정에 즉각적으로 부담을 주는 재정 인센티브보다 조세 인센티브를 더 많이 사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병기(2005)는 투자환경 구성요소를 정부가 공식발표하는 정량자료와 612개 기업에 설문한 정성자료를 이용하고 58개 변수를 표준화 한 후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16개 시도별 투자환경지수를 산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①투자환경(0.14), ②인프라환경(0.12), ③지방정부정책환경(0.08), ④정보화환경(0.07)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비수도권 및 도 지역에서 지방정부의 정책 환경을 중시하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다.

제2절 기업의 지역 유치와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

1) 기업유치와 지방재정과의 관계

가까운 일본의 사례에서武者(2010:108)는 일본의 카메오카시의 사례 연구를 통해, 기업입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 접근을 통해 규명하고 있다. 특히 기업유치에 의한 지방세 증수효과를 추계, 유치 코스트 및 유치에 동반된 각종 인프라 설비 코스트와 비교한 유치 효과를 정량적으로 규명하였다.

국내에서는 최영출(1994)은 연립방정식 추계 모형과 감응도 분석을 통해 투자유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지방재정 효과는 노동집약적

인 업종이 자본집약적인 업종 보다 크고 종업원 규모는 작은 100인 이하의 소기업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간 전후방 연관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업종의 재정효과는 오연천(1988)의 주장과 동일한 결과를 얻고 있다.

조계근·황규선(2004)의 연구에서는 투자유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조세 납부실적(국세납부실적, 지방세 납부실적), 사용료 및 준조세 납부실적, 그리고 기업경영 실적과 지방재정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경영 실적 추이와 실적변화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의 탄력성을 보았다. 조계근(2003)은 강원도 폐광지역의 스몰카지노 개발사업지의 조세(국세, 지방세)와 기금(국가, 지방) 납부실적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명희·조계근·변용환(2006)은 홍천군 하이트맥주 공장 직원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과급효과를 추정하기도 하였다.

기업의 투자행태에 미치는 조세유인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법인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업의 규모나 생산비, 매출액 등이 효과 분석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는 재산 가치를 중심으로 과세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감면제도는 재산 가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임을 주장한 연구도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이삼주,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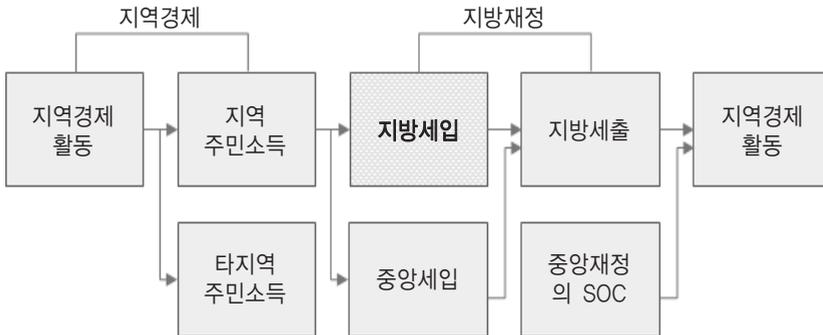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에 관한 연구는 Groves and Kahn(1952)에 의해서 그 발판이 마련되었다. Groves and Kahn(1952)은 지방세 수입은, 지역소득과 지역의 주민 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지방세 수입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지역주민의 소득이 가장 큰 요인이었음을 주장하였다.

지역경제활동의 성과와 지방세수입 간의 연계는 실증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에 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은 제한적이다.

선행연구 중에는 지방세수의 탄력성을 추정함으로써 지방세수 증가와 GRDP 성장 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 들로는 임성일(1991), 오병기(2009), 최병호·주만수(2010) 등이 있다. 산업별 종사자수와 지방세수입 간의 관계를 추정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세수입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는 배인명·양기용(1995), 조택희(2011) 등이 있으며, 지역자산과 GRDP를 지역의 경제력을 반영하는 지표로 삼아 두 변수와 지방세수입 간의 관계를 추정함으로써 지역경제력과 지방세수입 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로는 박병희(2002) 등이 있다.⁵⁾

〈그림 2-1〉 재정과 지역경제의 상호순환 매커니즘



출처 : 지방재정론, 우명동, p39

배인명·양기용(1995)의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해당지역의 지방세 수입으로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지역경제의 발전 정도를 해당 산업의 취업자 수로 측정하여 이들이 지방재정 수입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재정수입 증대에 효과적인 산업부문을 선별하였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전기가스업의 종사자가 많을수록 지방세 수입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지방세의 증가효과는 해당지역에서 징수되는 국세의 증대효과에 비해 적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5) 최병호·주만수(2010) 참조

박병희(2002)의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일인당 지방세와 일인당 경제력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일인당 GRDP는 일인당 지방세의 증가에 유의한 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최병호·주만수(2010)는 2000년대의 전체 지방세수가 GRDP의 성장률에 탄력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시도별 탄력성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60세 인구비중도 유의하지 않았으나 취업자 수는 지방세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을 보였다. 세목별로 주민세와 취득등록세는 탄력적이었으나 재산세는 다소 낮았으며, 수도권 지역의 재산세수의 GRDP 탄력성이 높은 분석 결과는 재산과세의 누진세율 적용의 결과로 보여진다.

조택희(2011)는 지역경제에서 지방세의 역할 및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충북지역에 대한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 Matrix)를 추정하여 각 부문의 경제활동으로 유발되는 지방세의 규모와 지방세의 지출로 야기되는 각 부문의 경제활동 등을 분석하였다. 생산량 증가로 지방세를 많이 유발시키는 산업으로는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업의 생산증가가 지방세 증가를 더 크게 유발하고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고소득층 소비의 유발승수는 큰 편으로 나타났다.

박완규·이삭(2013)도 지방세 수입의 결정적 요인을 지역소득, 인구수, 지방세 지출을 포함하여 지방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1차 차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인구수를 제외한 변수들은 유의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원·김성우(2013)는 1997년 전후로 구분하여 GRDP, 산업별(1,2,3,차), 서비스업별(사업지원서비스, 유통서비스, 개인·기타서비스) 생산액을 지방세 수입에 대해 분석하였다. 1997년 전 보다 이후에 GRDP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1차산업은 지방재정에 유의하지 않았으나 2, 3차 산업은 유의하면서 영향력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사업과 유통서비스는 영향력이 감소한 반면, 개인·기타서비스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GRDP(수도권1.36:비수도권0.74), 2, 3차 산업 영향력이 높아 지방세 징

수와 산업생산성과의 연계성 간의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세제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인 엄태호(2013)는 물적, 인적, 재정요인으로 모형을 설정하고 16년간 광역자치단체(16개)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의 비과세 감면과 경제성장률이 낮은 지역에서의 감면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으나 중앙정부와 경제성장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감면정책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성호(2013)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구밀도, 생산가능인구, 고령화인구를 통제변수, 법률에 따른 감면규모를 설명변수로 선정한 모형을 설정하고 5년간 강원도 시·군(18개)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시·군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단위에서만 감면규모가 증가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3) 그외의 측면

하능식·임성일(2007)은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가 지방의 재정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고 총 관측치 330개(2003, 2005년, 시(77), 군(88))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4세 이하, 65세 인구비중이 많을수록 지방세 수입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비중이 높을수록 지방세 수입이 낮아지는 반비례 관계를 도출한 김제안·최종훈(2003)의 분석과 상반된 결과를 얻었다.

문병근·하종원(2009)는 사회개발비가 지방세입 증가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과세유형별 지방재정수입에 미치는 사회보장비지출(일반사회복지, 생활보호, 노인복지, 부녀복지, 기타복지)의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만족할만한 유의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6) 시와 군에 적용한 통제변수가 동일하지 않아, 양자간 비교는 불가능함.

제3절 기업과 지방재정 관계 규명에 대한 논의

1) 기업의 행동이론과 세제

기존의 연구에서 기업이 어느 특정지역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대해 많은 연구와 논의가 되어 왔다. 그러나, 적절한 대응 없이 지역경제성장의 달성과 재정예정의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소절에서는 기업들의 지역에 대한 투자행동이 실제 지역경제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제행동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대안 모색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업이 지자체의 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오래전부터의 경제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된 것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 기업의 투자이론과 세제 도입

투자행동 이론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어 왔으며, 투자결정이라는 기업의 장기적 전략에 대한 분석은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간단히 고찰하며, 투자이론의 「q이론」을 3가지 측면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 제1. 생산요소로서의 노동, 자본이외에 채고 및 토지를 도입, 생산함수를 일반화
- 제2. 투자가 자본에 일체화할 때 필요로 하는 조정비용을 모든 생산요소에 의존하는 것으로 확충
- 제3. 법인세 및 (설비)투자세액공제를 기업세제의 파라미터로 분석

기업행동원칙을 설정, 투자를 규정하는 의미 있는 경제변수를 유도하는 투자 이론은 최근까지 여러 형태로 연구가 되어 왔는데, Jorgenson(1963), (1967), Hall, Jorgenson(1973)에 의한 「신고전파의 투자이론」은 「기업가치의 최대화」 행동원칙에 의존하면서 장래 생산계획에 결정적인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투자자가 기업이 가지는 장래예산의 요인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시장가치(주식과 부채의 시장가치의 합)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스톡의 재취득가치로 나눈 「토빈의 q 」가 투자를 규정한다는 논의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으나 이 이론이 기업의 극대화행동으로부터 나온 논의인지에 대한 유무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일반화 모형을 보면, 토지 및 재고의 도입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 절에서는 일반화를 위해 기업의 설비 및 건물 등의 총체로서 통상의 미하는 자본(K)이외에, 토지(L) 및 재고(X)가 존재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本間의 1984:30). 투자이론의 틀은 상술한 바와 같이 명확히 알 수 있으며 기업세계의 도입은 기업 행동을 바꾸게 된다. 토지와 재고의 존재는 논의의 구성에 있어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는 아래의 초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기업세계의 중심이 법인세는 기본적으로는 기업이윤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에 직접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즉,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소득은 이윤으로부터 이자 지불, 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등을 공제한 것이 된다.
- 따라서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T 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T = u(\pi - DEP - R \cdot bP_I K) \quad (1-1)$$

- 여기서, u 는 법인세율, $\pi (= pF - \omega N)$ 는 이윤, DEP 는 감가상각비 및 R 은 기업의 부채에 대한 명목이자율이다. 또한 b 는 기업의 부채(사채, 차입금)을 자본의 재생산가치 ($P_I K$)로 나눈 비율이라고 할 때, (1-9)의 괄호내 제3항은 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지불에 대응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율 u 는 법인소득에 의존하지 않고 기업에 있어서 외생적임을 가정한다.

- 지금 하나의 기업세제에 관하여 중요한 특징은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의 존재임. 즉, 투자가치액의 일정비율(ITC)을 세액공제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투자세액공제의 존재를 고려한다면, 기업의 실제 부담하는 세액은 식(1-2)가 된다.

$$T' = u(\pi - DEP - R \cdot bP_I K) - C \cdot P_I I \quad (1-2)$$

- 이상의 기업세제를 전제로 할 때, 임의의 시기에 있어서 배당액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begin{aligned} D_{iv} = & \pi - (P_I I + C \cdot P_I I - U(\pi - DEP - R \cdot bP_I K) \\ & - R \cdot bP_I K + \frac{d}{dt}(bP_I K) = (1-u)(\pi - R \cdot bP_I K) \\ & - (1 - C - b)P_I I + u \cdot DEP + (\widehat{P}_I - \delta)P_I K \end{aligned} \quad (1-3)$$

- 단, 이 식의 등호관계의 도출에는 $\dot{K} = I - \delta K$ 가 이용되고 있으며, b는 시간을 통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식의 중간식의 앞2항은 세와 부채를 무시한 경우의 배당액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제3항은 투자세액공제이며, 제5항은 법인세액이다. 또한, 제5항은 차입부채의 이자지불액이며, 최후의 제6항은 신규순차입액을 나타내고 있다. 이식의 최종식은 변형한 것이며, \widehat{P}_I 는 P_I 의 변화율 \dot{P}_I/P_I 를 나타내는 것이다

- 감가상각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면, 제t시점에서 제도화되어 있는 감가상각표를 $D(x, t)$ 로 나타낸다. 즉, 제t시점에서 1원 상당의 투자를 하는 경우, x년 후의 $D(x, t)$ 원이 법인소득으로부터 공제가능함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로부터 현재의 제t시점까지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액은 아래와 같다.7)

$$DEP = \int_{-\infty}^t D(t-s, s)P_I(s)I(s)ds \quad (1-4)$$

7) - 또한 기업의 t = 0의 시점에서의 투자방정식은,

$$\frac{I(0)}{K(0)} = i \left[\frac{\omega(0)}{P(0)}, Q(0)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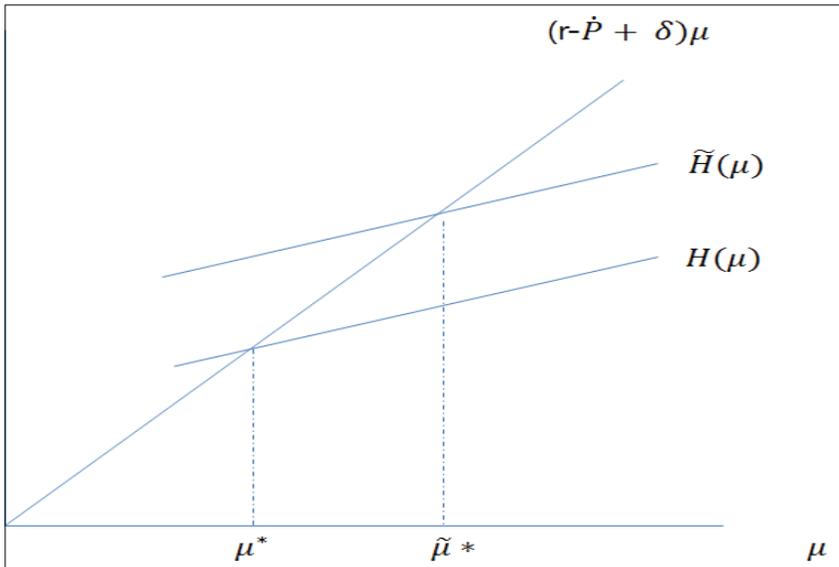
임.

또한, 세제의 변화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식을 설정하고자 한다. 현재시점의 투자는,⁸⁾

$$\frac{I(0)}{K(0)} = i \left[\frac{\omega(0)}{P(0)}, Q(0); t \right] \quad (1-5)$$

여기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장래 감가상각의 절약분이 투자에 미치는 효과와 같다고 보며, 또한 감가상각표는 절약분을 통해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감가상각표의 변경이 과거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투자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 세제의 변화가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⁹⁾

〈그림 2-2〉 투자세액공제와 투자 확대



8) 이 외의 가정과 설명은 本間외(1984:31~32)을 참조하기 바람.

9) $\dot{\mu} = (r - \hat{P} + \delta)\mu - \left[(1-u)\gamma \left(\frac{\omega/P}{\alpha}, Q \right) + \{ \hat{P}_I(1-u)R - \delta \} \frac{bP_I}{P} \right]$. 이 식의 가정은 本間외(1984:33)을 참조

상기 그림에서 μ 를 고정시키고 투자세액공제를 상승시키면 Q 는 증가하게 된다. 이 때 H 함수가 \tilde{H} 로 상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이동은 μ^* 의 값을 상승시키게 된다. μ^* 의 상승은 투자(현재부터 미래에 걸쳐)을 자극하게 된다. 즉 투자세액공제의 인상은 투자확대로 이어지게 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법인세율 u 의 변경이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불확실함을 알 수 있다.¹⁰⁾ 이 연구 결과는 즉 정부의 세제 혜택 등 세제 우대 조치가 지자체의 투자유치를 유인하는 정책으로서 반드시 합당하다고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법인세 과세와 설비투자의 관계를 규명한 前川・眞鍮(2008)의 연구에서도 설득력을 가지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8년도 연구에서 중규모 기업과 소규모 기업에 있어 법인세율의 감세 조치 결과를 보면, 중규모 기업에는 분석 결과 유의미한 통계치를 얻을 수 있었으나, 소규모 기업에는 10% 수준에서 가설이 기각된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도에 중규모 기업의 경우 자본비용 1단위 하락에 대해 투자율은 5.32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법인세율 1% 인하할 경우 4922억엔의 설비투자를 유발하는 결과도 도출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세액공제율 1% 인상하는 경우 자본비용을 0.1% 억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본비용 1단위 하락으로 투자율은 2.36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세액공제율 1% 인상으로 6528억엔의 설비투자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찾고자 하는 기업의 유치에 있어 세율 조정(감세)과 세액공제의 재정정책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0) u 가 증대하게 되면 Q 가 증대하고 r 가 상승한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r 에는 $(1-u)$ 가 걸쳐 있어 이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제4절 소결

1) 선행연구 종합

기업유치와 지방재정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사례연구와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의 기업유치와 관련하여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설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2-1〉 선행연구 종합

구 분	연구자	제목	주요내용 및 한계
기업 유치 & 지방 재정	[I] 사례 연구	조계근 (2003)	폐광카지노세가 강원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폐광개발사업 투자실적(국비, 지방비) - 스몰카지노사례 조세부담실적(국비, 지방비) - 지자체의 투자실적(비용)과 조세부담(지방세수입)간 비교 어려움
		최명희· 조계근· 변용환 (2006)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세수 증대효과 -하이트맥주 흥천 공장을 사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트공장사례 조세부담실적(국비, 지방비) - 하이트공장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한계소비성향 추정 후 총급여액의 지역소득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함(1997~2003년까지 누적급여액) - 지자체의 비용투입에 대한 미고려
		武者 (2010)	기업 유치 정책의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 미에현 카메오카시의 사례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카메오카시의 사례연구 - 기업유치에 의한 지방세 증수효과 추계 - 유치 코스트 및 유치에 동반된 각종 인프라 설비 코스트와 유치 효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함
기업 유치 & 지방 재정	[II] 실증 연구	임성일 (1991)	지방세수입 탄력성 추정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수의 소득, 인구탄력성 추정 - 1인당주민소득기준(1.09), 인구기준(0.98) - 통계적 적합성을 충족한 대상(N:20) 미고려
		최영출 (1994)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방안: 지방 재정파급효과를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분석 - 연립방정식 추계 모형과 감응도 분석 - 지방재정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노동집약)자본집약 [중업원규모] 대기업<소기업(100인이하) - 전후방 산업간연관관계를 고려하지 못함 - 통계적 적합성을 충족한 기간(T:15) 미고려

구 분		연구자	제목	주요내용 및 한계
		배인명·양기용 (1995)	지역경제의 지방재정수입에 대한 효과분석 : 시정부를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적시계열분석(5개년×시·도) - 지방세수입과 종업원수간의 관계_전기가스업,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순으로 종사자가 많을수록 지방세 수입이 유의하게 증가함(도세·시세 및 각 세목을 종속변수로도 분석함) - 국세에 비해 지방세 증대효과가 적음 - 설명변수인 종업원수의 대표성 의문언급
		최병호·주만수 (2010)	지역경제와 지방세 수입의 연계성 분석: 지방세수입의 소득탄력성 추정을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효과패널모형(9T×16N) - 지방세수는 GRDP의 성장률에 탄력적임 - 지방세수에 대한 취업자수의 정의 영향 - 각 세목을 종속변수로 하여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주민세(1.5), 취득등록세(1.3), 재산세(0.7)로 나타남 - 수도권지역의 재산세에 대한 탄력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조택희 (2011)	경제활동과 지방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중복을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 Matrix) 추정 - 지방세 유발승수효과 [산업] 제조업 < 서비스업 [소득] 근로소득 ≙ 자본소득 [소득층] 고소득층 > 저소득층
		박완규·이삭 (2013)	지방세 지출이 지역경제 및 지방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차분패널모형(21T×15N) - 지방세(=+지역소득, 인구수, +지방세 지출) - 인구수를 제외한 변수 유의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기업유치	[III] 설문조사	이삼주 (2000)	지방세감면의 효과 분석: 지방공단에 대한 기업유치정책을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기업대상설문 - 매출액이 낮은 기업의 경우 세금감면 정책이 기업유치에 유의함
		이병기 (2005)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기업투자환경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설문에 의한 투자환경지수 산정 - 16개 시·도의 평균 투자환경지수 중 지방정부정책 환경은 가장 낮았으나, 비수도권 지방정부에서는 덜 낮은편임
		박재곤·이원빈 (2005)	기업의 지방투자 실태와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기업대상 지역투자요인설문 - 투자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음
		박재곤 (2010)	지역투자 결정요인과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기업대상설문 - 조세, 재정, 기타 인센티브로 투자인센티브를 유형화함 - 투자인센티브의 영향력은 낮으므로 단기적으로 투자인센티브는 유효한 수단이나 비용이 혜택보다 클 수 있는 등의 한계가 있음 - 토지는 향후 자산가치 상승 기대가 높은 요소로서 토지매입비에 대한 인센티브의 폐지 또는 축소 제안 - 지자체의 투자유치 협상과정에서 조세감면 방식보다 보조금 방식의 탄력적 활용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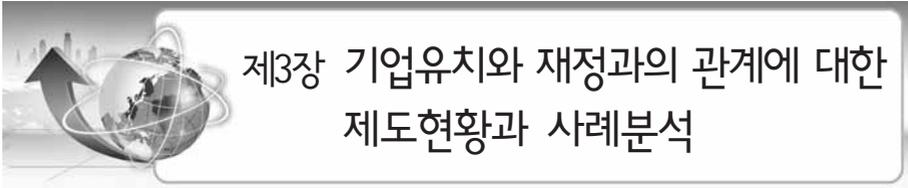
2)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이 부분적으로 수행한 사례조사, 실증분석, 설문조사를 포함한 종합 연구임을 밝혀둔다.

본 연구의 사례연구는 (산업단지내) 유치기업의 지방세 부담액과 지방정부의 지방세 지출액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상호비교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증연구는 기업유치라는 특정효과를 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과 지방세 수입관계를 분석하고 이어서, 기업유치 노력을 기존연구에서는 GRDP를 사용하였으나, 1인당 민간최종소비지출로 대체하여 산단 단지 수, 분양면적, 가동업체 수, 고용인 수, 생산가치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설문연구는 지자체 설문을 통하여 기존 기업유치의 주요전략으로서 각종 지원제도 마련이 중심이 되어 실시되어 왔으나, 실제 편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지방정부 입장에서 현재 기업유치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통해 제도 개선사항 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이 예상된다.



제1절 법·제도적 현황 분석

1) 조세 구조

국세란 국가가 과세주체가 되어 국가의 재정수입의 조달을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내국세와 관세로 나눌 수 있으며, 내국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관련업무는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국세청(6개 지방국세청, 107개 세무서) 및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표 3-1〉 국세 분류

대분류	중분류	항목	성격
내국세	보통세	소득세	직접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간접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육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가 그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내의 주민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면허),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소유/주행),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관련 업무는 도청, 시청, 군청 및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방세는 사전 사용용도 제약 여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고(지방세기본법 제7조), 징수권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지방세기본법 제8조)로 분류된다.¹¹⁾

〈표 3-2〉 지방세 분류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	
보통세	취득세	○	○			
	레저세	○	○			
	지방소비세	○	○			
	담배소비세	○			○	
	주민세	균등분	○			○
		재산분	특별시세		○	○
	지방소득세	소득분	○			○
		종업원분	특별시세		○	○
	자동차세	○			○	
	등록면허세		○	○		
재산세			○	○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	○			
	지방교육세	○	○			

11)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의 7개 지방자치단체에게 징수권이 부여된 지방세를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로 정의하고,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의 9개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시의 군지역에게 징수권이 부여된 지방세를 도세로 정의함. 행정분류상 구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징수권이 부여된 지방세는 구세, 행정구역상 시·군에게 징수권이 부여된 지방세를 시·군세로 정의하고 광역시의 군지역은 도세를 광역시세로 함.

특별시세와 광역시세의 보통세는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포함되며, 목적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되고, 도세의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포함되고, 목적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되며 구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포함되며 목적세는 없음. 시군세의 경우,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포함되며 목적세는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목을 세입의 원천을 감안하여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구분되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낮아지고 있으나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은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본질에 위배되는 구조이다.

앞서의 국세는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비중이 높지만 지방세는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은 수준을 보인다. 그나마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됨으로 인하여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비중이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다.¹²⁾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연도별 징수 세목은 <표 15>와 같이 나타나고 있으나 총 세액의 규모는 연도별로 유사하여 완만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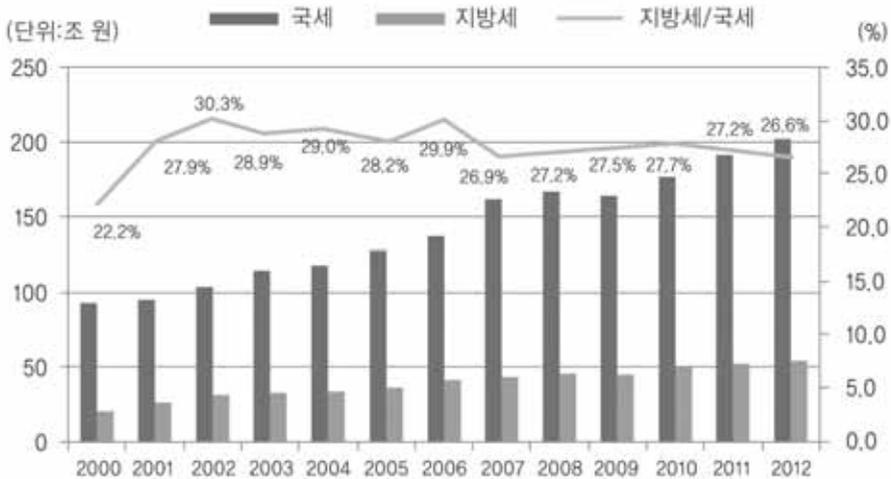
12) 재산과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공동시설세, 자원시설세
 소비과세 :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레저세, 도축세
 소득과세 : 지방소득세, 주민세, 농업소득세, 사업소득세

세목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레저세	555,501	790,850	1,077,663	895,907	771,922	691,875	687,826	864,332	989,020	1,002,264	1,067,458	1,072,214	1,129,293
	2.7	3.0	3.4	2.7	2.3	1.9	1.7	2.0	2.2	2.2	2.2	2.1	2.1
지방소비세	-	-	-	-	-	-	-	-	-	-	2,678,932	2,960,611	3,033,52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5.4	5.7	5.6
담배소비세	2,250,511	2,508,560	2,237,806	2,384,361	2,722,318	2,447,918	2,702,886	2,761,010	2,920,402	3,010,709	2,874,881	2,785,028	2,881,196
	10.9	9.4	7.1	7.2	8.0	6.8	6.5	6.3	6.4	6.7	5.8	5.3	5.3
종합토지세	1,281,702	1,364,986	1,405,680	1,602,613	2,031,605	1,934	13,733	5,251	-71	885	-815	-	-
	6.2	5.1	4.5	4.8	5.9	0.0	0.0	0.0	0.0	0.0	0.0	0.0	0.0
주행세	253,836	541,997	1,063,386	1,265,788	1,750,327	2,292,515	2,709,544	3,270,163	3,081,150	3,287,072	3,169,108	-	-
	1.2	2.0	3.4	3.8	5.1	6.4	6.6	7.5	6.8	7.3	6.4	0.0	0.0
도시계획세	815,420	851,004	893,751	998,482	1,185,277	1,352,548	1,606,215	1,882,828	2,182,789	2,269,232	2,465,271	4,986	2,704
	4.0	3.2	2.8	3.0	3.5	3.8	3.9	4.3	4.8	5.0	5.0	0.0	0.0
공동시설세	341,382	350,866	374,932	410,915	464,795	446,416	516,279	543,293	588,491	591,217	649,609	-	-
	1.7	1.3	1.2	1.2	1.4	1.2	1.3	1.2	1.3	1.3	1.3	0.0	0.0
사업소세	386,282	435,094	473,094	524,750	567,247	620,675	677,362	731,116	799,500	808,019	-815	-	-
	1.9	1.6	1.5	1.6	1.7	1.7	1.6	1.7	1.8	1.8	0.0	0.0	0.0
지역개발세	88,893	86,070	95,145	103,382	110,197	109,651	174,561	99,952	92,561	90,789	95,433	-	-
	0.4	0.3	0.3	0.3	0.3	0.3	0.4	0.2	0.2	0.2	0.2	0.0	0.0
지방교육세	-	3,477,692	3,956,508	4,009,287	4,083,674	3,840,691	4,338,062	4,513,927	4,864,443	4,794,364	4,871,011	4,966,647	5,081,445
	0.0	1.30	12.6	12.1	11.9	10.7	10.5	10.4	10.7	10.6	9.9	9.5	9.4
과년도수입	474,373	555,084	584,757	532,003	592,539	633,182	668,580	672,419	592,258	599,628	654,684	728,162	679,874
	2.3	2.1	1.9	1.6	1.7	1.8	1.6	1.5	1.3	1.3	1.3	1.4	1.3

자료 : 통계청

우리나라 지방세는 2000년 20.6조원으로 국세의 22.2%였으나, 2001년부터는 26.7조원으로 국세의 27.9%를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보인다. 그러나 2012년은 26.6%로 지난 10년간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은 대체로 감소추세이다. 최근 10년간 명목 GDP의 연평균 성장률 7.1%였으며 국세의 경우에는 7.2%였으나, 지방세는 보다 낮은 6.7%의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2006년을 제외하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감소추세인 것으로, 비록 지방재정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 20년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자주재정권의 핵심이 되는 지방세 수입의 규모는 여전히 담보상태에 있다.

〈그림 3-1〉 국세 vs 지방세 현황



자료 : 기획재정부

지역별 세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의 국세 징수액 데이터와 통계청의 지역별 지방세 데이터를 이용하여 17개 시도별 조세수입의 규모를 조사한 것이 아래 표와 같다.

〈표 3-4〉 지역별 국세 변화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65,996,883	89,271,712	96,616,603	107,048,920	110,217,077	120,423,725	130,260,883	153,062,775	114,607,205	113,317,188	120,484,694	126,562,448	135,680,353
서울	34,144,821	32,311,462	37,082,078	39,652,254	38,769,431	43,003,723	49,234,337	59,619,400	55,732,351	53,861,893	56,825,818	62,601,154	65,414,878
인천	1,937,581	2,439,752	2,605,193	2,764,061	2,737,629	2,948,491	2,637,433	3,807,446	3,850,929	4,163,449	4,598,658	4,017,481	4,627,036
경기	6,313,122	8,460,440	8,957,227	12,221,230	11,340,138	13,491,347	13,729,423	18,286,023	17,142,892	16,095,988	17,393,379	19,429,684	19,808,628
강원	807,285	1,000,745	1,229,252	1,278,632	1,496,415	1,483,892	1,388,399	1,569,825	1,712,070	1,687,433	1,636,570	1,739,188	1,917,057
대전	1,303,963	1,425,392	1,429,767	1,713,650	1,952,497	2,145,998	2,255,565	2,476,995	2,606,686	2,567,874	2,742,688	2,844,624	2,916,697
충북	955,873	1,172,276	1,372,716	1,584,097	1,590,224	1,607,537	1,799,316	1,870,105	2,014,878	1,978,549	2,037,542	2,098,043	2,509,586
충남	1,520,891	2,027,586	2,543,354	3,135,374	3,428,111	4,159,571	4,104,771	4,321,686	3,866,679	3,782,260	4,307,007	4,721,143	4,926,625
광주	914,866	1,425,392	1,046,199	1,030,271	1,193,221	1,294,152	1,403,153	1,644,557	1,796,132	1,599,687	1,555,423	1,752,192	1,939,083
전북	1,026,348	1,148,546	1,189,354	1,161,404	1,190,072	1,170,504	1,231,924	1,325,946	1,266,033	1,373,903	1,355,863	1,401,214	1,466,952
전남	3,301,633	4,681,995	4,316,556	4,642,339	4,847,294	4,764,573	4,127,474	5,680,976	5,168,435	4,810,850	6,381,367	5,152,208	5,856,079
대구	1,399,228	1,248,334	1,431,898	1,558,374	1,636,885	1,744,512	2,114,597	2,323,229	2,121,397	2,289,852	2,319,059	2,394,061	2,959,909
경북	1,658,535	1,617,788	1,450,404	1,951,165	2,134,008	2,970,291	2,932,747	2,447,058	2,010,163	3,323,264	1,928,851	2,064,003	2,373,887
부산	2,388,030	2,510,613	2,933,969	3,012,940	2,994,139	3,402,968	3,814,656	4,272,120	4,180,534	4,775,955	4,639,486	4,820,217	5,529,246
울산	6,517,667	7,377,473	6,487,612	6,803,934	7,044,349	7,291,738	6,832,813	7,786,137	8,340,609	7,536,385	9,774,124	8,264,442	9,528,790
경남	1,569,404	1,684,519	1,969,161	2,093,285	2,180,754	2,110,701	2,326,446	2,493,515	2,408,449	3,020,741	2,569,489	2,797,028	3,265,880
제주	267,636	282,998	307,811	318,272	357,124	354,232	373,649	438,882	388,968	449,075	439,370	465,766	620,040

출처 : 국세청

〈표 3-5〉 지역별 지방세 변화 추이 (결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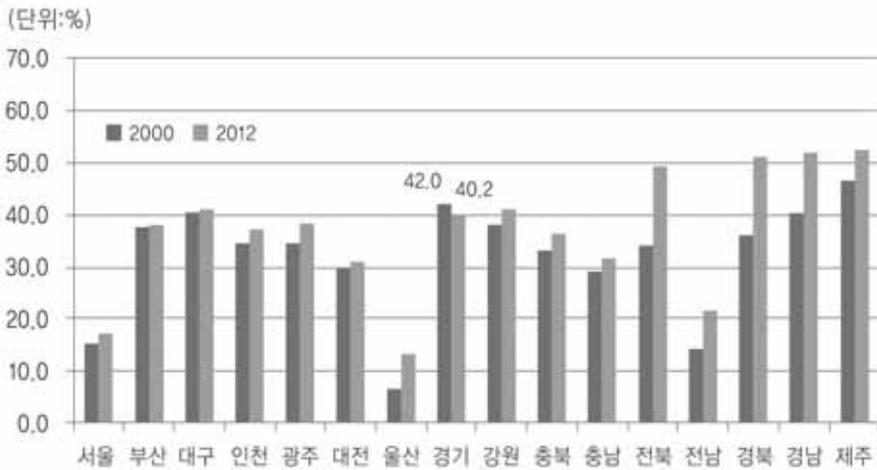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20,600,603	26,664,879	31,525,744	33,132,943	34,201,705	35,977,359	41,293,702	43,524,289	45,479,732	45,167,790	49,159,805	52,300,144	53,938,064
서울	6,204,198	7,934,080	9,430,644	9,813,152	9,726,335	10,011,732	11,306,413	11,885,828	12,537,671	11,922,706	12,074,840	12,913,964	13,436,966
인천	1,433,043	1,795,145	2,159,986	2,255,064	2,183,113	2,265,338	2,579,279	2,580,854	2,594,051	2,739,707	3,062,239	3,352,687	3,386,162
경기	931,262	1,107,077	1,292,069	1,466,046	1,402,023	1,523,228	1,659,771	1,598,148	1,627,708	1,573,443	1,818,648	1,924,374	2,073,421
강원	1,015,232	1,298,962	1,530,259	1,550,572	1,565,667	1,739,789	1,945,257	2,207,214	2,321,260	2,360,091	2,428,823	2,790,176	2,754,954
대전	484,267	583,547	673,652	723,551	699,005	773,481	885,554	877,200	901,716	976,111	1,077,114	1,137,184	1,202,985
충북	555,674	687,863	840,070	904,146	873,172	919,761	1,080,507	1,022,282	1,064,934	1,000,099	1,162,680	1,332,664	1,320,566
충남	465,115	573,814	645,293	720,223	787,832	836,498	943,585	1,040,105	1,127,065	1,060,227	1,230,508	1,375,029	1,493,288
광주	4,588,691	6,433,095	8,016,993	8,251,187	8,585,194	8,968,594	10,720,678	11,465,307	11,723,657	11,905,904	12,876,723	12,957,502	13,288,767
전북	498,217	643,920	709,719	762,126	852,116	889,301	1,055,398	1,097,950	1,074,505	1,065,003	1,222,509	1,272,268	1,344,637
전남	474,345	603,088	670,854	732,413	817,384	828,296	1,041,159	1,077,314	1,102,913	1,094,931	1,310,314	1,371,262	1,443,528
대구	633,958	802,258	883,520	1,076,601	1,415,892	1,419,212	1,551,017	1,649,345	1,739,467	1,793,495	2,097,038	2,297,542	2,426,342
경북	530,720	657,589	698,245	742,063	796,940	834,923	915,356	1,015,355	1,126,644	1,091,309	1,287,562	1,407,180	1,456,057
부산	562,041	702,574	766,044	773,130	845,210	921,700	1,060,644	1,127,642	1,248,968	1,288,287	1,434,292	1,580,286	1,622,293
울산	948,694	1,151,561	1,196,264	1,261,304	1,404,386	1,583,213	1,798,727	1,867,464	1,915,009	2,001,834	2,220,366	2,397,531	2,499,249
경남	1,080,249	1,362,762	1,636,180	1,714,012	1,841,713	2,061,172	2,316,613	2,565,187	2,929,103	2,880,091	3,334,664	3,609,075	3,504,746
제주	234,896	327,544	375,952	387,351	405,723	401,121	433,744	447,094	445,059	414,551	521,487	581,431	684,103

출처 : 통계청, 세종자치특별시(2012)는 충남에 포함함 119,098 백만원

표를 활용하여, 2000년과 2012년의 총조세(국세+지방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경우만 지방세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및 울산, 전남에서 국세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아래 <그림>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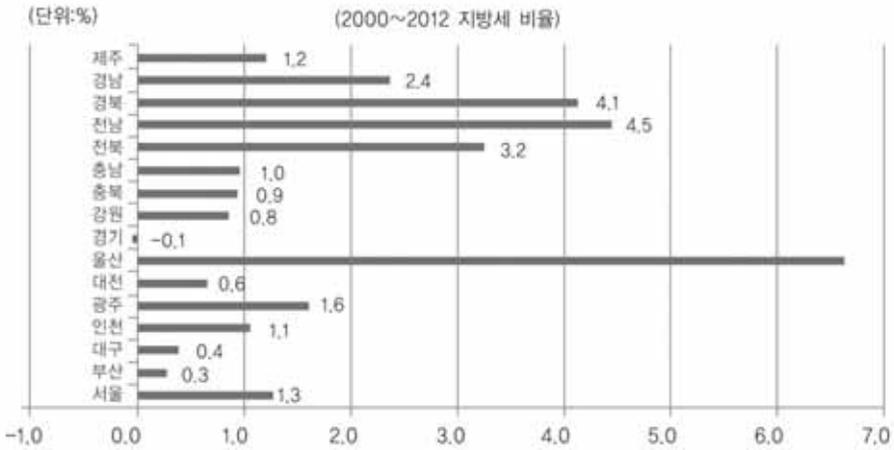
〈그림 3-2〉 국세 vs 지방세 비율



자료 : 국세(국세청)는 지방국세청의 징수액을 이용하여 구축
지방세(통계청), 지방세 비율 = $100 \times \text{지방세} / (\text{국세} + \text{지방세})$

연평균 증감률로 지방세비율을 치환한 결과, 전국평균 1.8%였으며 경기도 (-0.1%)는 마이너스 성장, 울산(6.6%), 전남(4.5%), 경북(4.1%)은 높은 수준의 플러스 성장 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아래 <그림>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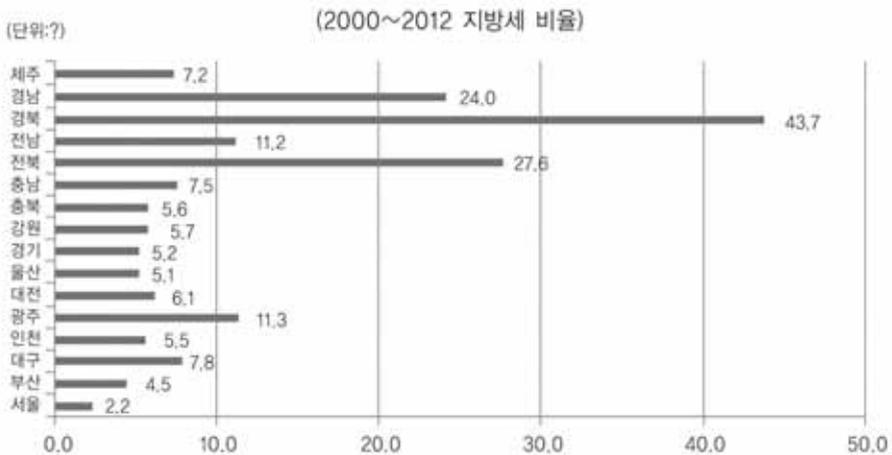
〈그림 3-3〉 지방세비율의 연평균증감률



자료 : 상동

지방세비율의 변동성을 분석하기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이 분산값을 분석한 결과, 전국평균은 7.3% 이고, 전남(11.1%)<광주(11.3%)<경남(24.0%)<전북(27.6%) < 경북(43.6%)의 순서로 분산값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방세 수입의 분산값은 광역특별시 보다 도의 지방세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함을 의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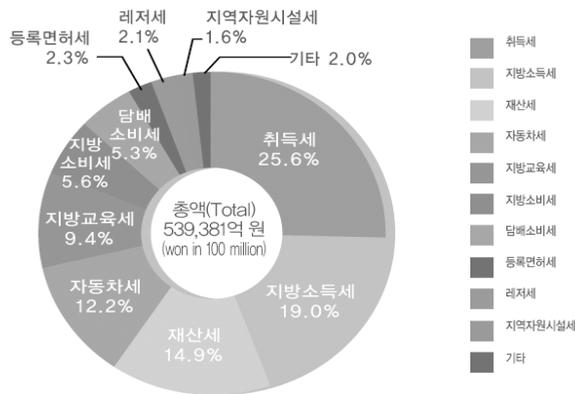
〈그림 3-4〉 지방세 비율의 분산값



자료 : 상동

지방세 세목 규모는 취득세(25.6%)>지방소득세(19.0%)>재산세(14.9%) 순으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주택 취득세가 토지분 보다 크지만, 도의 경우에는 토지 취득세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토지와 주택의 공급규모의 차이로 인한 세원규모의 차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5〉 지방세 세목별 구성 비율 (2012년)



과세물건별 지방소득세의 경우,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서 법인세 및 종업원분의 비중이 53%로 소득세분 비중 47% 보다 더 크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인구의 집중도가 낮은 지역에서 기업의 지방세 기여도가 클 것으로 보인다.

〈표 3-6〉 지방소득세 과세물건별 과세현황(단위 : 억원)

구분	계	소득세분	법인세분	종업원분
계	99,899 (100%)	50,160 (50%)	41,273 (41%)	8,466 (8%)
서울시	37,467 (100%)	20,982 (56%)	13,712 (37%)	2,773 (7%)
광역시	18,995 (100%)	8,902 (47%)	8,415 (44%)	1,678 (9%)
도	43,437 (100%)	20,276 (47%)	19,146 (44%)	4,015 (9%)

자료 : 지방세정연감(2012년)

현재 11개 지방세목의 과세대상 및 주체, 세율 등을 살펴보면, 기업과 관련된 세목은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10개 항목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표 3-7〉 지방세목 중 법인관련 항목

세목별	법인해당	대상 및 주체
취득세	○	부동산, 기계장비, 차량,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등록면허세	○	부동산, 기계장비, 차량,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법인등기 등
주민세	○	법인(균등분 중 법인의 표준세율 50,000~500,000원)
지방소득세	○	법인세분(법인세액의 0.1)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공장용지, 골프장용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의 공장의 부속토지)
자동차세	○	소유 vs 주행, 영업용 vs 비영업용
레저세	○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 영위하는 사업자
지방소비세	○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
담배소비세	×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등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지방교육세	○	지방세 부가세 형태임(등록세액 0.2, 레저세액 0.6, 주민세액 0.25, 재산세액 0.2, 자동차세액 0.3, 담배소비세액 0.5)

최명희외2(2006)의 연구에서 ‘홍천군 하이테크공장’에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지방세로 납부하는 12개 세목의 총금액은 40.65억원이고, 각 세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주민세 74.3%, 사업소세 8.6%, 공동시설세 4.8%, 재산세 3%, 종합토지세 2.6% 등으로 분석되었다.

〈표 3-9〉 기업관련 지방세 세액의 지역별 현황 (2008년 결산)

(단위 : 백만원)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법인 세할	재산세			합계 (기업 관련)	지방세 기입관련지방세	지방세 대비 기업관련지방세
	대도시내 공장·신·중설	대도시내 본점·사무소	법인 등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의 종과세		법인 토지	공장	공장 감면*			
합계	7,020	9,781	211,545	47,134	3,288,116	832,565	75,322	31,541	4,439,941	45,479,732	9.8%
서울	0	8,082	103,763	144,067	1,088,062	227,295	21,987	2,812	1,590,444	12,537,671	12.7%
부산	0	0	8,051	0	164,240	44,760	3,361	1,833	218,579	2,594,051	8.4%
대구	0	0	3,922	0	92,106	20,135	1,727	810	117,081	1,627,708	7.2%
인천	0	123	7,526	7,803	140,538	48,673	2,024	6,050	200,637	2,321,260	8.6%
광주	0	0	2,332	0	54,998	13,137	1,142	839	70,770	901,716	7.8%
대전	0	0	2,523	0	86,620	16,131	634	435	105,473	1,064,934	9.9%
울산	0	0	1,619	0	143,960	16,831	693	757	162,345	1,127,065	14.4%
경기	7,020	1,577	52,503	35,828	633,682	269,203	29,707	4,664	1,024,855	11,723,657	8.7%
강원	0	0	2,083	0	64,390	24,370	1,027	730	91,140	1,074,505	8.5%
충북	0	0	2,865	0	76,903	19,029	988	1,406	98,379	1,102,913	8.9%
충남	0	0	5,699	0	179,416	26,270	1,413	2,227	210,570	1,739,467	12.1%
전북	0	0	3,222	0	61,808	11,615	904	1,907	75,642	1,126,644	6.7%
전남	0	0	4,352	0	142,175	15,690	1,373	1,675	161,915	1,248,968	13.0%
경북	0	0	3,807	0	185,334	24,493	3,582	2,379	214,836	1,915,009	11.2%
경남	0	0	6,353	0	153,921	38,518	4,271	2,751	200,312	2,929,103	6.8%
제주	0	0	926	0	19,963	16,415	489	265	37,529	445,059	8.4%

주석 : 개인과 법인이 구분되지 않는 세목의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음. 예) 취득세의 토지분, 주민세의 공동분 등
 자료 : 지방세정연감(2009)

〈표 3-10〉 기업관련 지방세 세액의 지역별 현황 (2009년 결산)

(단위 : 백만원)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합계 (기업 관련)	지방세	지방세 대비 기업관련지방세
	대도시내 공장·신·중설 분점·사무소	대도시내 법인 등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의 종과세	법인 세할		법인 토지	공장 감면*	공장 감면*			
합계	958	1,443	262,977	112,196	3,714,123	1,188,200	59,853	38,232	5,301,519	45,167,790	11.7%
서울	0	1,234	151,078	77,049	1,141,568	280,612	5,120	1,603	1,655,057	11,922,706	13.9%
부산	0	0	7,060	0	195,388	57,967	4,169	2,208	262,376	2,739,707	9.6%
대구	0	0	2,892	0	91,399	27,964	1,339	1,120	122,474	1,573,443	7.8%
인천	265	9	8,502	8,473	141,503	92,503	2,755	2,630	251,380	2,360,091	10.7%
광주	0	0	2,604	0	64,439	15,609	1,590	1,023	83,219	976,111	8.5%
대전	0	0	3,807	0	78,971	24,217	917	886	107,027	1,000,099	10.7%
울산	0	0	1,464	0	213,753	23,629	495	1,423	237,917	1,060,227	22.4%
경기	693	200	50,336	26,674	641,506	427,061	29,665	8,197	1,167,939	11,905,904	9.8%
강원	0	0	2,729	0	61,504	28,128	833	1,340	91,855	1,065,003	8.6%
충북	0	0	5,831	0	79,684	22,216	1,697	2,060	107,368	1,094,931	9.8%
충남	0	0	7,290	0	181,093	39,593	1,813	3,265	226,524	1,793,495	12.6%
전북	0	0	4,092	0	72,020	15,628	1,187	2,116	90,812	1,091,309	8.3%
전남	0	0	4,251	0	208,507	21,413	1,599	2,853	232,917	1,288,287	18.1%
경북	0	0	4,638	0	287,450	35,123	3,153	3,108	327,256	2,001,834	16.3%
경남	0	0	5,253	0	237,472	54,494	3,236	4,075	296,380	2,880,091	10.3%
제주	0	0	1,152	0	17,868	22,042	286	325	41,022	414,551	9.9%

주석 : 개인과 법인이 구분되지 않는 세목의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음. 예) 취득세의 토지분, 주민세의 균등분 등
 자료 : 지방세정액감(2010)

〈표 3-11〉 기업관련 지방세 세액의 지역별 현황 (2010년 결산)

(단위 : 백만원)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합계 (기업 관련)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 대비 기업관련 지방세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대도시내 보점사무소	법인 등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의 종과세	법인 세할	재산분	법인 세분	법인 증원분	법인 토지	공장 공장 감면*				
합계	3,058	3,263	352,346	100,003	(77,202)	132,827	3,285,094	763,959	332,060	68,662	42,310	492,1749	49,159,805	10.0%
서울	7	3,112	234,350	71,621	(100,189)	16,765	1,157,629	254,752	14,880	8,492	1,641	1,659,778	12,074,840	13.7%
부산	-	-	6,358	1	1,454	7,522	158,828	30,497	15,379	4,510	2,385	222,163	3,062,239	7.3%
대구	-	-	2,727	-	1,190	5,319	81,933	15,520	7,234	1,431	1,286	114,069	1,818,648	6.3%
인천	101	151	7,725	6,334	69	6,907	129,987	28,641	19,989	3,568	2,379	201,092	2,428,823	8.3%
광주	-	-	4,451	-	1	2,970	57,828	14,124	3,867	1,798	1,170	83,869	1,077,114	7.8%
대전	-	-	3,162	-	1,054	3,345	84,938	18,001	5,884	933	1,001	116,314	1,162,680	10.0%
울산	-	-	1,938	0	2,637	6,218	140,527	46,031	8,419	593	1,622	204,740	1,230,508	16.6%
경기	-	-	45,405	22,047	8,378	30,079	605,648	152,114	149,696	31,259	9,088	1,038,487	12,876,723	8.1%
강원	-	-	2,458	-	1,081	3,521	58,463	8,895	13,700	939	1,461	87,597	1,222,509	7.2%
충북	-	-	4,463	-	1,185	5,587	85,185	19,376	10,587	2,277	2,338	126,321	1,310,314	9.6%
충남	-	-	10,937	-	480	9,336	182,804	38,550	16,521	2,066	4,097	256,597	2,097,038	12.2%
전북	-	-	3,239	-	1,008	4,652	66,090	15,104	6,177	1,483	2,309	95,445	1,287,562	7.4%
전남	-	-	13,161	-	1,364	6,333	111,864	19,891	10,251	1,771	3,068	161,568	1,434,292	11.3%
경북	-	-	5,313	-	1,414	10,793	159,251	42,026	17,719	3,704	3,373	236,847	2,220,366	10.7%
경남	-	-	5,436	-	1,382	12,407	185,129	57,784	21,991	3,518	4,706	282,941	3,334,664	8.5%
제주	-	-	1,223	-	291	1,076	18,991	2,651	9,766	310	387	33,921	521,487	6.5%

주석 : 개인과 법인이 구분되지 않는 세목의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음. 예) 취득세의 토지분, 주민세의 균등분 등
 자료 : 지방세정액감(2011)

〈표 3-12〉 기업관련 지방세 세액의 지역별 현황 (2011년 결산)

(단위 : 백만원)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합계 (기업 관련)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 대비 기업관련 지방세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대도시내 법인 등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의 종과세	법인 세할	재산분	법인 세분	증원원분	법인 토지	공장	공장 감면*				
합계	7,837	220,966	51,110	(37,338)	140,664	4,127,348	846,490	1,684,289	113,971	70,106	7,117,703	52,300,144	13.6%	
서울	3,553	117,518	38,511	(37,665)	17,769	1,371,238	277,256	387,387	14,915	7,302	2,188,334	12,913,964	16.9%	
부산	0	6,765	0	0	7,877	176,447	32,424	87,660	7,891	3,711	315,353	3,352,687	9.4%	
대구	0	3,634	0	0	5,408	95,222	16,752	40,793	2,779	2,079	162,507	1,924,374	8.4%	
인천	517	7,553	2,908	(0)	7,375	154,987	32,725	140,389	7,562	4,183	358,683	2,790,176	12.9%	
광주	0	2,949	0	0	3,274	71,834	14,936	21,723	1,715	1,887	114,544	1,137,184	10.1%	
대전	0	2,350	0	0	3,556	93,462	20,075	34,702	1,876	1,647	154,375	1,332,664	11.6%	
울산	0	3,525	0	91	6,569	249,597	50,858	34,043	1,176	2,322	343,537	1,375,029	25.0%	
경기	3,767	41,900	9,691	10	31,958	757,121	173,164	561,823	49,710	14,998	1,632,615	12,957,502	12.6%	
강원	0	2,869	0	0	3,675	66,023	9,697	42,929	1,416	2,257	124,351	1,272,268	9.8%	
충북	0	3,032	0	1	5,993	102,542	22,918	36,864	3,884	3,646	171,588	1,371,252	12.5%	
충남	0	6,179	0	125	10,146	256,322	46,306	60,161	3,298	5,966	376,571	2,297,542	16.4%	
전북	0	3,116	0	1	5,093	89,006	17,343	24,478	2,352	3,443	137,946	1,407,180	9.8%	
전남	0	5,211	0	0	6,863	190,419	21,096	35,745	2,653	4,799	257,187	1,580,286	16.3%	
경북	0	5,855	0	0	11,478	196,300	46,144	55,908	6,547	5,069	317,164	2,397,531	13.2%	
경남	0	6,127	0	98	12,526	234,649	61,946	92,666	5,728	6,172	407,568	3,609,075	11.3%	
제주	0	2,383	0	0	1,103	22,178	2,850	27,018	468	623	55,378	581,431	9.5%	

주석 : 개인과 법인이 구분되지 않는 세목의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음. 예 취득세의 토지분, 주민세의 균등분 등

자료 : 지방세정연감(2012)

〈표 3-13〉 기업관련 지방세 세액의 지역별 현황 (2012년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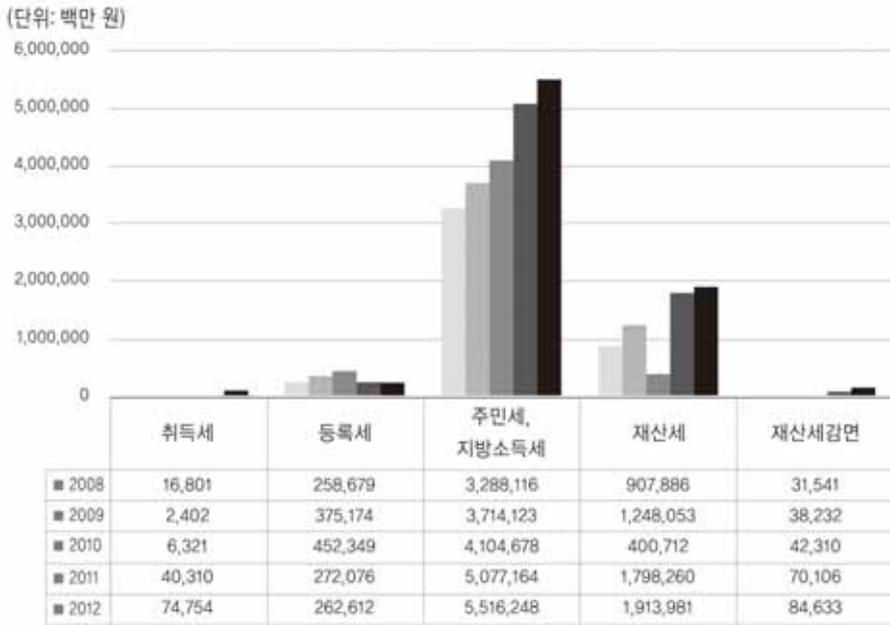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합계 (기업 관련)	지방세 지부세	지방세 대비 기업관련 지부세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대도시내 본점.사무소	법인 등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의 종과세	법인 세활	재산분	법인 세분	중요원분	법인 토지	공장 감면*	공장 감면*			
합계	22,389	52,366	207,906	54,706	151,488	4,461,083	918,933	1,789,245	124,736	84,633	53,938,064	7,682,962	53,938,064	14.2%
서울	20,362	2,012	89,684	37,359	19,119	1,505,350	302,534	409,345	16,220	14,245	13,436,966	2,372,426	13,436,966	17.7%
부산	-	-	6,598	-	8,826	200,485	36,504	92,290	8,611	4,346	3,386,162	348,963	3,386,162	10.3%
대구	-	-	4,014	-	5,933	108,075	18,606	43,948	3,145	2,432	2,073,421	181,288	2,073,421	8.7%
인천	6	13,927	10,378	3,854	7,764	158,480	35,572	150,594	7,671	4,205	2,754,964	384,041	2,754,964	13.9%
광주	-	-	3,114	0	3,518	88,886	16,363	23,734	1,754	2,177	1,202,985	135,192	1,202,985	11.2%
대전	-	-	2,227	0	3,829	101,921	22,687	35,603	2,200	1,719	1,320,566	166,749	1,320,566	12.6%
울산	-	-	4,766	0	6,874	305,195	53,740	37,382	1,349	2,673	1,493,288	406,633	1,493,288	27.2%
경기	2,020	36,426	50,951	13,493	34,138	799,269	187,854	586,934	52,405	16,625	13,288,767	1,746,917	13,288,767	13.1%
강원	-	-	3,210	-	3,905	67,536	10,735	49,465	1,635	2,407	1,344,637	134,079	1,344,637	10.0%
충북	-	-	3,715	-	6,545	107,566	24,365	39,195	4,557	4,551	1,443,528	181,405	1,443,528	12.6%
충남	-	-	7,238	-	11,148	271,834	50,076	64,319	4,145	6,989	2,426,342	401,772	2,426,342	17.0%
전북	-	-	3,061	-	5,683	99,952	18,448	26,568	2,781	3,847	1,456,057	152,641	1,456,057	10.5%
전남	-	-	5,702	-	7,351	184,834	23,076	40,022	3,138	5,448	1,622,293	258,675	1,622,293	15.9%
경북	-	-	5,660	-	12,097	194,956	49,280	60,654	8,189	5,602	2,499,249	325,235	2,499,249	13.0%
경남	-	-	5,537	-	13,515	241,971	65,792	102,253	6,410	6,678	3,504,746	428,803	3,504,746	12.2%
제주	-	-	2,053	-	1,243	24,775	3,299	26,939	526	691	684,103	58,145	684,103	8.5%

주석 : 개인과 법인이 구분되지 않는 세목의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음. 예) 취득세의 토지분, 주민세의 균등분 등
 자료 : 지방세정업감(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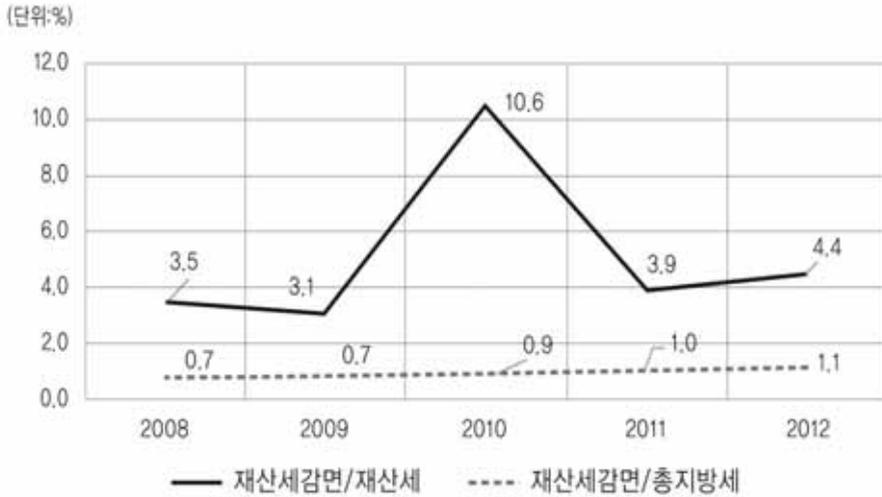
기업과 관련된 지방세는 아래<그림>과 같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74.13%)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재산세(20.46%), 등록세(5.87%)는 그 다음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7〉 기업(법인, 공장 등)관련 지방세 납부 규모



재산세 감면액이 총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 이하로서 미미한 편이나, 재산세 부분에서만 볼 경우 3.1%~10.6% 정도인 것으로 분석된다(아래 <그림> 참조).

〈그림 3-8〉 재산세 감면 비율



2) 지방세 제도 변화

지방세 관련 제도의 변화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1단계로서 조정 단계에서는 2001.1월부터 지방세분 교육세(국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되었고, 자동차세 과세방식에 변화가 있다. 또한, 2005년 종합토지세가 폐지되었고 재산세 항목이 강화 되었다. 2006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실거래가치에 대한 과세와 함께 세율이 인하 되었다.

다음 2단계에서는 신설된 세목들이 있다. 2010.1.1.부터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보통세(지방소비세: 도세, 지방소득세: 시·군세)로 도입되어 10.82조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에 따른 지방세수의 증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남욱, 2012: 176).¹³⁾

13) 지방소비세가 최종소비자가 아닌 소비자의 거주지로 귀착된 이유로 지방소비세의 배분지표인 민간최종 소비지출 지표는 지역 내 비거주자의 소비는 지역의 소비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지방세연구원, '지방소비세제 개선방안' 중) 정부는 2013년부터 지방소비세 규모를 확대하여 부가가치세의 10%로 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전환을 할 계획임(행정안전부, 「2010 행정안전백서」, 448면).

우리나라 지방세법에서는 종래 소득할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전환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향후 합리적인 보완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지방소득세의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고,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데, 소득세분의 세율은 소득세액의 10%이고, 법인세액의 10%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분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남욱, 2012: 176).

지방소비세는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지방소비세액을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김남욱, 2012: 176).

다음 3단계는 통·폐합 단계이다. 지방세법은 중복, 유사, 영세, 세목의 통·폐합을 통해 세목의 간소화와 균분화를 추구하여 2011년 이전에는 16개 세목이었으나, 2014년 현재는 11개 세목으로 2011.1.1 취득세 [취득세 + 등록세(취득관련분)], 등록면허세 [등록세(취득무관분) + 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공동시설세 + 지역개발세)로 세목체계를 간소화 하였다.

3) 기업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제도

가) 법적 근거와 개요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 수도권 소재 기업,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정책을 적용해 오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기업도시개발특

별법,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근거한 조세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법)¹⁴⁾에 따라 지정하는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이며, '13년 4/4분기 현재 지정되어 있는 산업단지는 총 1,033개이며 지정면적은 1,387km²이다(자유무역지역(7) 5,492천m², 외국인투자지역(18) 9,821천m²지정).¹⁵⁾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지정권자이며 일반산업단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총 528개 단지가 지정되어 있다.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는 동법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대(一團)의 토지임.

15) 유형별로는 국가산업단지가 41개로 4.0%, 일반산업단지가 528개로 51.1%, 도시첨단단지가 11개로 1.1%, 농공단지가 453개로 4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단지기준으로는 일반단지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면적기준으로는 국가단지가 58.0%, 일반 및 도시첨단 단지가 36.7%, 농공단지가 5.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3-14〉 산업단지 지정 및 관리현황('13.4/4분기 기준)

(단위: 개, 천m², %)

단지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관리면적	산업시설구역				
				전체면적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국가	41	804,506	576,689	276,638	247,793	241,817	5,976	97.6
일반	528	507,148	491,655	298,425	192,777	172,221	20,556	89.3
도시첨단	11	2,272	2,267	1,106	458	429	29	93.7
농공	453	72,828	71,752	55,246	50,815	47,872	2,943	94.2
총합	1,033	1,386,754	1,142,363	631,415	491,843	462,339	29,504	94.0

주1) 전체면적은 미개발면적을 포함한 산업시설구역 총 면적을 의미하며, 분양대상은 산업시설구역 중 조성된 면적(미개발면적제외), 분양률은 분양대상용지 중 분양된 면적의 비율임.

〈표 3-15〉 산업단지의 법적근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정 의	지정권자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국토교통부장관 (6조)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절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일정면적이하) (7조)
도시첨단산업단지	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일정면적이하) (7조2)
농공단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8조)

산업단지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한 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산업단지입지법 28조, 29조에 명시되어 있다.

지방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제도는 현금, 세제, 금융, 종전부지매입, 지방투자 행정지원 서비스가 있다. 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한 설비지원(입지지원 제외)을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국가균형발전특별법 2004년 제정), 교육훈련 지원 보조금의 국비지원 비중에 대한 규정내용이 2012년 6월 고시부터 삭제되었다.¹⁶⁾

16) 교육훈련지원 : 6개월× 60만원 이내/1인당-수도권기업 지방이전기업, 지방 신·증설기업

〈표 3-16〉 지방투자 활성화 관련 지원제도

지원제도	주 체	주요내용
세제지원	중앙정부(국세) 지방정부(지방세)	지방이전기업에게 법인세(국세), 취득세(지방세), 재산세(지방세) 등을 면제 및 감면
보조금지원	중앙정부(국비) 지방정부(지방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에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입지, 설비투자 지원, 교육훈련 지원 보조금 등이 있음
금융지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에서 지방이전 기업에 한해 장기 저리에 대출지원제도를 운영
중전부지매입지원	한국주택토지공사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는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기업이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부지를 용이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매입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지방투자행정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투자 포털정보망인 'COMIS' 를 운영하여 지방투자자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권역별 12개의 공장설립센터를 통해 지방투자 공장설립 업무를 대행함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활성화 방안, 2011

나) 조세 제도

수도권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국세(법인세), 지방세(취·등록세, 재산세) 감면 및 지방세 중과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2항(대도시의 범위)에 따르면, 동법 제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1)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을 말한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대도시의 범위)에 따르면, 동법 제7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0조 2항에 따르면,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 구역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제한적으로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63조의 2)하는 지역의 범위에 해당되어 단축된 법인세 감면 혜택 지역에 해당된다.

〈표 3-17〉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내용

구 분	감면내용	이전 대상	일몰기한	현 소재지	이전대상 지역
국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제60조)	공장	2014년말	대도시*	대도시 밖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제61조)	본점, 주사무소	2014년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밖
	법인세 6(4)년간 100%, 그후 3(2)년간 50% 감면(제63조) ¹⁷⁾	중소기업공장 ¹⁸⁾ (2년이상)	2014년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법인세6(4)년간 100%, 그후 3(2)년간 50% (감면(제63조의2) ¹⁹⁾)	공장, 주사무소 (3년이상)	2014년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밖 (공장시설 광역시 이전 경우, 산업단지만 해당)
지방세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제79조)	본점, 주사무소	2015년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대도시 외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제80조)	공장	2015년말	대도시**	대도시 외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제13조)	본점, 공장, 주사무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수도권과밀억제 권역내

출처 : <http://www.comis.go.kr/>, 조세특례제한법(국세)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 지방세법(지방세)²⁰⁾

* 대도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6조제2항

** 대도시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9조

***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1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4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함(제63조).

18)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 함께 이전 경우만 해당함.

19)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4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함(제63조의 2).

20) 조세특례제한법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지방세특례제한법 :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 설립 등을 억제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이전 인센티브 부여와 함께 역으로 수도권 진입 시 취득세 중과세를 실시하고 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또는 본사를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와 법인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 80조).

다) 보조금 제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25호)에 따르면, 국가의 보조금 지원대상²¹⁾은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 신·증설 기업, 국내복귀기업²²⁾ 및 개성공업지구²³⁾ 현지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타당성분석에 대해 평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보조금 신청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출한도액내에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 수도권기업 지방이전기업, 지방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총괄적인 보조금 범위기준은 동일하지만 추가지원비율 등의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차이를 두고 있다.²⁴⁾

21) 유치하는 기업이 보조금지원을 받는 투자사업장에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소비용서비스업, 부동산,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22)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규정내용은 2012년 6월 고시부터 포함됨.

2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규정내용은 2014년 1월 고시부터 포함됨.

24) 지방 신·증설기업의 경우는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규정만을 두고 있고, 11조에 따라 국가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용하되, 기업당 최고 6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음.

〈표 3-18〉 기업이전 지원기준

지역 분류	지원 유형	지원금액	지원범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지역	입지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65까지	해당없음	입지투자금액의 10%이내	입지투자금액의 30%이내
	설비 투자 지원		설비 투자금액의 6%이내 (선도·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은 8%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9%이내 (선도·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은 11%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12%이내 (선도·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은 14%이내)
수도권 인접 지역	입지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45까지	해당없음	해당없음	입지투자금액의 9%이내
	설비 투자 지원		설비 투자금액의 4%이내 (선도·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은 6%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6%이내 (선도·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은 8%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9%이내 (선도·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은 11%이내)
지원 우대 지역	입지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75까지	해당없음	입지투자금액의 20%이내	입지투자금액의 40%이내
	설비 투자 지원		설비 투자금액의 9%이내 (선도·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은 11%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17%이내 (선도·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은 19%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22%이내 (선도·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은 24%이내)

앞선 산입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기업유치 관련 보조금 지원은 국가가 해당 자치단체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보조하는 형태로서 공동부담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지방비 대비 국비 비중은 일반지역의 경우 최대 100분의 65, 수도권 인접지역의 경우 최대 100분의 45, 지원우대지역의 경우 최대 100분의 75까지로 규정되어 수도권이 아닌 낙후지역에 대한 기업유치를 유도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래 <표>에 따르면, 2014년 국비 부담 정도가 예년보다 낮아져 상대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인접지역의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이 더 높아 지방정부에 재정압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9〉 국가보조금의 비율 변화

지역 분류	지원금액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대한 국가보조금)		
	2011년	2012년·2013년	2014년
일반 지역	최대 100분의 70까지	최대 100분의 70까지	최대 100분의 65까지
수도권 인접지역	최대 100분의 60까지	최대 100분의 50까지	최대 100분의 45까지
지원 우대지역	최대 100분의 80까지	최대 100분의 80까지	최대 100분의 75까지

라) 자차단체별 보조금

광역자치단체의 기업투자와 관련한 각종 보조금(입지, 투자, 교육)과 지원(자금지원, 인력지원)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그 내용을 보면,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으나 전체적인 틀이나 규모면에서는 유사한 지원과 규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0〉 지자체별 입지보조금

구 분	지 원 내 용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 • 국내 기업이 공장·본사 또는 연구소를 시내로 이전하기 위해 용지 또는 건물을 분양받거나 매입·임차, 신축하는 경우에 50/100 범위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3년이상 소재,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기업이 이전 후 고용규모 유지, 100억원 한도 - 수도권 외 기업이 지역내로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상, 50억원 한도(고도기술수반, 산업지원서비스업, 시 전략산업 대상) ※ 투자규모가 500억원 이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클 경우 지원한도 초과 가능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 •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분양가, 토지매입가,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70% 범위내)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 • 분양가액(매입가액)의 20/100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하며, 수도권 소재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45/100까지 지원 가능(지원한도는 각종 보조금을 합하여 기업당 50억원 이내, 수도권 소재 이전기업은 최대 120억 이내)

구분	지 원 내 용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기업, 지방 신·증설기업(시 전략, 선도, 특화업종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산정시 지원타당성분석에 의한 점수를 백분율로 산정하여 지원비율 결정 - 국비 지원한도 : 10억원 미만(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외) • 입지보조금 산정 : 부지면적(㎡) × ㎡당 금액 × 40% × 지원비율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 • 도내 투자시 : 상시고용 20인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투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인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투자시 : 부지매입비 × 10% 범위 (10억원 한도) - 100인 이상 또는 200억원 이상 투자시 : 부지매입비 × 20% 범위 (30억원 한도) - 150인 이상 또는 250억원 이상 투자시 : 부지매입비 × 20~40% 범위 (40억원 한도) - 200인 이상 또는 300억원 이상 투자시 : 부지매입비 × 20~40% 범위 (60억원 한도)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 • 도내 기업이전시 이전보조비로서 신규건물 건축, 기존건물 취득시 10억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 5%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건물 임대시 3년간 임대료의 50%까지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 • 토지매입금액 또는 정상임대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보조 가능하며 임대료 차액 지원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 이내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 • 분사, 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연구개발업 이전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 취득가액의 3%, 건물임대시 연간임대료의 50%내 최고 5억원 지원 • 공장 이전시 총투자금액(토지매입비·임대료포함, 공장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등)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범위내 최고 50억원지원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6% 범위내에서 최고 50억원 지원)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 • 도내 이전 기업에 대해 산업단지내 토지의 경우 정상분양가, 정상지가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5,000㎡ 이상의 개별입지를 매입한 기업은 매입비 30%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 • 신·증설기업 : 도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 20인 이상인 기업이 3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 토지구입, 공장건축, 시설설치 등 투자비의 20% 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가능 •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해 고용창출, 기술개발 효과, 지역 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금액의 20%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가능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 • 수도권 이외 이전 기업은 정상분양가의 30%까지 기업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 • 수도권 이전기업은 토지 분양·구입·임대가의 50% 범위 내 지원 • 수도권 이외 이전기업은 토지 분양·구입·임대가의 25%범위 내 지원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2011.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활성화 방안 : p35-39

〈표 3-21〉 지자체별 투자보조금

구분	지원내용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 •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인 경우(수도권 소재 지역 전략, 지역선도산업 연관업종의 경우 상시고용 10명 이상) 건축비(매입·임차비 포함, 거주용 제외),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이 10억원 초과시 그 초과부담액의 15/100 범위 (50억 한도)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 •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지원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 - 수도권 이전 기업 : 설비투자액×10% 범위내(대기업 : 5% 이내) - 지방 신·증설 기업 : 설비투자액×10% 범위내 •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으로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5/100 범위까지 지원 가능하며, 수도권 소재 지방이전, 신·증설기업은 17/100범위까지 지원 가능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 •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금액의 10% 이내 - 설비투자비용(천원) × 10% × 지원비율 • 투자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 범위내 지원 (5억원 한도)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 • 30억원 이상의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내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 가능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20억원 한도)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 • 공장 신·증설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해 5%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 까지 지원 가능(토지매입, 건축, 시설설치비 포함)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 •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대해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액의 10/100 범위 내에서 보조 가능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 • 본사, 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연구개발업 이전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 취득 가격의 3%, 건물임대시 연간임대료의 50%, 시설·장비 설치투자금액의 3%범위내 최고 5억원 지원 • 공장 이전시 총투자금액(토지매입비·임대료포함, 공장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등)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범위내 최고 50억원 지원(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6% 범위내에서 최고 50억원 지원)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 • 도내에서의 공장 신·증설의 경우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증설할 때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 의 5~15% 범위 내 지원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 • 이전보조금의 성격으로서 토지구입, 공장건축, 시설설치등에 소요된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 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 • 수도권 이외 이전기업은 공장 신·증설시 30억원 초과금액의 2% 범위내(2억원 이내)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 • 이전 보조금으로서 수도권 이전기업은 시설 투자비의 10% 범위 내 지원(3억원 이내)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2011,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활성화 방안 : p35-39

〈표 3-22〉 지자체별 교육훈련보조금

구 분	지 원 내 용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 • 지역내로 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초과인원 1인당 80만원 내외로 6개월까지(2억 한도) - 고도기술수반산업, 시 전략산업, 산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 / 그 외의 산업은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 내외로 6개월까지(1억 한도)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 • 20인 이상 신규로 고용 후 교육훈련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6개월까지 지원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 • 20명을 초과하여 신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초과한 1인당 6개월까지 월 60만원까지 지원 가능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 • 고용인원 50인 이상인 기업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 3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1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인당 50만원 이하(5억원 한도)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 •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로 6개월까지 지원가능(기업당 2억원 한도)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 •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월 60만원 이내(10억원 한도)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 • 충북도민을 20명 이상 초과하여 신규채용 후 교육훈련시 초과한 1인당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로 지원가능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 •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최대 60만원 이내로 6개월까지 지원 가능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 • 도내거주자를 20인 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하기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초과 1인당 6개월 범위내 월 10~50만원까지 최고 5억원 지원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 • 1인당 최대 60만원 이내로 6개월까지 • 도내 투자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1인당 월 60만원 이내로 12개월까지 지원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 • 20명 초과 교육훈련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월의 범위내에서 지원(6억원 한도)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 • 20인 이상 신규 고용시 초과 1인당 6개월의 범위내에서 월 100만원(3년 이상 고용)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 지경부 기준 준용 • 수도권 이전기업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 수도권 이외 이전기업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2011.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활성화 방안 : p35-39

〈표 3-23〉 지자체별 기타지원금

구 분	지 원 내 용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육성자금 : 부산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자금(연리 4.9%), 시장정비자금(연 3% 변동) 중소기업 운전자금 : 융자금리-신청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은행의 금리에 연리 2~5% 보전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구조개선 자금(연 3% 변동) 경영안정자금 : 단기운전자금 융자지원, 은행의 융자대출금리에 대구시가 2~3% 이차보전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육성 구조고도화 자금 :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시설 및 구조조정자금(연리 3.72%) 중소기업육성 경영안정자금 :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에 적기 자금 지원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 소요자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제조전업률 30% 이상의 제조업 및 제조서비스업, 융자부분 이차 2년지원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연구개발 및 원부자재 구입비등 기업경영자금(금리 8.72% 이하, 이차보전 4% 이내)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활용 'L-Biz'자금 : 시제품 개발 등 특수목적자금으로 바이오, 신소재 등의 중점산업 육성이나 고유가, 원자난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긴급경영안전지원(금리 3%)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공장용지나 생산설비 확충을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재경부고시 기준금리+1.8%)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지식산업 지원자금 : 고부가가치 벤처, 지식산업 등 신성장산업 시설 및 운전자금(3.0%) 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 : 신규고용과 고용유지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해소(은행이자율 금리-2.5%) 청년창업지원자금 : 창업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청년창업자 발굴 및 창업지원(3.0%)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 첨단산업으로의 사업전환 또는 창업지원 등 시설투자 촉진(4.4%) 혁신형 중소기업자금 : 우수기술 및 개발기술 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변동 3.3~3.5%) 기업회생자금 : 천재지변, 노사분규 등의 기업여건, 환경변화에 따른 경영애로 해소(변동 3.0%)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운전자금의 이차보전(2.0%) 벤처기업육성자금 : 도내 우수창업 벤처에 저리의 시설, 운전자금 지원(연 3.0%)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차입평균+1%, 소상공인 100억 우선 배정 벤처기업 지원자금 : 시설투자와 운전자금 지원(고정 2.5%)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제조, 건설 및 관광숙박업까지 경영안정 지원(시중은행금리, 이차보전 3~6%) 희망경제펀드 투자 확대 : 공공투자펀드의 투자로 유망기술 보유기업에 직접투자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여성, 장애인, 이노비즈, 벤처기업 우대(일반중소기업 2.0%, 우대 2.5%) 중소기업 시설설비자금 : 낙후된 생산시설 교체(일반시중금리-이차보전율(중소 2.5%, 우대 3.0%))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육성자금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경영안정 지원자금, 지역특화산업 지원 자금 등 제조업 창업투자 보조금 : 제조업,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2011,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활성화 방안 : p35-39

제2절 국내·외 사례 분석

1) 음성군의 산업단지 유치와 재정관계

본 소절에서는 국내 사례로 충북 음성군의 지방산업단지의 입지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음성군은 수도권 규제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도 일부 지역 등이 기업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수도권에 가장 인접한 충북 및 충남 일부 지역에 기업이 입지를 선호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때 기업들에게 유치를 위해 지원한 제도적 현황과 함께 유치된 기업의 납세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전 장에서 분석한 이론적 내용과 부합되는 부분, 그리고 대치되는 부분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가) 인구 및 산업구조 추이

음성군 인구는 2000~2005년에 2,000여명 감소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거의 매년 증가하여 2013년 기준 93,505명이며, 이는 충북도내 인구 중 5.95% 비중에 해당한다.

〈표 3-24〉 음성군 인구추이

(단위: 명, %)

연도	인구	증가율	도내비중
1995	83,682	2.6	5.81
2000	87,956	0.2	5.87
2005	85,969	0.4	5.77
2010	91,093	1.5	5.88
2011	91,644	0.6	5.86
2012	92,980	1.5	5.94
2013	93,505	0.6	5.95

자료: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년도

또한 음성군의 산업구조 추이(2005년 기준년 가격)를 보면, 2010년 지역내 총생산은 2005년 기준년 가격 3,626억원이며, 도내총생산의 10.7%를 차지하고 있다.

〈표 3-25〉 지역내 총생산 추이

(단위: 억원, %)

연도	지역내 총생산	증가율	도내비중
2001	2,179	7.4	9.8
2002	2,197	0.9	9.2
2003	2,173	-1.1	8.8
2004	2,589	19.1	9.7
2005	2,830	9.3	10.6
2006	3,270	15.5	11.8
2007	3,234	-1.1	11.0
2008	2,760	-14.7	9.2
2009	2,810	1.8	9.0
2010	3,626	29.1	10.7

자료: 충청북도, 충청북도시군단위지역내총생산(GRDP), 각 년도

2012년 기준 사업체 수는 7,164개로 2010년부터 증가추세에 있으며, 종사자 수는 48,099명으로 2009년부터 증가하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그리고 2012년 기준 음성군에서의 제조업체 수는 1,276개이며, 종사자 수는 26,047명이다.

〈표 3-26〉 전체 사업체 및 제조업체 현황

(단위: 개, 명, %)

연도	사업체				제조업체			
	업체수		종사자수		업체수		종사자수	
	업체수	증가율	종사자수	증가율	업체수	증가율	종사자수	증가율
2007	6,351		39,439		1,123		21,462	
2008	6,180	-0.03	39,323	-0.00	1,046	-0.07	22,552	0.05
2009	6,159	-0.00	41,819	0.06	1,081	0.03	24,073	0.07
2010	6,358	0.03	44,237	0.06	1,104	0.02	24,912	0.03
2011	6,704	0.05	45,277	0.02	1,168	0.06	25,492	0.02
2012	7,164	0.07	48,099	0.06	1,276	0.09	26,047	0.02

자료: 음성군, 통계연보, 각 년도

음성군에서 종사자 10인 이상의 제조업체 수는 2007년까지 증가하다가 2008년부터 감소하였지만, 다시 2011년부터 증가하여 2012년 기준으로 520개에 이르고 있으며, 종사자는 23,074명이다. 2012년 기준 출하액은 10조 4,131억이며, 부가가치는 3조 4,303억 원이다.

〈표 3-27〉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체

(단위 : 개, 명, 백 만원, %)

연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부가가치		
	업체수	전년비 증감률	도내 비중	종사 자수	전년비 증감률	도내 비중	출하액	전년비 증감률	도내 비중	부가가치	전년비 증감률	도내 비중
2000	379	12.1	22.3	16,165	13.0	16.4	3,197,726	8.0	14.5	1,266,152	-2.6	12.1
2005	438	1.4	22.6	17,449	0.1	16.4	4,865,853	22.7	16.2	2,083,233	31.3	15.9
2006	470	7.3	22.5	18,504	6.0	16.7	5,469,631	12.4	16.2	2,303,977	10.6	15.8
2007	539	14.7	23.9	20,943	13.2	18.1	6,613,500	20.9	17.7	2,487,472	8.0	15.8
2008	461	-14.5	22.2	20,535	-1.9	17.6	7,144,386	8.0	17.6	2,419,259	-2.7	15.3
2009	451	-2.2	22.0	21,531	4.9	18.4	6,529,492	-8.6	15.1	2,318,682	-4.2	14.3
2011	500	-	21.5	22,273	-	17.0	9,814,222	-	16.5	3,328,394	-	15.3
2012	520	4.0	22.3	23,074	3.6	17.6	10,413,152	6.1	17.6	3,430,410	3.1	15.9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나) 재정 현황

2013년 음성군 예산은 일반회계 3,810억 원, 특별회계 902억 원으로 총 4,712억 원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표 3-28〉 예산규모 추이

(단위: 백 만원, %)

구 분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예산액	증가율	당초예산	비중	당초예산	비중
2009년	349,499		303,016	86.7	46,482	13.3
2010년	328,169	-0.06	281,671	85.83	46,498	14.17
2011년	380,635	0.16	308,403	81.02	72,232	18.98
2012년	432,540	0.14	352,270	81.44	80,270	18.56
2013년	471,264	0.09	381,035	80.85	90,229	19.15

자료: 재정고(<http://lofin.mospa.go.kr>)

2012년 음성군에서 징수된 조세는 도세가 614억 원, 군세가 637억 원으로 징수된 총액은 1,251억 원이며, 2009년부터 총액이 감소하였으나, 2011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표 3-29〉 조세징수 실적

(단위: 천원, %)

연도	계	도세		군세	
		징수액	비중	징수액	비중
2007	102,386,747	58,816,367	57.45	43,570,380	42.55
2008	105,064,820	52,433,696	49.91	52,631,124	50.09
2009	90,313,545	40,904,757	45.29	49,408,788	54.71
2010	97,934,054	44,732,319	45.68	53,141,735	54.32
2011	110,707,618	52,309,442	47.25	58,398,176	52.75
2012	125,166,759	61,411,624	49.06	63,755,135	51.94

자료: 음성군. 통계연보

음성군이 2012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이전재원은 2,591억이며, 2010년 잠시 감소하였으나, 2011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2012년 자주재원 총액은 지방세가 637억원, 세외수입이 1,195억 원인 총 1,833억 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70%에 불과하다. 자주재원은 2011년까지 감소하다가, 2013년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외수입의 큰 폭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표 3-30〉 이전재원 및 자주재원 추이

(단위: 백만 원)

연도	중앙정부 이전재원			자주재원		
	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계	지방세	세외수입
2008	209,193	126,055	83,138	194,937	47,091	127,846
2009	204,756	97,961	106,795	177,554	49,409	128,145
2010	199,997	104,933	95,064	125,790	53,142	72,648
2011	231,893	120,702	111,191	114,216	58,513	55,703
2012	259,174	139,620	119,554	183,309	63,755	119,554

자료: 음성군. 통계연보

다) 기업 유치 사례와 납세 현황

음성군은 현재 대풍지방산업단지, 대소지방산업단지, 소이지방산업단지, 금왕지방산업단지, 음성이테크지방산업단지, 음성하이텍산업단지, 맹동산업단지 등 7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음성인대산업단지, 원남지방산업단지, 육령지방산업단지, 중부지방산업단지, 상우 산업단지, 감곡상우산업단지, 리노삼봉산업단지, 생극산업단지 등이 진행 중에 있다.

이들 기업들에 대한 유치 지원으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세제지원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수도권내 중소기업이 지방이전 시 감면 내용으로는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감면, 그 다음 5년간 50% 감면이 된다.

〈표 3-31〉 수도권내 중소기업 지방이전 시 감면 내용

구분	감면세목	감면내용	비고
산업단지 신규입주	취득세·등록세	100% 면제	지방세법 제276조
	재산세	5년간 100% 감면	지방세법 제276조

또한, 자금지원으로는 산업,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우대점수로 5점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것에는 중소기업창업자금 및 경쟁력강화사업지원자금 등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32〉 유치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내용

구분	자금종류	지원규모	지원기간	금리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자금	시설자금	시설10억원 한도	시설 3년거치 5년상환	년 3.85% (보증서담보) (벤처 7.25%)
	운전자금	운전 3억원 한도	운전 1년거치 2년상환	년 3.85% (보증서담보) (벤처 1.0%)
중소기업경영 안전자금	운전자금 (이차보전)	2억원 한도	2년이내 일시상환	업체등급별자율금리 2.5%
	운전자금 (우대금리)	5억원 한도	3년이내 일시상환	CD+2% (보증서담보)
벤처·기술우수 중소기업 특별지원 자금	시설자금	3억원 한도	2년거치 3년상환	년 3% (일류벤처 2%)
	운전자금	2억원 한도	2년이내 일시상환	년 3% (일류벤처 2%)

본 연구에서는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 중 2005년 이후에 입지한 기업을 중심으로 최근 10여년 동안의 입지 추이와 입지한 기업들의 납세 현황을 보기로 한다. 그 대상 기업은 음성군의 추천을 받은 8개 기업으로 (주)원하이텍, (주)대금지오웰, (주)에이씨티, (주)한일제관, (주)대남스틸, (주)모닝후루츠, (주)화신, (주)이목원 등이다.

우선, 이들 기업이 2007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납세한 주요 4개의 지방세 세목에 대한 자료의 평균값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 3-33〉 음성군 8개 유치 기업의 주요 세목별 납세 현황(평균값)

(단위: 백만 원)

연도 \ 세목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2014	23,338,933	1,002,928	6,303,891	38,863,204
2013	20,220,450	1,010,614	2,066,250	37,600,508
2012	19,203,703	673,642.5	2,355,740	26,088,318
2011	15,489,133	1,155,840	1,806,746	20,871,974
2010	10,158,876	1,547,503	1,617,333	19,319,622
2009	9,359,760	1,127,783	12,596,628	
2008	4,503,012	790,260	19,807,950	
2007	5,440,620		34,108,833	
연평균증가율	23.1%	4.1%	-21.4%	19.1%

자료: 음성군. 내부자료

이들 기업이 많이 납세한 세목은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순이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2010년도 도입된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각 세목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재산세가 가장 높은 23.1, 지방소득세가 19.1, 자동차세 4.1, 주민세는 -21.4의 값을 얻었다.

또한 8개 기업의 중소기업 재무제표²⁵⁾에서 얻은 자료를 통해 매출과 각 세목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방소득세가 가장 높은 0.72, 재산세 0.69, 자동차세 0.3, 주민세 -0.07 등의 값을 얻었다. 이러한 결과 값을 통해 지역에 유치된 기업들의 이익 창출을 통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소득세와 재산세의 상관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25) 재무제표상의 매출 및 당기순이익은 기업정보이기 때문에 보고서 상에서는 명기를 생략함.

2) 일본의 기업유치와 재정과의 관계 분석

일본의 지자체 있어서 기업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사활을 건 경쟁이 앞 다투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유치는 고용창출과 세수입 증대로 직결되므로 지역활성화를 위한 즉효약 방안이 되기도 한다.

제조업의 일본 국내로의 회귀가 이어지고 있던 2000년대 초반, 미에현의 카메오카시의 샤프 액정공장유치를 계기로 자치단체간의 기업유치 경쟁이 과열되었으며, 기책과 조성조치의 격차가 확대되게 된다.

먼저, 도도부현과 정령지정도시의 경우, 2007년 일본경제신문사가 47개 도도부현과 17개 정령지정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최근 1년간에 타 자치단체와 기업유치를 위해 경쟁 경험이 있는가에 회답한 자치단체는 41자치단체, 61.1%에 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廣瀨, 2008). 예를 들면, 사카이(堺)시의 샤프신공장을 둘러싼 오사카부와 효고현(히메지시) 사이의 치열한 ‘유치 전쟁’이 확대되었다. 또한, 미야기현에의 공장입지를 정한 토요타 자동차의 생산자회사, 센트럴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산업의 집적을 계획하고 있는 북해도도 편승해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진출기업에 대한 보조금, 조성금도 고액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07년 9월말 시점의 보조금과 조성금의 상한액 랭킹을 나타내는 표를 보면, 상한액 50억엔 이상의 자치단체가 11개, 10억엔 이상의 자치단체가 44개 단체였다. 또한, 이와테(岩手), 미야기(茨城), 효고(兵庫)의 3현, 센다이(仙台), 니가타(新潟), 교토(京都), 히로시마(廣島)의 4개 시에 대해서는 상한이 없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유치 시책의 실시 상황을 나타내면, 기업유치의 전문 담당부서의 설치, 지사·시장의 톱 세일즈 등은 90% 정도의 자치체가 실시하고 있다. 타 자치단체, 기업 등과의 협의회 등의 공동설치, 기업입지 상담, 신청수속 등이 한 장소에서 가능한 원스톱 창구 설치 등에 있어서도 70%를 상회하는 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다. 한편, 기업유치에 협력한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 성공보수 제도는 30%에 머물고

있다. 성공보수 제도는 역내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정보를 제공한 개인·법인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성공보수를 지불하는 제도이다.

ex). 오사카시에서는 바이오, IT, 로봇, 환경관련기업의 유치에 성공한 경우, 협력한 민간 컨설턴트에 대해 성공 보수를 지불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이미 입지한 기업 등의 국내외 정보력을 활용하는 효율적인 기업유치시책이며, 보조금 경쟁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주목 가능한 추진 내용을 알 수 있음.

다음으로, 시정촌의 기업유치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면, 도도부현과 정령지정 도시에 비해 뒤쳐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입지센터가 전국 43도도부현, 1,067시정촌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의 조사에 따르면, 시정촌이 실시하고 있는 기업유치 활동의 내용은,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은데, 어느 시책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는 시정촌은 전체의 30%미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시정촌 중에도 인구규모에 따라 격차가 있으며,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정촌에서는 90%을 넘는 지자체가 기업유치가 실시되고 있는 한편, 기업유치를 포함하여 산업진흥책을 특별히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표 3-34〉 기업유치보조금·조성금 상한액 순위

순위	자치체명	상한액
1	大阪府	150億円 (30億円)
2	和歌山県	100億円 (100億円)
3	三重県	90億円 (90億円)
4	岐阜県	70億円 (70億円)
4	岡山県	70億円 (70億円)
6	千葉県	50億円 (50億円)
6	新潟県	50億円 (50億円)
6	富山県	50億円 (50億円)
6	大分県	50億円 (10億円)
6	宮崎県	50億円 (50億円)
6	横浜市	50億円 (50億円)
12	北海道	37億円 (37億円)
13	鳥取県	36億円 (36億円)
14	福島県	35億円 (5億円)
14	石川県	35億円 (35億円)
16	福井県	34億円 (34億円)
17	青森県	30億円 (30億円)
17	栃木県	30億円 (30億円)
17	滋賀県	30億円 (30億円)
17	高知県	30億円 (30億円)
17	佐賀県	30億円 (30億円)
17	長崎県	30億円 (11億円)
17	浜松市	30億円 (2億円)
17	大阪市	30億円 (30億円)
25	千葉市	25億円 (25億円)
26	神奈川県	22億円 (82億円)
27	秋田県	20億円 (20億円)
27	京都府	20億円 (20億円)
27	島根県	20億円 (20億円)
27	広島県	20億円 (20億円)
27	熊本県	20億円 (20億円)
32	徳島県	15億円 (10億円)
32	愛媛県	15億円 (15億円)
34	山口県	11億円 (11億円)
35	山梨県	約10.8億円 (約10.8億円)
36	宮城県	10億円 (10億円)
36	長野県	10億円 (3億円)
36	愛知県	10億円 (10億円)
36	福岡県	10億円 (10億円)
36	鹿児島県	10億円 (10億円)
36	沖縄県	10億円 (10億円)
36	さいたま市	10億円 (10億円)
36	名古屋市	10億円 (10億円)
36	北九州市	10億円 (10億円)

주 : 상한액을 설정, 2007년 9월말 시점에서 10억엔 이상의 자치단체만의 자료이며, () 안은 2006년 말 시점의 상한액

자료 : (廣瀬, 2008: 59)에서 재인용

〈표 3-35〉 도도부현·정령시의 기업유치 정책의 실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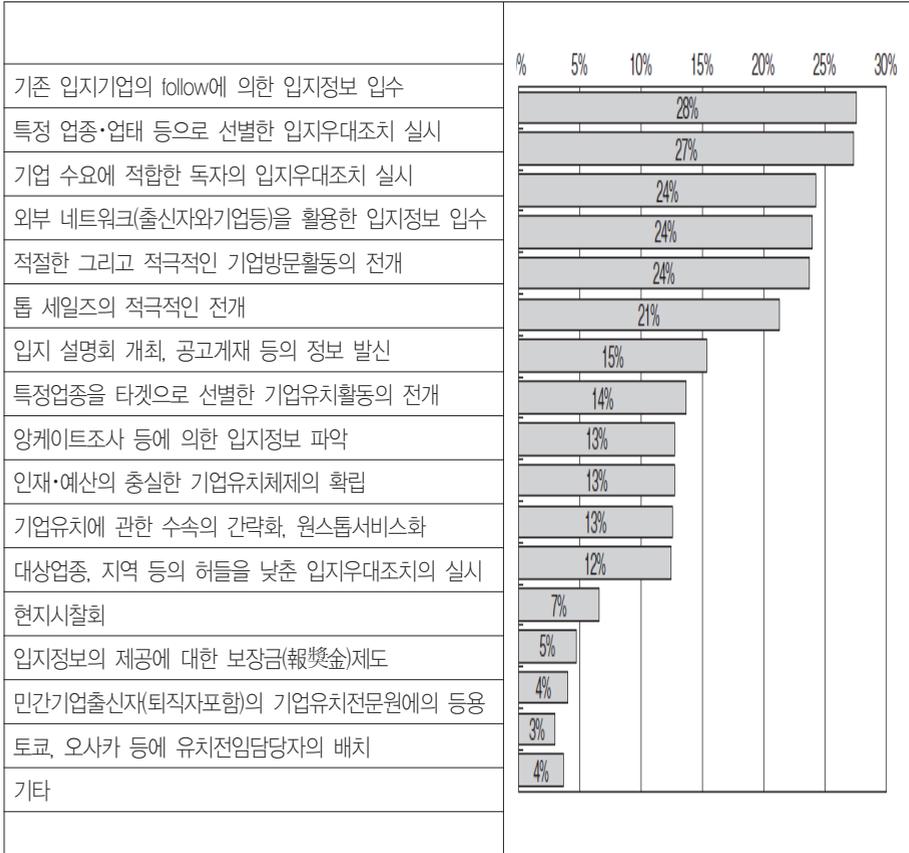
(자치단체수)

	도도부현	정령시
기업유치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담당부서가 있음		
지사(정령시의 시장)에 의한 톱 세일즈 전개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용지·건물 취득에 대한 보조금·조성금	44	16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비구입에 대한 보조금·조성금	44	13
기업유치를 추진하기 위한 전임 직원이 있음	43	13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리용자제도	42	14
타 지자체나 기업등과 공동 설치한 유치 조직(협의회 등)이 있음	40	16
기업입지 상담이나 신청수속등 한곳에서 가능한 원스톱창구가 있음	42	8
진출기업에 대한 세금 경감	37	12
‘기업유치추진본부’와 같은 부국 총괄하는 기업유치 추진조직이 있음	34	12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촉진조성금’ 등 고용자에 대한 보조금·조성금	37	5
공업단지의 리스제도(구입한 기업이 별도 기업에 임대 포함)	27	7
유휴지 등 용지의 DB구축과 제공(민간기업이 보유하는 토지 포함)	30	2
공업단지의 할부분양	28	3
유치업무담당으로서 민간기업출신자를 채용(비상근과 촉탁등 포함)	26	4
민간기업과 그 OB등 개인과 제휴, 정보제공과 알선(斡旋)·중개 등을 해 줌	22	8
공업단지의 정기차지권제도	19	5
기업유치에 협력한 개인과 법인에 대한 성공보수제도	18	3
공업단지 요지가격 인하	19	2
기업유치 추진을 목적으로 한 구조개혁특구	11	4
건축환인신청 등 각종수속의 신속화와 간략화 등	14	14
입지지원기업(진출기업에 용지·건물·설비 등을 임대하는 기업)의 조성 등	3	3
공업단지 용도를 변경, 제조업이외(소매점 등)의 입지를 가능하게 함	1	1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차보급제도	12	4
그외		

주 : 상한액을 설정, 2007년 9월말 시점에서 10억엔 이상의 자치단체만의 자료이며, () 안은 2006년 말 시점의 상한액

자료 : (廣瀬, 2008: 59)에서 재인용

〈표 3-36〉 시정촌의 기업유치 정책의 실시현황



주 : 조사 대상은 1,067시정촌, 복수응답 있음

자료 : (廣瀬, 2008: 59)에서 재인용

다음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지방세를 도도부현 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²⁶⁾

26) 여기서는 표준적인 세목을 게재하고 초과과세등 개별적인 도도부현의 각기 다른 세율등에 대해서는 게재하고 있지 않음.

〈표 3-37〉 기업이 납부하는 주요 도도부현세의 개요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법인사업세	사무소, 사업소를 소유한 법인		
소득할		소득 또는 청산소득	1.5%~5.3%
수입할		수입금액	0.7%
부가가치할		부가가치액	0.48%
자본할		자본금등의 액	0.2%
법인주민세			
균등할	사업소, 사업소 또는 숙소, 숙박소등을 소유한 법인	-	2~80만엔
법인세할	사무소, 사업소를 소유한 법인	법인세액	5%
이자할	이자등의 지불을 받는 법인	이자액	5%
법인소비세			
양도할	과세자산의 양도등을 하는 법인	과세자산의 양도 등에 따라 지불된 소비세액	25%
화물할	과세화물을 보세지역으로부터 인계한 법인	과세화물에 관한 소비세액	25%
지방법인 특별세	외형표준과세대상외의 기업	법인사업세소득할액	81%
	외형표준과세대상기업		148%
법인과 관련한 그 외의 세목	부동산취득세, 도부현담배세, 골프장이용세, 자동차취득세, 경유거래세, 자동차세, 광구세, 고정자산세(특례분)		

* 지방법인특별세는 국세이며, 법인사업세소득할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인구, 종업자수에 대한 도도부현에 「지방법인특별양여세」로 배분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도부현세로 기재함

이 경우 동경도 특별구의 구역에 있어서 도세가 되는 세목은 법인주민세(균등할), 법인주민세(법인세할), 고정자산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이다. 다음, 시정촌세에 관해서는 기업이 납부하는 주요 지방세목을 정리하면 다음표와 같으며, 여기서는 표준적인 세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초과 과세등, 세율 등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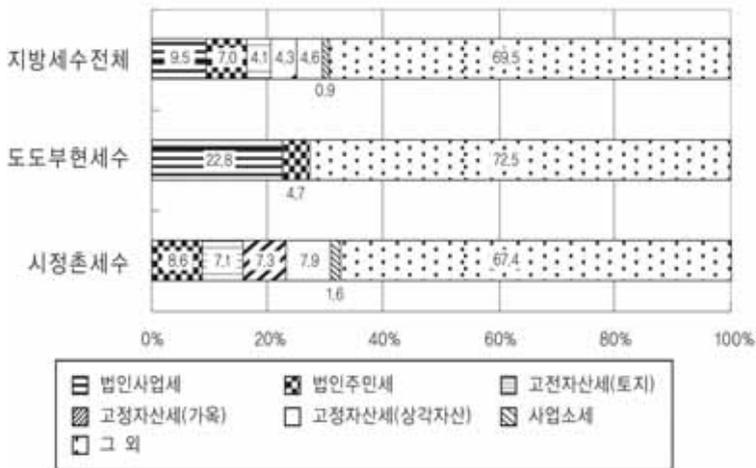
〈표 3-38〉 기업이 납부하는 주요 시정촌세의 개요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등
법인주민세			
(균등할)	사무소, 사업소 또는 숙소, 숙박소등을 소유한 법인	-	5~300만엔
(법인세할)	사무소, 사업소를 소유한 법인	법인세액	12.3%
고정자산세	고정자산의 소유자	고정자산의 평가액	1.4%
사업소세			
(자산할)	사업소등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	사업소 바닥 면적(m ²)	600엔/m ²
(종사자할)		종업자급여총액	0.25%
도시계획세	시가화구역내의 토지·가옥의 소유법인	고정자산의 평가액	0.3%
법인과 관련한 그 외의 세목	경자동차세, 시정촌담배세, 광산세		

다음은,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부담의 비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방세수에 접하는 기업부담의 비율은 2009년도를 기준으로 기업부담의 구성비를 보면, 기업부담분으로는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 ‘고정자산세(토지)’, ‘고정자산세(가옥)’, ‘고정자산세(상각자산)’, ‘사업소세’를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 법인사업세에는 지방법인특별양여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고정자산세에는 각각의 세액을 법인과 개인의 과세표준액으로 안분한 값을 표시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지방세수 전체 중, 30.5%(=법인사업세+법인주민세+고정자산세(토지)+고정자산세(가옥)+고정자산세(상각자산)+사업소세)가 기업부담의 세수로 보고 있다. 이 중 법인사업세가 가장 많은 9.5%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법인주민세가 7.0%로 되어 있다. 도도부현 세수에서 차지하는 기업부담의 비율은 27.5%(=법인사업세+법인주민세)이며, 이 중 법인사업세의 비율이 22.8%, 법인주민세 비율이 4.7%로 되어 있다. 시정촌 세수에서는 기업부담의 세수비율이 도도부현보다 높아 32.6%(=법인주민세+고정자산세(토지)+고정자산세(가옥)+고정자산세(상각자산)+사업소세)가 된다. 그 내역을 보면, 법인주민세의 비율이 가장 높은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고정자산세(상각자산)의 7.9%, 고정자산세(가옥)의 7.3%, 고정자산세(토지)의 7.1% 순으로 되어 있으며, 시정촌 세수에

서 기업부담분은 고정자산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 부담비율은 고정자산세를 포함하면 도도부현보다도 시정촌이 높게 되며, 이것을 빼고 소득과세만 보면, 도도부현 세수에서는 27.5%(법인사업세+법인주민세)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시정촌 세수에서는 8.6%(법인주민세)를 차지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그림 3-9〉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기업부담분의 비율(2009년도)



주 : 사사오입하였기 때문에 모두 합한 수치는 100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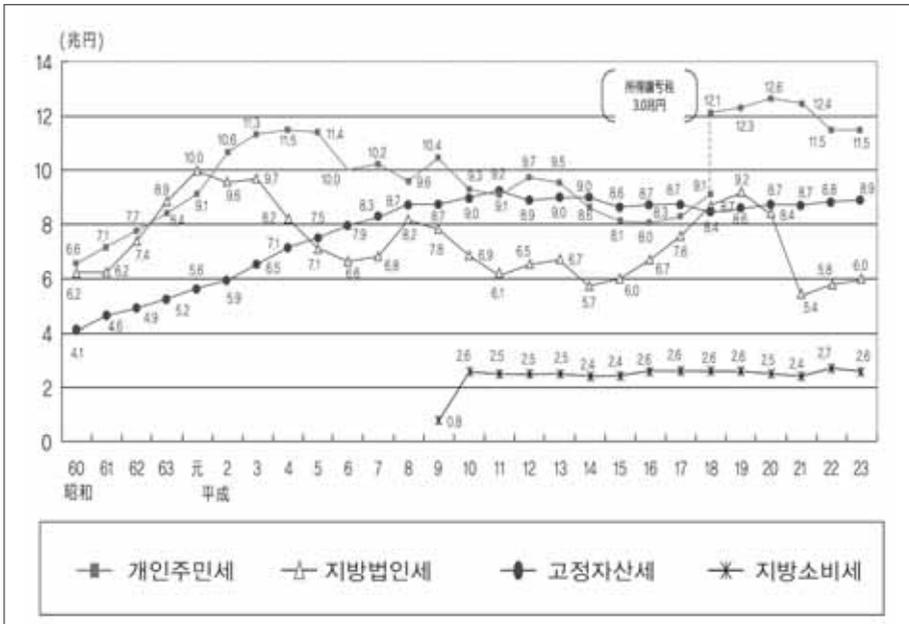
자료 : (企業活力研究所, 2012 : 9)에서 재인용

주요 지방세의 세수액은 쇼와(昭和)시대때부터 헤세이(平成)시대까지 순조롭게 확대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고정자산세는 2009년까지, 개인주민세는 1992년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고정자산세는 그 후 평행선을 긋는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주민세는 경기변동에 따라 소득변화에 따른 원만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2008년도에 2.6조 엔을 기록하였고, 그 후 이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지방법인2세(법인세와 법인주민세)는 버블기

인 1989년도에 10조엔 이었던 세수가, 1994년도까지는 6.6조엔 까지 감소하였다. 그 후도 경기 변동의 영향을 받아, 수조엔 규모로 변동을 해 왔다. 2004년도에는 5.7조엔까지 내려갔으나, 그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기업소득의 증가에 따라 2007년까지는 9.2조엔 까지 순조롭게 회복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로 리먼쇼크에 의해 경기 악화일로에 접어들었으며 2009년에는 5.4조엔 까지 급락하는 등 큰 변동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특히 법인사업세수의 비율이 큰 도도부현 세수에 이 사이 큰 변동이 생긴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10〉 주요 지방세에 있어서 세수액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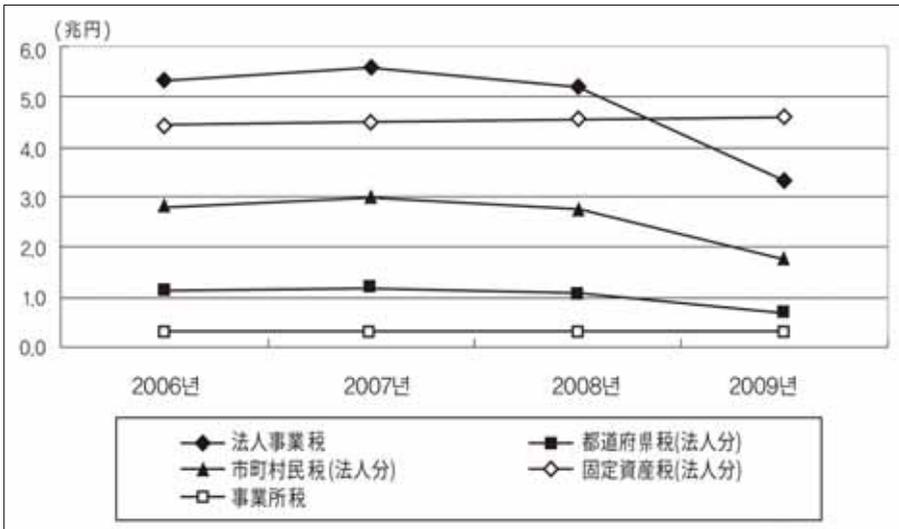


주 : 계수는 초과과세 및 법정외세 등을 포함하지 않으며, 지방법인특별양여세를 포함, 2009년도까지는 결산액(平成21년), 2010년(平成22년도)는 결산추정액, 2011년도(平成23년도)는 지방재정계획액임. 또한 2006년도부터 개인주민세에는 소득세에서 이양된 소득양여세 3.0조엔분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 (企業活力研究所, 2012 : 10.)에서 재인용

주요 지방세의 기업부담분을 한정하여 최근의 추이를 파악한 것이 아래 그림이다. 법인주민세는 도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로 나누어 표시하고 있다. 또한 2009년도의 법인사업세에는 지방법인특별양여세를 가상하고, 고정자산세는 법인분의 토지, 가옥, 감가상각자산을 더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²⁷⁾ 2009년도에는 기업부담분의 지방세수의 하락이 있으며, 이 중 법인사업세가 가장 감소하고 있다. 법인사업세는 2007년도의 5.6조엔부터 3.3조엔으로 저하하고, 2009년도는 2007년도의 59.6%까지 감소하고 있으나, 사업소세와 고정자산세의 2세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1〉 기업이 부담하는 지방세수의 추이



27) 고정자산세에 있어서 법인부담분은 세액을 법인과 개인의 과세표준액으로 안분한 값의 법인분을 계상하고 있음.

국제적으로 본 기업의 세부담 수준을 보면, 우선 OECD가 발행하고 있는 ‘Revenue Statistics 1965~2009’를 이용하여 구미 주요 3국과 일본 등을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법인과세의 비율이 GDP비 4.8%이며, 영국과 함께 법인과세의 규모가 크며, GDP비에서는 미국의 1.49배, 독일의 1.71배가 됨을 알 수 있다. 이 중, 법인소득과세의 대 GDP비에서는 일본은 3.8%가 되며, 이것은 영국보다도 크며, 미국의 2.33배, 독일의 2.06배이다. 이와 같은 대 GDP비로 보면, 일본은 미국, 독일과 비교하여도 법인과세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39〉 주요국의 법인과세의 비교(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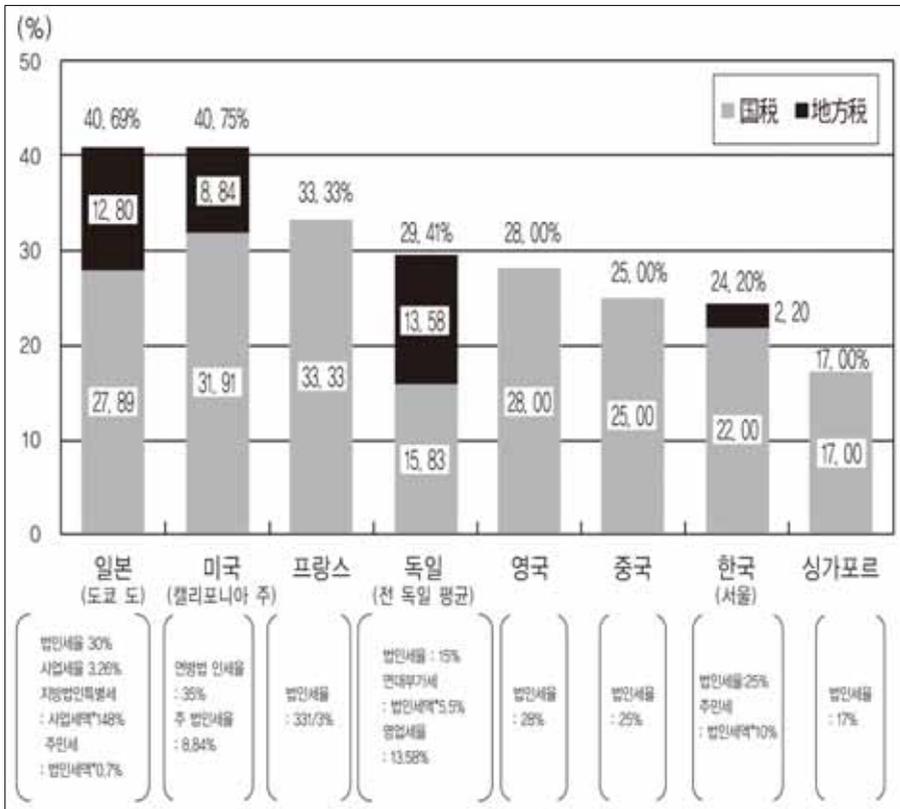
	일본(10억엔)		미국(백만달러)		영국(백만파운드)		독일(백만유로)	
	금액	GDP비	금액	GDP비	금액	GDP비	금액	GDP비
GDP	504,378		14,369,000		1,446,000		2,481,000	
① 소득과세	19,061	3.8%	236,036	1.6%	48,882	3.4%	46,932	1.9%
② 기업과세	사업세 (법인분) 2,752 (개인분) 217	0.5% 0.0%					영업세 (법인분) 24,491 (개인분) 16,546	1.0% 0.7%
①+②	19,278	3.8%	236,036	1.6%	48,882	3.4%	63,478	2.6%
③ 부동산과세	4,598	0.9%	229,817	1.6%	21,326	1.5%	6,484	0.3%
④ 그외 부동산과세	504	0.1%			1,355	0.1%		
③+④	5,102	1.0%	229,817	1.6%	22,681	1.6%	6,484	0.3%
①+②+③+④	24,380	4.8%	465,853	3.2%	71,563	4.9%	69,962	2.8%

주 : 일본의 경우, 소득과세에는 사업세(법인분)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 부동산과세는 도시계획세, 부동산과세와 그 외 부동산과세는 OECD(2010)데이터를 ‘고정자산 가격 등의 개요조사(2008)을 사용하여 개인과 법인으로 안분한 결과임. 부동산과세는 토지, 가옥, 상각자산의 과세표준에 차지하는 법인의 비율, 그 외 부동산과세는 토지, 가옥의 과세표준에 차지하는 법인의 비율을 곱하고 있음. 또한, 과세표준의 산출에 대해서는 법정면세점 이상의 가격이 아닌 경우는 이것을 사용함.

미국의 경우, 부동산과세는 세대이외의 부동산과세를 법인분으로 보고 계상하였으며, 영국의 경우는 부동산과세는 세대이외의 부동산과세를 법인분으로, 부동산과세는 비거주용비율로서 OECD(2010)의 National non-domestic rates와 Rates paid to LA, Northern Ireland rates paid to CG를 합산한 값임. 그 외 부동산과세는 세대이외의 값에서 비거주용비율을 공제한 것임. 독일의 경우는 소득과세에 영영세의 법인분을 포함하고 있음. 부동산과세는 세대이외의 부동산과세를 법인분으로 보고 계상하였음.

법인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에서는 일본은 40.69%이며, 미국은 40.75% 등 주요국들의 부담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유럽 각국은 약 30% 전후, 중국·우리나라는 20%이하, 싱가폴은 17%정도이다.

〈그림 3-12〉 법인소득과세의 실효세율의 국제비교 (2011년 7월 현재)



일본의 경우, 국가와 지방의 세수에서 차지하는 법인부담분을 보면, 국세 세수 전체에 차지하는 법인세의 비율은 15.6%, 지방재정계획에서 법인사업세와 법인 주민세의 지방법인2세가 1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도도부현에서 특히 높고, 도부현세에 차지하는 지방법인2세의 비율은 24.8%가 되며, 개인대상의 도부현민세수 32.7%에 이르는 규모이다.

제3절 국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이 3장에서는 국내의 음성군 사례와 일본의 사례를 들어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우선 국내 사례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외국의 기업 유치나, 수도권외의 기업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간 경쟁적 인센티브 제공은 적지 않은 부(-)의 영향을 준 것에 대해서는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음성군과 같이 수도권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있어 지리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경우는 특히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음성군은 유리한 입지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치된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들이며 이들이 정착단계에 있지 못해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담당 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둘째, 그러한 상황은 실제 2007년 이후 각 주요 지방세목별 납세 실적과 기업의 매출 실적과의 상관관계에서도 잘 알 수 있었다. 특히 주요 4개의 세목별 납입 상황을 보면 재산세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23.1, 지방소득세 19.1, 자동차세 4.1, 주민세 -21 등의 값을 얻었다. 이러한 조세 현황은 기업들의 매출액과 상관 관계에서도 재산세나 지방소득세가 0.69와 0.72의 값을 얻어 4개 세목 중 가장 높은 값을 얻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8개의 기업들이 유치된 이후 일정기간 정착단계까지 지방세 납세에 대한 부분은 기업이나 지자체나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소규모 기업들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신규 및 이전 입주하는 경우 쉽게 정착을 못하고 기업폐쇄나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경우가 종종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음성군에서는 산업단지 신규입주 기업에 대해 100% 취득등록세 면제와 재산세의 5년간 100%를 감면해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내 중소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소득세를 3년간 100% 감면하고 그 다음 5년간 50%를 감면하고 있다.

이러한 감세 및 감면 제도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감면일몰제하에서는 감면은 원칙적으로 일몰을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존속토

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의 조정 및 협의의 어려움으로 기득권화되어 전체 지방세 감면 중 57%이상이 15년 이상 장기간 혜택을 받아왔다(이보환, 2011: 6). 2011년 말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173,319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징수액의 33.1%이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지방세 징수액의 평균증가율은 134.0%인데 반해 비과세 감면액은 293.7%로 비과세 감면액이 두 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방세 수입의 증가에 비해 조세혜택을 목적으로 징수하지 못하는 비율이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삼주, 2013).

넷째,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조세 수입 중 기업의 조세 부담분은 특히 법인사업세가 높으며, 고정자산세와 시정촌민세(우리나라 주민세에 해당)와 사업소세 순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주요 선진국들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책정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낮은 수준에 있다.

다섯째, 일본에서도 기업유치 보조금과 조성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한액을 설정하여 과도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자치단체 간 출혈성 지출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중반 자치단체 간 과도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유치에 따른 재정지출의 문제가 큰 화두가 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본에서는 도도부현이나 정령시의 경우 각종 보조금이나 저리융자제도, 세금 경감, 고용촉진조성금을 통한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재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시정촌 등의 기초자치단체 측면에서는 입지우대조치 실시에 구체적 언급은 없으나 각 지자체별 선별된, 그리고 독자적인 재정 지원책을 가지고 유치 대열에 나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이러한 양국의 사례의 시사점을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기업유치와 관련한 재정지원 정책의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측면에서의 투자유치를 둘러싼 관계 정립이 중요한 것

이다. 즉 국가단위에서의 중앙정부의 투자유치 정책과 지방정부 중심의 투자유치 정책이 맥을 같이 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지역에서의 유치 경쟁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조정 및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이다.

〈표 3-40〉 제도 개선의 방향

시점	장점	단점 · 과제	시사점
지방 정부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유치에 따른 세수 증대 자주재원 비율의 증대, 교부세 의존도 감소 세수 증가에 따른 지방 공공서비스 공급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공은 반드시 투자유치의 결정적 요인은 아님 세입이 특정산업이나 기업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음(세수 안정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수 안정성 고려 외생변수(생산액)와 내생변수(세입, 사업체, 종업원, 급여액, 자산, 자동차, 인구 등)의 설정
중앙 정부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의 투자유치 경쟁은 기업진출이 지역 자원의 유효이용과 신규진입, 기업(起業) 촉진 경우는 유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간 기업유치경쟁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없는 기업의 지역 간 이동인 경우, 기업유치는 지역 간 소득이전에 지나지 않으며제로섬 게임에 불과 지방에의 투자유치촉진을 위해 중앙 정부에 의한 규제와 지방교부세 개선, 지방권한 강화 중요 국제기업 유치경쟁 중, 외자유제와 기업매수 규칙에 대한 개선, 국가단위의 투자 매력 향상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에서와 같이 재정지원책은 기초보다 광역차원에서 적극적 검토가 필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역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됨 기업 규모별 차별화된 정책 지원 필요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와 지방세 수입관계 분석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와 지방세 수입관계 분석 — Ⅱ

1) 분석 목적과 분석 방법

가) 목 적

본 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와 지방세 수입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를 나타내는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국가 산단을 제외한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농공산단의 단지 수, 분양 면적, 가동업체 수, 고용인 수, 생산 가치, 수출 가치를 사용하여 이들과 지방재원 증가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가 실제 지방재정 수입으로 잘 연계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활동의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요 지표인 소득, 소비, 기업이윤 등은 모두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로 이어지는 국세의 세원이다. 반면 지방세는 재산관련 과세 위주로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가 지방자치단체가 기대하는 대로 지방세수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의 성과를 대표하는 지표들과 지방세수입 간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 분석방법

본 절에서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

치 성과를 반영하는 주요 지표인 산단 단지 수, 분양 면적, 가동업체 수, 고용인 수, 생산가치 간의 관계를 추정한다. 이를 통해 지방세 수입의 기업유치 성과 탄력성(Local Effort Elasticity of Local Tax Revenue) 추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예컨대, 산단 단지 수 1% 증가에 대한 지방세 수입 증가율을 추정한다. 또한 추정 시 전체 지방세 수입의 지자체 기업유치 성과 변수 탄력성과 함께 주요 지방세 세목별로도 구분하여 추정할 예정이다. 만약 추정 결과 탄력성이 1보다 크게 나타난다면 지자체 기업유치 성과가 지방세수입의 증가로 제대로 연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립변수인 산단단지 수, 분양 면적, 가동업체 수, 고용인 수, 생산 가치 변수는 서로 선형관계 혹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탄력성 추정을 위해서 기업유치 성과지표들은 log 함수로 변형하여 사용한다. 이에 따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체크하기 위해 지방세 수입 종속변수로, 5가지 기업유치 성과변수를 독립변수로 두고 단순회귀한 다음, 공차한계(tolerance number)와 다중공선성 수치(VIF) 값을 계산해 보았다. 공차한계가 1에 가까워지면,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약해지며, 반대로 0에 가까워진다면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Mernard(1995)는 공차한계가 0.20 보다 작을 경우에는 다중공선성의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모형의 경우, 공차한계는 0.29954627로 0.20 이상이므로 다중공선성과 무관하다. 다음으로 다중공선성 수치는 설명변수 벡터가 선형종속에 가까울수록 큰 값을 갖게 되어 크면 클수록 다중공선성의 징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자마다 판단기준은 다양하나, 보수적인 기준은 Judge, Hill, Griffiths, Lutkepohl & Lee(1982)에서 보이듯이 5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본 모형의 경우, 다중공선성 수치는 3.3383825 이다. 따라서 다중공선성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2) 추정모형과 자료

가) 추정모형

기본적인 탄력성 추정모형은 식 (3.1)과 같다.

$$\begin{aligned} \log L.T_{i,t} = & \text{constant} + \theta_1 \log L.E_{i,t} + X'_{i,t} \beta \\ & + \theta_2 \times D_C \log L.E_{i,t} + e_{i,t} \end{aligned} \quad (3.1)$$

- $L.T_{i,t}$: 광역자치단체 i 의 t 기의 지방세수(혹은 세목별 지방세수)
- $L.E_{i,t}$: 광역자치단체 i 의 t 기의 기업유치 성과(산단 단지 수, 분양 면적 등)
- X' :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를 제외한 설명변수들의 벡터
- D_C : 수도권 지역 더미 변수; 서울, 인천, 경기도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이다.

※ 추정식 (1)에서 $D_C \times \log L.E_{i,t}$ 는 더미변수와 $L.E$ 가 곱해진 상호작용 변수(interaction variable)이다.

※ 지방세수 변수(총합, 세목별)와 기업유치 성과 대리 변수의 숫자에 따라 추정 모형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므로 이 분석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온 모형만을 표기하기로 한다.

나) 추정모형과 계수 추정치의 해석

추정계수 θ_1 , θ_2 및 θ_3 는 각각 기업유치 성과 $L.E$ 에 대한 지방세 $L.T$ 탄력성을 의미하는데, 추정모형에 따라 탄력성 계수 추정치에 대한 해석은 다소 달라진다.

통제변수 X' 와 상호작용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추정식은 다음 (3.2)와 같다.

$$\log L.T_{i,t} = \text{constant} + \theta_1 \log L.E_{i,t} + e_{i,t} \quad (3.2)$$

식 (3.2)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 $L.E$ 만 설명변수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추정 계수 θ_1 는 모든 지역의 평균적인 탄력성(elasticity) 값이 된다.

식 (2)에서 상호작용 변수가 추가되는 경우 추정식은 식 (3.3)과 같다.

$$\log L.T_{i,t} = \text{constant} + \theta_1 \log L.E_{i,t} + \theta_2 D_C \times L.E_{i,t} + e_{i,t} \quad (3.3)$$

θ_1 은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세수의 탄력성을, 그리고 θ_2 는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탄력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계수이다. 만약 θ_2 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이 값은 두 지역 간의 탄력성의 차이가 되며, 이 때 수도권 지역의 탄력성은 $\theta_1 + \theta_2$ 가 된다. 만약 θ_2 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탄력성 값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도권 지역의 탄력성도 θ_1 이 된다.

식 (3.2)에서 지방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X')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면 추정식은 다음의 식 (3.4)와 같아진다.

$$\log L.T_{i,t} = \text{constant} + \theta_1 \log L.E_{i,t} + X'_{i,t} \beta + e_{i,t} \quad (3.4)$$

이 때 기타 변수들이 제대로 고려된다면 계수 θ_1 은 다른 변수가 일정할 때 $L.E$ 의 변화만을 고려한 지방세 $L.T$ 탄력성 값이 된다. 만약 식 (4)에 상호작용 변수가 추가된다면 계수 추정치는 식 (3)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수도권 상호작용 변수가 추가되었을 경우는 다음의 식 (3.5)와 같다.

$$\log L.T_{i,t} = \text{constant} + \theta_1 \log L.E_{i,t} + X'_{i,t} \beta + \theta_2 D_C \times \log L.E_{i,t} + e_{i,t} \quad (3.5)$$

θ_1 의 계수 추정치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세수 탄력성을 나타내며, θ_2 의 추정

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수도권 지역의 지방세수 탄력성은 $\theta_1 + \theta_2$ 가 된다.

다) 자료

추정 기간은 산업단지 데이터가 시도 데이터로 구분되어 이용이 가능한 2002년부터 자료 입수가 가능한 가장 최근 해인 2012년까지이며 연도별 16개 광역자치단체 별 자료를 pooling한 자료를 이용한 패널추정방식을 이용한다.

종속변수는 각 광역자치단체의 연도별 지방세수(시·도세 및 시·군·구세 전체, 주요 세목별)를 사용한다. 설명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를 대리하는 산단 변수들과 함께 지방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취업자 수의 비중을 사용한다. 본 분석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는 실질치를 사용하여 추정하도록 한다. 추정에 필요한 자료는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산업통상자원부), 지방세정연감(안전행정부), 국세통계연보(국세청), 통계청 KOSIS 등에서 구하였다.

3) 추정결과

추정은 탄력성의 추정과 통제변수를 고려한 탄력성의 추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지방세수 탄력성은 전체 지방세수의 탄력성과 함께 주요 세목별 세수 탄력성을 추정한다. 또한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와 거래과세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제의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던 2005년을 전후로 세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탄력성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기를 구분하여 추정하기로 한다. 재산세(지방세)와 종합토지세(지방세)의 부동산보유세체제가 2005년 1월 종합부동산세의 신설로 인해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 체제로 바뀌었다. 과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체계에서는 각기 과세대상이 다르지만 부동산의 재산소재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는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 체계에서는 과세대상이 동일할 수 있음에도 부동산의 재산소재지와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의 차이를 보인다. (박훈·이선화, 2014) 2005년에는 재산세 외에도 많

은 변화가 있었는데, 지방세심사청구 결정기간이 연장되었고, (지방세법 제77조) 시가표준액 및 재산세 적용비율이 개선되었으며, (지방세법 제111조,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 과세표준이 법정화(시행령 제80조의3)되었다. 등록세의 세율이 인하되었으며, (지방세법 제131조) 면허세의 과세대상이 조정되었고, (시행령 제124조 제1항 별표 및 동조 제2항) 매매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비과세도 개선되었다. (시행령 제146조의2제2항)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이 조정되었고, (법 제196조의5) 담배소비세 세율도 인상되었다. (시행령 제173조의2) 개인간 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지방세법 제273조의2)과 산업단지 내 감면범위 확대 (지방법 제276조제1항 등)도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가) 지방세수의 탄력성 추정

□ 전체 지방세수에 대한 탄력성 추정 결과

<표 4-1>는 종속변수로서 17개 지방세목의 세수를 모두 합한 집계 지방세수(aggregate local tax revenue, 이후 지방세수로 칭함)를 이용한 탄력성 추정 결과이다. 추정 모형 (1)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유치 성과의 결과인 산단의 수, 산단의 면적, 산단내 가동기업의 수, 산단내 고용된 종업원의 수, 산단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가치가 증가할 때, 전체 지방세의 변화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산단의 숫자, 산단의 면적, 종업원 수, 생산액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숫자가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은 0.1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면적이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은 0.15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종업원 수가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은 0.09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생산이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은 0.01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지방세수의 자치단체 기업유치 성과 탄력성 (2002년~2012년)

		(1)	(2)
constant		20,979 ***	20,285 ***
log $L.E$	산단 수	0,125 ***	0,147 ***
	산단 면적	-0,157 ***	-0,152 ***
	가동기업 수	0,023	-0,001
	종업원 수	0,093 *	0,105 *
	생산액	0,017 ***	0,018 ***
$D_C \times \log L.E$	산단 수	-	-0,109
	산단 면적		0,466 *
	가동기업 수		-0,347
	종업원 수		0,402
	생산액		-0,019 *
F		48,07 ***	27,32 ***
Wald chi2		-	-
R^2		0,34	0,56
# of Obs.		166	166

주: 1) ***, **, 및 * 는 1%, 5% 및 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2) hausman test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적절한 경우 F값을, 임의효과모형이 적절한 경우 wald chi2 값을 표기한다.

3) 본 모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가 지방세수와 연결되는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의미가 크나 모형의 설명력은 큰 의미가 없다.

특이한 사항은 산단의 가동기업 수가 증가하면, 지방세 수도 증가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비록 산단의 숫자, 산단의 면적, 종업원 수, 생산액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여 전혀 탄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성이 1 이상이라면 지방세수가 탄력적으로 증대하므로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유치노력이 지방세로 바로 연결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모든 유의미한 변수들의 지방세수 탄력성이 0.2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면적이 1% 증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이 0.157% 미미하게나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익성이 없는 무리한 산단의 조성은 오히려 지방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추정 모형 (2)는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과 나머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유치 성과가 전체 지방세의 변화에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입지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조기현(2010)이 수행한 충청권 입지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청권에 입지한 기업들의 가장 큰 유인은 수도권에 가까워서 수도권에 가진 입지의 우월성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중앙 정부에서 수도권에 걸어둔 각종 경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업들의 수도권 선호 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이다. 이에 수도권 산업단지와 비수도권 산업단지는 지방세수로 연결되는 양태도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모형 (2)를 구성하였다.

모형 (2)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유치 성과를 나타내는 산단의 숫자, 산단의 면적, 종업원 수, 생산액이 다음과 같이 지방세 수입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먼저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숫자가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은 0.14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면적이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은 0.152%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종업원 수가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은 0.1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생산이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은 0.0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 따르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산단의 면적과 생산액에서 지방세 수입에 미치는 효과가 비수도권과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산단 면적의 지방세수 탄력성은 0.314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산단 면적의 지방세수 탄력성이 -0.105임에 비해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수도

권 산단의 경우 면적이 넓을수록 지방세수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수익성이 없는 무리한 산단의 조성을 경계해야 하는 비수도권과는 현실 조건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산단 생산액의 지방세수 탄력성은 0.086으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산단 생산액의 지방세수 탄력성에 비해 다소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단 생산액에서 지방세수로 이어지는 비중에 비해 다른 지방세를 거두어들이는 여력이 큰 수도권의 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을 적절히 설명해주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 시간 상호작용변수를 고려한 추정과 결과

2005년을 기준으로 삼은 시간 상호작용변수를 포함한 추정식은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begin{aligned} \log L.T_{i,t} = & \text{constant} + \theta_1 \log L.E_{i,t} + \theta_2 D_C \times \log L.E_{i,t} \\ & + \theta_3 \times D_t \log L.E_{i,t} + e_{i,t} \end{aligned} \quad (3.6)$$

만약 θ_3 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이 값은 두 기간 간의 탄력성의 차이를 의미하며, 2005년 이후 기간의 탄력성은 $\theta_1 + \theta_3$ 이다. 반면 θ_3 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두 기간 간에 탄력성 값은 차이가 없으며, 전 기간에 걸친 탄력성은 θ_1 이 된다.

<표 4.2>는 종속변수로서 지방세수를 이용한 탄력성 추정 결과이다. 추정모형 (3)은 지방세에 큰 변화가 있었던 2005년을 전후로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유치 성과의 결과인 산단의 수, 산단의 면적, 산단내 가동기업의 수, 산단내 고용된 종업원의 수, 산단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가치가 증가할 때, 전체 지방세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표 4-2〉 지방세수의 자치단체 기업유치 성과 탄력성 (2002년~2012년)

		(1)	(2)	(3)
constant		20.979 ***	20.285 ***	20.204 ***
log $L.E$	산단 수	0.125 ***	0.147 ***	0.091 **
	산단 면적	-0.157 ***	-0.152 ***	-0.091 *
	가동기업 수	0.023	-0.001	-0.021
	종업원 수	0.093 *	0.105 *	0.214 ***
	생산액	0.017 ***	0.018 ***	-0.100 **
$D_C \times \log L.E$	산단 수	-	-0.109	-0.017
	산단 면적		0.466 *	0.264
	가동기업 수		-0.347	-0.294
	종업원 수		0.402	0.332
	생산액		-0.019 *	-0.016 *
$D_I \times \log L.E$	산단 수	-	-	-0.011
	산단 면적			0.024
	가동기업 수			-0.004
	종업원 수			-0.133**
	생산액			0.118***
F		48.07 ***	27.32 ***	31.81 ***
Wald chi2		-	-	-
R ²		0.34	0.56	0.56
# of Obs.		166	166	166

주: 1) ***, **, 및 * 는 1%, 5% 및 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2) hausman test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적절한 경우 F값을, 임의효과모형이 적절한 경우 wald chi2 값을 표기한다.

3) 본 모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가 지방세수와 연결되는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의미가 크나 모형의 설명력은 큰 의미가 없다.

모형 (3)에 따르면, 2005년을 기준으로 지방산단 종업원 수의 지방세수 탄력성은 다소 비탄력적이 되었으며, 지방산단 생산액의 지방세수 탄력성은 다소 탄력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2005년 이전의 지방산단 종업원 수의 지방세수 탄력성은 0.214 였으나,

2005년 이후 0.079로 비탄력적이 되었다. 2005년에 주민세 수정신고납부 조항이 개선되어 소득세할, 법인세할의 납세지 판단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가 가능하게 하여 수정신고납부시 가산세 및 환부이자가 배제됨에 따라 다소 비탄력적으로 바뀌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5년 이전의 지방산단 생산액의 지방세수 탄력성은 -0.100 이었으나, 2005년 이후 0.018로 탄력적이 되었다. 2005년에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지방세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부채부동산 소유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부채부동산소유자인 법인 사업자도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다소 탄력적으로 바뀌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세부 지방세수의 탄력성 추정과 결과

<표 4-3>은 종속변수로서 17개 지방세목의 세수를 모두 합한 것이 아니라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로 나누어 세부 지방세 항목을 이용한 탄력성 추정 결과이다. 각 추정 모형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유치 성과의 결과인 산단의 수, 산단의 면적, 산단내 가동기업의 수, 산단내 고용된 종업원의 수, 산단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가치가 증가할 때, 취득세의 변화(모형 4), 재산세의 변화(모형 5), 주민세의 변화(모형 6)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모형 (4)에 따르면, 취득세의 변화는 생산액과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생산이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수입은 0.13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는 부동산 혹은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했을 때 증가하게 되므로 산단의 생산이 추가 자산 취득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설명해주는 결과로 보인다.

모형 (5)에 따르면, 재산세의 변화는 산단 수, 가동기업 수, 생산액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숫자가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수입은 0.36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가동기업 수가 1% 증

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수입은 0.38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생산이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수입은 0.11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징수하는 지방세이므로 산단의 숫자, 가동 기업의 수가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산단의 생산이 추가 자산 취득으로 이어졌을 경우 혹은 생산액이 많은 기업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표 4-3〉 지방세수의 자치단체 기업유치 성과 탄력성 (2002년~2012년)

		(1)	(4)	(5)	(6)
constant		20,979 ***	18,066 ***	18,707 ***	19,008 ***
log <i>L.E</i>	산단 수	0.125 ***	-0.114	0.361 ***	0.171 ***
	산단 면적	-0.157 ***	-0.055	-0.331	-0.314 ***
	가동기업 수	0.023	0.027	0.380 **	0.005
	종업원 수	0.093 *	0.002	-0.211	0.203 **
	생산액	0.017 ***	0.136 ***	0.110 ***	0.043 ***
F		48.07 ***	80.45 ***	34.80 ***	28.38 ***
Wald chi2		-	-	-	-
R2		0.34	0.05	0.41	0.33
# of Obs.		166	164	166	166

주: 1) ***, **, 및 * 는 1%, 5% 및 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2) hausman test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적절한 경우 F값을, 임의효과모형이 적절한 경우 wald chi2 값을 표기한다.

3) 본 모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가 지방세수와 연결되는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의미가 크나 모형의 설명력은 큰 의미가 없다.

모형 (6)에 따르면, 주민세의 변화는 산단 수, 산단 면적, 종업원 수, 생산액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먼저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숫자가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세 수입은 0.171%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면적이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세 수입은 0.3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종업원 수가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세 수입은 0.2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생산이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세 수입은 0.04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나뉘며, 개인균등분 및 종업원분으로 인해 산단의 숫자, 산단의 종업원 수와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균등분으로 인해 가동기업의 수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였으나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점, 지점 등 사업소를 둔 법인에 정액과세 하는 형태인데, 법인이 지점을 만들기 보다는 산단에는 공장만 두고 본점이 수도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산단 면적이 넓어지면 그만큼 재산분 소득이 늘어나는 관계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관계를 보이고 있다. 조례 제정이 미비하거나 자치단체가 큰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산단의 기업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면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생산액의 경우,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양의 관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과세표준액에 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본래 주민세의 일부였다가 2010년부터 독립하였으나 분석에서는 주민세에 포함시켰다.

나) 통제변수를 고려한 지방세수의 탄력성 추정

식 (3.2)에서 지방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X')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면 추정식은 다음의 식 (3.4)와 같아진다.

$$\log L.T_{i,t} = \text{constant} + \theta_1 \log L.E_{i,t} + X'_{i,t} \beta + e_{i,t} \quad (3.4)$$

이 때 기타 변수들이 제대로 고려된다면 계수 θ_1 은 다른 변수가 일정할 때 $L.E$ 의 변화만을 고려한 지방세 $L.T$ 탄력성 값이 된다. 지방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몇 가지 통제변수 X 를 추가하여 지방세수의 탄력성을 추정한다. 통제변수로는 지방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취업자 수의 비중을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실질치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 전체 지방세수와 개별 지방세수의 탄력성 변화

<표 3-4>은 통제변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정도를 반영해주는 취업률을 추가하고 종속변수로서 17개 지방세목의 세수를 모두 합한 지방세수를 종속변수로 이용한 모형(모형 7)과 종속변수를 각각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로 나누어 세부 지방세 항목을 이용한 탄력성 추정 결과이다.

〈표 4-4〉 지방세수의 자치단체 기업유치 성과 탄력성 (2002년~2012년)

		(7)	(8)	(9)	(10)
constant		19,902 ***	15,175 ***	17,020 ***	17,920 ***
log <i>L.E</i>	산단 수	0.132 ***	0.007	0.372 ***	0.178 ***
	산단 면적	-0.149 ***	-0.036	-0.319	-0.307 ***
	가동기업 수	0.037	0.064	0.402 **	0.019
	종업원 수	0.071	-0.054	-0.245	0.181 *
	생산액	0.016 ***	0.136 ***	0.109 ***	0.043 ***
취업률		0.019 *	0.051 **	0.029	28.38 ***
...	
...	
F		41.44 ***	70.82 ***	28.94 ***	23.79 ***
Wald chi2		-	-	-	-
R ²		0.20	0.03	0.39	0.33
# of Obs.		166	164	166	166

주: 1) ***, **, 및 * 는 1%, 5% 및 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2) housman test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적절한 경우 F값을, 임의효과모형이 적절한 경우 wald chi2 값을 표기한다.

3) 본 모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가 지방세수와 연결되는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의미가 크나 모형의 설명력은 큰 의미가 없다.

각 추정 모형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유치 성과의 결과인 산단의 수, 산단의 면적, 산단내 가동기업의 수, 산단내 고용된 종업원의 수, 산단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가치가 증가할 때, 취득세의 변화(모형 8), 재산세의 변화(모형 9), 주민세의 변화(모형 10)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통제변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정도를 반영해주는 취업률을 추가하는 경우, 취업률은 총 지방세수 중에서 취득세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재산세나 주민세의 변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소결

본 분석의 결과, 지방세수(Y)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X) 탄력성(elasticity)은 1에 미치지 못하여 탄력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는 지방세수 탄력성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차이가 많이 크지는 않다. 지방세제의 구조적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의 지방세수 탄력성의 변화로 반영되지만, 그 크기는 크게 탄력적이라 보기 어렵다. 통제변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정도를 반영해주는 취업률을 추가하는 경우, 취업률은 총 지방세수 중에서 취득세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재산세나 주민세의 변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와 지역경제력의 관계 분석

1) 분석 목적과 분석 방법

가) 목적

본 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를 나타내는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국가 산단을 제외한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농공산단의 단지 수, 분양 면적, 가동업체 수, 고용인 수, 생산 가치, 수출 가치를 사용하여 이들과 지역경제력 증가 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가 지역경제력의 증가로 잘 연계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4.1 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 즉 지방세 수입과 연계되는지를 실증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가 일부 지방세 수입과 연계되기는 하나 그 탄력성은 높지 않아 투입한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올리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설사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가 지방세 수입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역 경제력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와 지역 경제력의 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 문헌에서 지역 경제력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사용한 변수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역내 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자료였다. 그러나 지역 간 경제력 비교에 사용되는 GRDP지표는 적정성(적합성)에 관한 논란이 있다. 박완규(2009, pp. 110-111)는 GRDP 지표가 지역의 경제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지만 보다 객관적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체지표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들이 GRDP 통계를 활용한다고 주장한다. 임성일(2013, p.177)은 GRDP가 생산소득의 역외유출로 인한 생산소득과 분배·지출소득과의 심각한 괴리현상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GRDP는 적절한 지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네 가지 대체 변수(1인당 민간최종소비지출, 1인당 재산세, 1인당 주민소득세, 1인당 지방세)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1인당 민간최종소비지출이 지역 경제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와 지역 경제력의 관계를 파악하기로 한다. 지역별 민간최종소비지출은 “가계의 소비용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지출”의 합계이다. 민간최종소비지출 통계는 공급기반 중심의 통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소비의 포괄범위가 좁고 통계 생성과정에서 과대·과소 계상되는 문제와 함께 지역의 실제 소비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민간최종소비지출 데이터는 지역주민의 소비와 비 지역주민의 소비를 구분해 주지 못하는 한계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RDP의 역외유출 규모에 비해 우리나라의 주민·비주민의 소비 갭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그리고 거주자 원칙에 따라 거주자가계의 최종소비지출만을 추계하는 점(임성일, 2013; p.188)을 고려하면 지역 간 민간지출의 차이 수준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여 지역경제력을 측정하는 변수로 채택한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GRDP지표도 지역경제력을 측정하는 변수로 채택하여 결과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나) 분석방법

이 절에서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경제력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를 반영하는 주요 지표인 산단 단지 수, 분양 면적, 가동업체 수, 고용인 수, 생산가치 간의 관계를 추정한다. 주목적은 지역 경제력의 기업유치 성과 탄력성(Local Effort Elasticity of Local Tax Revenue) 추정이다. 예컨대, 산단 단지 수 1% 증가에 대한 지역 경제력 증가율을 추정한다. 추정 결과 탄력성이 1보다 크게 나타난다면 지자체 기업유치 성과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제대로 연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추정모형과 자료

가) 추정모형

기본적인 탄력성 추정모형은 식 (3.1)과 같다.

$$\log L.C_{i,t} = \text{constant} + \Theta_1 \log L.E_{i,t} + X'_{i,t} \beta + \Theta_2 \times D_C \log L.E_{i,t} + \Theta_3 \times D_M \log L.E_{i,t} + e_{i,t} \quad (3.1)$$

- $L.C_{i,t}$: 광역자치단체 i 의 t 기의 1인당 민간최종소비지출(최종보고서 결과 비교를 위해 GRDP도 사용)
- $L.E_{i,t}$: 광역자치단체 i 의 t 기의 기업유치 성과(산단 단지 수, 분양 면적 등)
- X' :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를 제외한 설명변수들의 벡터

- D_C : 수도권 지역 더미 변수; 서울, 인천, 경기도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이다.

- D_M : 대도시 더미변수; 특별·광역시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이다.

※ 추정식 (1)에서 $D_C \times \log L.E_{i,t}$ 와 $D_M \times \log L.E_{i,t}$ 는 각각 더미변수와 $L.E$ 가 곱해진 상호작용 변수(interaction variable)이다.

나) 추정모형과 계수 추정치의 해석

추정계수 θ_1 , θ_2 및 θ_3 는 각각 기업유치 성과 $L.E$ 에 대한 지역소비지출 $L.C$ 탄력성을 의미하는데, 추정모형에 따라 탄력성 계수 추정치에 대한 해석은 다소 달라진다. 통제변수 X' 와 상호작용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추정식은 다음 (3.2)와 같다.

$$\log L.C_{i,t} = \text{constant} + \theta_1 \log L.E_{i,t} + e_{i,t} \quad (3.2)$$

식 (3.2)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 $L.E$ 만 설명변수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추정 계수 θ_1 는 모든 지역의 평균적인 탄력성 값이 된다.

식 (2)에서 상호작용 변수가 추가되는 경우 추정식은 식 (3.3)과 같다.

$$\log L.C_{i,t} = \text{constant} + \theta_1 \log L.E_{i,t} + \theta_2 D_C \times L.E_{i,t} + e_{i,t} \quad (3.3)$$

θ_1 은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세수의 탄력성을, 그리고 θ_2 는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탄력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계수이다. 만약 θ_2 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이 값은 두 지역 간의 탄력성의 차이가 되며, 이 때 수도권 지역의 탄력성은 $\theta_1 + \theta_2$ 가 된다. 만약 θ_2 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탄력성 값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도권 지역의 탄력성도 θ_1 이 된다. 대도시 상호작용변수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도 탄력성 계수 추정치는 상기 해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된다.

식 (3.2)에서 지역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X')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면 추정식은 다음의 식 (3.4)와 같아진다.

$$\log L.C_{i,t} = \text{constant} + \theta_1 \log L.E_{i,t} + X'_{i,t} \beta + e_{i,t} \quad (3.4)$$

이 때 기타 변수들이 제대로 고려된다면 계수 θ_1 은 다른 변수가 일정할 때 $L.E$ 의 변화만을 고려한 지방세 $L.T$ 탄력성 값이 된다.

식 (4)에 상호작용 변수가 추가된다면 계수 추정치는 식 (3)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수도권 상호작용 변수가 추가되었을 경우는 다음의 식 (3.5)와 같다.

$$\log L.C_{i,t} = \text{constant} + \theta_1 \log L.E_{i,t} + X'_{i,t} \beta + \theta_2 D_C \times \log L.E_{i,t} + e_{i,t} \quad (3.5)$$

θ_1 의 계수 추정치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 소비지출 탄력성을 나타내며, θ_2 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수도권 지역의 지역 소비지출 탄력성은 $\theta_1 + \theta_2$ 가 된다.

다) 자료

추정 기간은 산업단지 데이터가 시도 데이터로 구분되어 이용이 가능한 2002년부터 자료 입수가 가능한 가장 최근 해인 2012년까지이며 연도별 16개 광역자치단체 별 자료를 pooling한 자료를 이용한 패널추정방식을 이용하였다. 종속변수는 각 광역자치단체의 1인당 최종소비지출을 사용하였다. 설명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를 대리하는 산단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모든 자료는 2005년도를 기준연도로 한 실질치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단, GRDP의 경우

GDP 물가상승률을 이용하는 기존의 2005년도 실질변수 보정을 사용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통계청에서 산출한 로우데이터 그대로 명목치를 사용하였으며, 지역 간의 인구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1인당 GRDP를 도출하여 추정에 사용하였다. 추정에 필요한 자료는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산업통상자원부), 지방세 정연감(안전행정부), 국세통계연보(국세청), 통계청 KOSIS 등에서 구하였다.

3) 추정결과

추정은 탄력성의 추정과 통제변수를 고려한 탄력성의 추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이후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 격차 반영을 위해 이를 구분하는 변수를 추가하여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또한 자치구 및 재정력 우수 군으로 이루어진 대도시권역과 나머지 지방의 경제력 격차 반영을 위해 이를 구분하는 변수를 추가하여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가) 지방경제력의 탄력성 추정

□ 지방 경제력에 대한 탄력성 추정 결과

<표 4-5>는 지방 경제력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로서 1인당 최종소비지출액을 이용한 탄력성 추정 결과이다.

추정 모형 (1)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유치 성과의 결과인 산단의 수, 산단의 면적, 산단내 가동기업의 수, 산단내 고용된 종업원의 수, 산단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가치가 증가할 때, 1인당 최종소비지출액의 변화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분석결과 산단의 숫자, 산단의 면적, 가동기업의 수, 종업원 수, 생산액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먼저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숫자가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최종소비지출액은 0.09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

단의 면적이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최종소비지출액은 0.088%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가동기업 수가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최종소비지출액은 0.05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종업원 수가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최종소비지출액은 0.04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생산이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최종소비지출액은 0.0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로 GRDP를 사용한 모형 (1-1)의 결과 역시 모형 (1)의 결과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종업원 수에 대한 탄력성 부분이 무의미하게 나타났다.

특이한 사항은 산단의 면적이 넓어지거나 종업원 수가 증가하면, 1인당 최종소비지출액도 증가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오히려 작게나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단을 형성하고 고용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보수는 산단에서 벌어서 지출은 외부에서 하는, 이동형 노동자들을 불러와서 지역의 부가 지역 외부로 새나가는 자본의 역외 유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들의 경우, 많은 부분 산업연수생이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그들은 벌어들인 돈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기보다는 고향으로 송금하는 등 역외로 이전시키는 금액이 많으므로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산단의 숫자, 산단 내 가동기업의 수, 생산액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여 전혀 탄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성이 1 이상이라면 지방의 소비지출이 탄력적으로 증대하므로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유치노력이 지방의 경제 활성화로 바로 연결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모든 유의미한 변수들의 지역 경제 활성화 탄력성이 0.1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5〉 지방경제력의 자치단체 기업유치노력 탄력성 (2002년~2012년)

		(1)	(1-1)	(2)	(2-1)
constant		2,925 ***	3,204 ***	2,427 ***	2,492 ***
log $L.E$	산단 수	0.091 ***	0.174 ***	0.089 ***	0.164 ***
	산단 면적	-0.088 ***	-0.215 ***	-0.102 ***	-0.230 ***
	가동기업 수	0.058 ***	0.104 ***	0.065 ***	0.125 ***
	종업원 수	-0.046 *	-0.009	-0.047 *	-0.002 *
	생산액	0.015 ***	0.031 ***	0.015 ***	0.030 ***
$D_C \times \log L.E$	산단 수			0.047	0.147 *
	산단 면적			0.373 ***	0.471 *
	가동기업 수	-	-	-0.347 ***	-0.507 **
	종업원 수			0.258 *	0.397
	생산액			-0.011 *	-0.018
F		76.53 ***	56.52 ***	49.01 ***	49.71 ***
Wald chi2		-	-	-	-
R ²		0.41	0.19	0.05	0.00
# of Obs.		166	166	166	166

주: 1) ***, **, 및 * 는 1%, 5% 및 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2) hausman test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적절한 경우 F값을, 임의효과모형이 적절한 경우 wald chi2 값을 표기한다.

3) 본 모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가 지방세수와 연결되는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의미가 크나 모형의 설명력은 큰 의미가 없다.

추정 모형 (2)는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과 나머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유치 성과가 지방의 경제 활성화 정도에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모형이다. 수도권 산단의 경우, 교통이나 행정지원이 용이하여, 자치단체가 들인 노력에 비하여 비수도권에 비교할 때 경제 활성화 정도가 높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수도권 산업단지와 비수도권 산업단지는 지방 소비지출로 연결되는 양태도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모형 (2)를 구성하였다.

모형 (2)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유치 성과를 나타내는 산단의 숫자, 산단의 면적, 종업원 수, 생산액이 다음과 같이 지방의 소비지출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먼저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숫자가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최종소비지출액은 0.08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면적이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최종소비지출액은 0.102%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가동기업 수가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최종소비지출액은 0.06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종업원 수가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최종소비지출액은 0.04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생산이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최종소비지출액은 0.0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로 GRDP를 사용한 모형 (2-1)의 결과 역시 모형 (2)의 결과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산단 수에 대해서는 유의미하게 나오고, 종업원 수와 생산액에서는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것만 차이가 있다.

모형 (2)에 따르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산단의 면적과 가동기업 수, 종업원 수, 생산액에서 지방의 소비지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비수도권과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산단 면적의 지방 소비지출 탄력성은 0.271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산단 면적의 지방 소비지출 탄력성이 - 0.102임에 비해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 산단의 경우 면적이 넓을수록 지방 소비지출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수익성이 없는 무리한 산단의 조성을 경계해야 하는 비수도권과는 현실 조건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산단 가동기업 수의 지방 소비지출 탄력성은 음수 (- 0.282)로 나타나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산단 가동기업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비지출이 커지는 (탄력성 0.065)이 커지는 것과 대조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산단의 가동기업이 줄어들수록 최종소비지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는 기존에 산단으로 활용되던 토지가 주거지 혹은 사무용지로 재개발되거나 산단이 이전한 이후, 주변 주거지의 인구 증가로 인해 최종소비지출이 늘어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수도권외의 경우 산단의 고용인원이 늘어날수록 최종소비지출이 늘어나고 있어 비수도권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비수도권 산단이 자본의 역외유출 현상을 겪고 있음에 비해 수도권 산단의 경우 자본의 지역 내 지출 혹은 자본의 역외유입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모형 (2-1)의 결과에서 이 부분이 무의미하게 나온 것은 역시 역외유입이나 역외유출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GRDP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도권(0.004)의 경우 비수도권(0.015)에 비해 산단의 생산액과 최종소비지출액이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단 생산액에서 최종소비지출로 이어지는 금액에 비해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비 여력이 훨씬 큰 수도권외의 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을 적절히 설명해주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모형 (2-1)의 결과에서 이 부분이 무의미하게 나온 것은 역시 역외유입이나 역외유출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GRDP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표 4-6>에 나타난 추정 모형 (3)는 서울, 부산, 대구 등 도시지역이 대부분인 특광역시와 도농복합 혹은 농림어촌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들의 기업유치 성과가 지방의 경제 활성화 정도에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모형이다.

심층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변 문화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노동인구 유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수도권 내의 산단 중에서도 대도시권에서 먼 일부 산단 입주 기업들은 극장, 음식점 등 문화시설이 위치한 근처 대도시로의 교통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노동인구가 빠져나가 기업 경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토로하고 있었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산단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가까이에 있는 대도시권에서 지출되게 됨을 의미한다.

〈표 4-6〉 지방경제력의 자치단체 기업유치노력 탄력성 (2002년~2012년)

		(1)	(2)	(3)	(3-1)
constant		2,925 ***	2,427 ***	2,668 ***	2,706 ***
logL.E	산단 수	0,091 ***	0,089 ***	0,088 ***	0,158 ***
	산단 면적	-0,088 ***	-0,102 ***	-0,024	-0,189 ***
	가동기업 수	0,058 ***	0,065 ***	0,007	0,034
	종업원 수	-0,046 *	-0,047 *	-0,002	0,155 **
	생산액	0,015 ***	0,015 ***	0,005 ***	0,017 ***
$D_C \times \log L.E$	산단 수		0,047		
	산단 면적		0,373 ***		
	가동기업 수	-	-0,347 ***	-	-
	종업원 수		0,258 *		
	생산액		-0,011 *		
$D_t \times \log L.E$	산단 수			0,114 ***	0,205 ***
	산단 면적			-0,113 **	0,004
	가동기업 수	-	-	0,161 ***	0,240 ***
	종업원 수			-0,106 **	-0,327 ***
	생산액			0,011 ***	0,016 *
F		76,53 ***	49,01 ***	56,42 ***	40,61 ***
Wald chi2		-	-	-	-
R ²		0,41	0,05	0,00	0,05
# of Obs.		166	166	166	166

주: 1) ***, **, 및 * 는 1%, 5% 및 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2) hausman test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적절한 경우 F값을, 임의효과모형이 적절한 경우 wald chi2 값을 표기한다.

3) 본 모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가 지방세수와 연결되는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의미가 크나 모형의 설명력은 큰 의미가 없다.

모형 (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유치 성과를 나타내는 산단의 숫자, 생산액이 지방의 소비지출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거의 무의미할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숫자가 1%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최종소비지출액은 0.08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 산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단의

생산이 1% 증가하면, 지방 자치단체의 1인당 최종소비지출액은 0.0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에 따르면, 대도시 부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산단의 숫자, 산단의 면적, 가동기업 수, 종업원 수, 생산액이 모두 지방의 소비지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비도시 부근 지방자치단체들과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대도시 부근 자치단체들의 산단 숫자가 늘어날수록 지방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비도시 부근 산단들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도시 부근 자치단체들의 산단 면적과 종업원 수는 적을수록 오히려 지방 소비지출 탄력성이 커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대도시 부근 자치단체들은 소득의 역외유입이 활발하여 부근 산단의 면적이나 종업원 수는 지방 소비지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경제력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1인당 GRDP를 사용한 모형(3-1)의 결과 역시 모형 3과 해석이 크게 다르지 않다. 종업원 수와 관련해서 모형 (3-1)의 결과에 따르면, 비도시 부근 자치단체들은 종업원이 많을수록 지방경제력의 탄력성이 높아지지만, 대도시 부근 자치단체들은 종업원이 적을수록 지방경제력의 탄력성이 높아지게 된다. 결국 해석은 대도시 부근 자치단체들은 소득의 역외유입이 활발하여 도시 부근 산단의 종업원 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이는 실제 상황에 대입해보면, 역시 역외유입이나 역외유출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GRDP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도시 부근 자치단체들의 가동기업의 수와 생산액이 많을수록 비도시권 자치단체들의 산단에 비해 지방소비지출 탄력성이 커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심층인터뷰에서 파악한대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수입을 대부분 문화시설이 많은 대도시권에서 소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결과이다.

4) 소결

분석결과, 지방경제력(Y)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X) 탄력성은 1에 미치지 못하여 탄력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종속변수로 실질 최종소비지출액을 사용하던지 1인당 GRDP를 사용하던지 분석결과나 해석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소득의 역외유출이나 역외유입을 고려한다면 GRDP보다는 실질최종소비지출액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는 지방소비지출 탄력성의 차이가 존재하며 수도권의 탄력성이 높다. 대도시권과 비도시권 사이에도 지방소비지출 탄력성의 차이가 존재하며 대도시권의 탄력성이 높다.

수도권과 대도시권에 소비지출이 집중화되는 역외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소비 시설 지원 및 지방문화시설 활성화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및 2.의 분석을 토대로 결론을 내려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는 지방세원의 확보에도 큰 효과가 없고, 지방경제력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가 지방세원으로 연계될 수 있는 세제 개편의 필요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가 지방경제력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는 지방문화시설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이 도출된다.



제5장 기업유치와 지방재정간 관련성에 관한 설문조사

제1절 조사의 개요

기존 문헌들은 지역 경제(재정)을 위한 기업유치에 대한 유인책에 관한 제도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현재 지방정부들은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및 비과세 등의 조세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 사례들을 보면, 대구시 달서구의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감면(산업단지 분양), 취득세 50%감면(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기업), 수도권이전기업은 산업단지 및 대상기업에 상관없이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비록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유치기업에 의해 유발된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조세유입도 발생하지만, 조세지원(재정지원)은 조세지출²⁸⁾로서 지방재정차원에서 세입유출이 발생하게 된다. 즉, 조세 유·출입 규모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치는 기업유치의 영향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데이터에 따른 실증분석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실무공무원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계량 분석에서 포함하지 못한 내용을 보완하고, 지방정부 측면에서의 기업유치 개선사항을 제안하도록 한다.

조사 대상은 지방산업단지가 지정된 98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기업투자

28) 조세지출의 개념은 미국 재무부 차관보였던 Surrey(1967)에 의해 제시됨. 조세지출은 정부가 실제로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조세 감면을 일컫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지출이지만 지방정부가 일정부분 세수입의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유치 및 재정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개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²⁹⁾ 총 294부(98×3)를 배포하여 회수된 설문지는 105부로 35.7%의 회수율을 보였다.

조사방법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기반 설문조사 사이트를 활용하고 전화 및 이메일 조사를 병행하여 2주 기간 동안 진행(8월18일~8월29일)하였다. 기업유치와 지방재정에 대한 인지 조사 내용은 ‘기업유치와 지방재정에 관한 일반적 인지사향, 기업유치 지원제도와 지방재정간 관련성에 관한 인지, 기업특성과 지방재정간 관련성에 관한 인지’에 대한 설문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아울러, 분석 방법은 각 설문문항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제2절 설문조사의 분석 내용

설문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 본 설문의 응답자는 총 105명이며, 이 중 응답자 특성을 밝힌 응답자는 78.1%인 82명에 해당됨
- 설문응답자의 자치단체 소속은 시·도가 50명, 특별·광역시인 경우는 32명임
- 설문응답자의 업무 특성의 경우, 투자유치관련 부서 22명, 예산관련 부서 9명, 재정관련 부서 51명으로 상대적으로 재정관련 응답자의 비율이 높음
- 직급에 있어서는 7급 이상인 경우가 약 62%였으며, 해당 직급에 소속된 기간은 평균 46.60개월(3.8년)인 것으로, 지방정부의 공무원으로서 주요 실무에 참여하는 직책 및 근무기간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직렬의 경우에는 일반행정직 32.4%, 세무직 39%, 기타(연구직, 기술직) 6.7%이며, 이에 소속된 근속기간은 평균 16.49년인 것으로 조사됨
- 평균연령은 과반수에 가까운 응답자가 40대였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4배정도 많았음

29) 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첨단단지,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제외함.

이상의 특징들에서, 설문의 응답자들은 기업유치, 기획예산, 세정 등의 실제 기업유치와 지방재정에 관여하는 담당자 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98개의 지방산업단지가 입지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설문 조사를 했기 때문에 국가산단이나 농공산단과 같이 특수성을 가지며, 지자체의 관여와 독자성,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제한 받는 경우는 적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다.

〈표 5-1〉 설문 응답자의 특성

설문 문항	구분	빈도	백분율(%)
자치단체	특별·광역시	32	30.5%
	시·도	50	47.6%
	무응답	23	21.9%
	총계	105	100.0%
업무구분	투자유치관련	22	21.0%
	예산관련	9	8.6%
	재정관련	51	48.6%
	무응답	23	21.9%
	총계	105	100.0%
직급구분	5급	3	2.9%
	6급	20	19.0%
	7급	42	40.0%
	8급	13	12.4%
	9급	4	3.8%
	무응답	23	21.9%
	총계	105	100.0%
직렬구분	일반행정직	34	32.4%
	세무직	41	39.0%
	기타	7	6.7%
	무응답	23	21.9%
	총계	105	100.0%
성별	여성	16	15.2%
	남성	66	62.9%
	무응답	23	21.9%
	총계	105	100.0%
연령	20대	1	1.0%
	30대	22	21.0%
	40대	46	43.8%
	50대	13	12.4%
	무응답	23	21.9%
	총계	105	100.0%

기업유치와 지방재정에 관한 일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재정에 미치는 편익효과에 대해서는 고용증가 측면에서 84.8%(89명), 소득증가에서는 72.4%(76명), 인구증가 측면에서는 65.8%(69명)이 편익효과가 매우 크거나 크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유관기관의 유입에 대해서는 ‘보통’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40.0%(42명)으로 가장 많았고, 효과가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17.1%(18명)로 조사되어 비교적 유관기관의 유입에 대해서는 편익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점 리커트 척도값으로 환산한 평균값으로 비교하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편익효과 중에서는 고용 및 소득에 따른 편익효과가 인구 및 유관기관 유입에 비해 높게 분석되었다.

〈표 5-2〉 편익효과 문항

1. 귀하께서는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재정에 미치는 편익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Options	매우 크다	크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Response Count	평균	표준편차
고용증가 (백분율)	38 36.2%	51 48.6%	14 13.3%	2 1.9%	0 0.0%	105 100%	4.19	0.74
소득증가 (백분율)	25 23.8%	51 48.6%	25 23.8%	4 3.8%	0 0.0%	105 100%		
인구증가 (백분율)	22 21.0%	47 44.8%	27 25.7%	9 8.6%	0 0.0%	105 100%	3.78	0.88
유관기관유입 (백분율)	14 13.3%	30 28.6%	42 40.0%	18 17.1%	1 1.0%	105 100%		

Item	Average Score
고용증가	4.19
소득증가	3.92
인구증가	3.78
유관기관 유입	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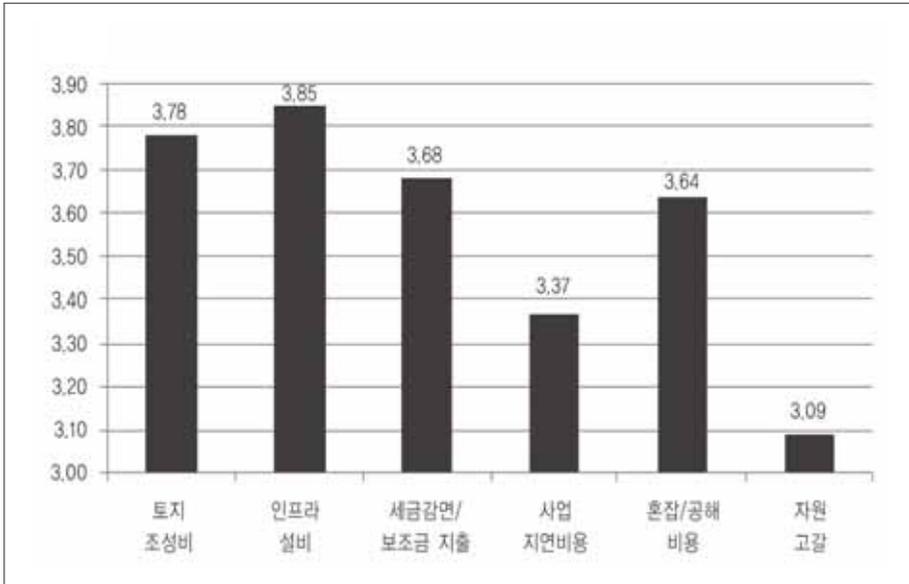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재정의 비용효과는, 토지조성비에서는 55.2%(58명), 인프라설비에서는 59.0%(62명), 세금감면과 보조금지출 측면에서는 56.2%(59명), 사업지연비용 면에서는 45.7%(48명), 혼잡과 공해비용 면에서는 51.4%(54명)가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 자원고갈 측면에서는 42.9%(43명)의 응답자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비용효과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재정에 미치는 비용효과가 ‘매우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1.0%(0명~1명)이하로 거의 없으며, 효과가 ‘낮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 항목에서 10%이하로 나타나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재정의 비용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용효과 측면에서는 인프라설비가 다른 토지조성비, 세금감면/보조금지출, 사업지연비용, 혼잡/공해비용, 자원고갈에 비해 비용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비용효과 문항

2. 귀하께서는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재정에 미치는 비용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Options	매우 크다	크다	보통 이다	낮다	매우 낮다	Response Count	평균	표준편차
토지조성비	14	58	30	2	1	105	3.78	0.73
(백분율)	13.3%	55.2%	28.6%	1.9%	1.0%	100%		
인프라설비	15	62	26	1	1	105	3.85	0.70
(백분율)	14.3%	59.0%	24.8%	1.0%	1.0%	100%		
세금감면/보조금지출	10	59	28	8	0	105	3.68	0.75
(백분율)	9.5%	56.2%	26.7%	7.6%	0.0%	100%		
사업지연비용	2	48	43	11	1	105	3.37	0.74
(백분율)	1.9%	45.7%	41.0%	10.5%	1.0%	100%		
혼잡/공해비용	11	54	31	9	0	105	3.64	0.79
(백분율)	10.5%	51.4%	29.5%	8.6%	0.0%	100%		
자원고갈	4	29	45	26	1	105	3.09	0.84
(백분율)	3.8%	27.6%	42.9%	24.8%	1.0%	100%		



현재 기업유치에 따른 지방세 수입이 안정적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36.2%(38명)이 ‘보통’이라고 대답했으며, 40.0%(40명)이 지방세 수입이 안정적이라 답변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에 있어 기업유치가 지방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세입이 안정적이라는 긍정적 대답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표 5-4〉 안정성 문항

3. 귀하께서는 현재 기업유치에 따른 지방세 수입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Options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Response Count	평균	표준편차
	6	36	38	24	1	105	3.20	0.88
(백분율)	5.7%	34.3%	36.2%	22.9%	1.0%	100%		

지방자치단체들 간 기업유치 경쟁이 오히려 지방재정의 감소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그렇다 30.5%(32명)’, ‘보통이다 31.4%(33명)’, ‘그렇지 않다 29.5%(31명)’라는 응답 모두 30% 정도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결과 값을 얻었다. 이것은, 2000년대 중반에 지자체간 기업유치 경쟁이 격해 지면서 지자체마다 자중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이한 지원제도가 오히려 기업들을 수도권으로 다시 리턴하게 하는 원인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설문에서도 ‘그렇다’와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60% 이상이 공감하는 것으로 판단 될 수 있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을 설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된다.

〈표 5-5〉 지방정부간 경쟁에 관한 문항

4. 귀하께서는 지방자치단체들 간 기업유치 경쟁이 오히려 지방재정의 감소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Options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Response Count	평균	표준편차
	6	32	33	31	3	105	3.09	0.98
(백분율)	5.7%	30.5%	31.4%	29.5%	2.9%	100%		

기업유치 지원제도와 지방재정간 관련성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유치기업이 지방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질문에는 63.8%(67명)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의견은 4.8%(5명) 정도로 매우 미비한 것으로 보아 유치기업이 지방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지방정부의 지원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되나 단, 전술한 바와 같이 유치 및 지원 경쟁에 따른 ‘득’보다 ‘실’이 많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사한 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6〉 지원제도 관심에 관한 문항

5. 귀하께서는 유치기업이 지방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Options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Response Count	평균	표준편차
	14	53	33	4	1	105	3.71	0.78
(백분율)	13.3%	50.5%	31.4%	3.8%	1.0%	100%		

유치기업 지원제도 중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도로는 입지보조금으로 응답한 비율이 41.9%(44명)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금융지원 21.9%(23명), 지방세감면 20%(2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업들이 입지 부분에 있어 과정 상 처음 재정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설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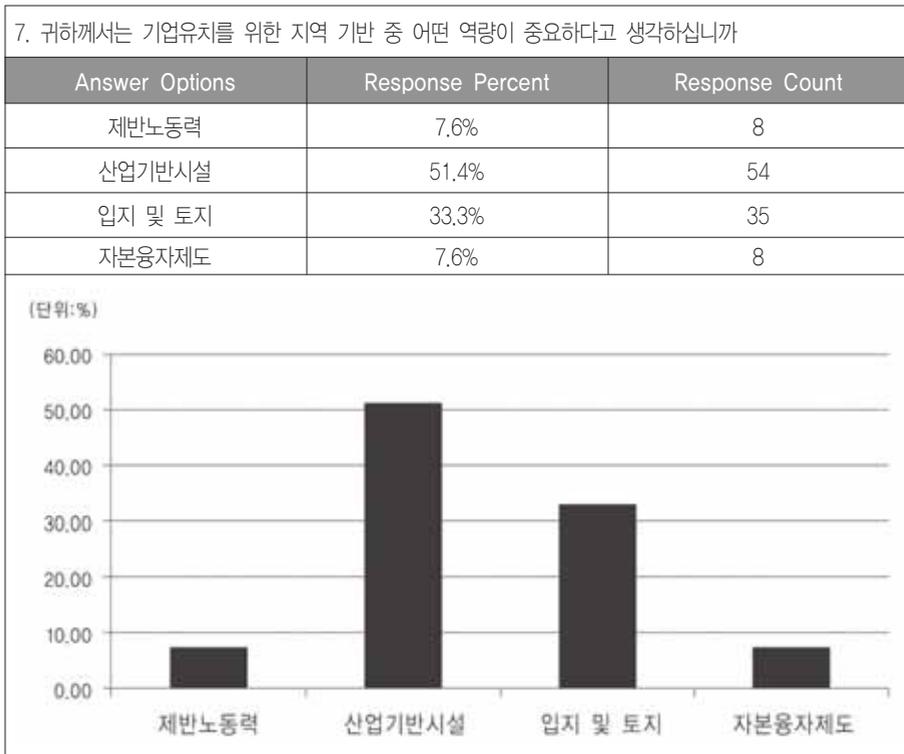
〈표 5-7〉 선호제도에 관한 문항

6. 귀하께서는 유치기업 지원제도 중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Options	Response Percent	Response Count
지방세감면	20.0%	21
부담금감면	8.6%	9
입지보조금지원	41.9%	44
기타보조금지원	7.6%	8
금융지원	21.9%	23

Support System	Response Percent	Response Count
지방세 감면	20.0%	21
부담금 감면	8.6%	9
입지보조금 지원	41.9%	44
기타 보조금 지원	7.6%	8
금융 지원	21.9%	23

기업유치를 위한 지역 기반으로는 산업기반시설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4% (5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지역의 산업기반 시설 역량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입지 및 토지 기반은 33.3%(35명)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고, 제반노동력이나 자본용자제도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명)으로 두 지표가 같게 나타났다.

〈표 5-8〉 지역역량 문항



지방정부에서 기업 유치 시 발생하는 ‘지방세 감면’의 규모가 크지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자의 59.0%(62명)이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응답자의 3.8%(4명)만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 시 발생하는 ‘지방세 감면’의 규모가 낮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5-9〉 지방세 감면 문항

8. 귀하께서는 지방정부에서 기업 유치 시 발생하는 '지방세 감면'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Options	매우 크다	크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Response Count	평균	표준편차
	10	52	39	4	0	105	3.65	0.71
(백분율)	9.5%	49.5%	37.1%	3.8%	0.0%	100%		

지방정부에서 기업 유치 시 발생하는 '부담금 감면' 규모가 크지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자의 절반인 49.5%(52명)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6.7%(49명)이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응답자의 3.9%(4명)만이 '부담금 감면' 규모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 부담금감면 문항

9. 귀하께서는 지방정부에서 기업 유치 시 발생하는 '부담금 감면'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Options	매우 크다	크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Response Count	평균	표준편차
	4	48	49	3	1	105	3.49	0.67
(백분율)	3.8%	45.7%	46.7%	2.9%	1.0%	100%		

기업 유치 시 발생하는 '입지보조금(임대료 감면, 분양가 차액보조 등)'의 규모에 대한 질의에는 응답자의 62.9%(66명)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입지보조금 문항

10. 귀하께서는 기업 유치 시 발생하는 '입지보조금(임대료 감면, 분양가 차액보조 등)'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Options	매우크다	크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낮다	Response Count	평균	표준편차
	7	59	32	5	2	105	3.61	0.77
(백분율)	6.7%	56.2%	30.5%	4.8%	1.9%	100%		

기업 유치 시 발생하는 ‘기타보조금(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규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6%(51명)가 크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 기타보조금 문항

11. 귀하께서는 기업 유치 시 발생하는 '기타보조금(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Options	매우 크다	크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Response Count	평균	표준편차
	4	47	44	9	1	105	3.42	0.74
(백분율)	3.8%	44.8%	41.9%	8.6%	1.0%	100%		

지방정부의 ‘금융지원제도(창업·경쟁력강화자금/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와 금리 등)’가 기업유치의 유인책이 되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9%(65명)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표 5-13〉 금융지원제도 문항

12. 귀하께서는 지방정부의 '금융지원제도(창업·경쟁력강화자금/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와 금리 등)'가 기업유치의 유인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Options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Response Count	평균	표준편차
	11	54	30	9	1	105	3.63	0.83
(백분율)	10.5%	51.4%	28.6%	8.6%	1.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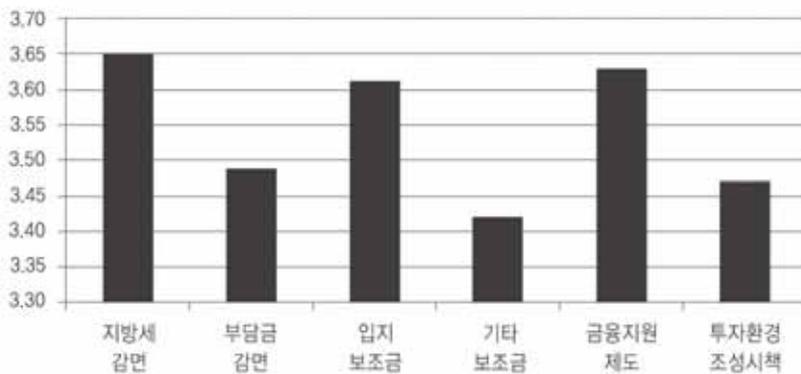
지방정부의 ‘투자환경조성시책(수출시장확대, 전문인력조달 등)’이 기업유치의 유인책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53.3%(56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표 5-14〉 투자환경조성시책 문항

13. 귀하께서는 지방정부의 ‘투자환경조성시책(수출시장확대, 전문인력조달 등)’이 기업유치의 유인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Options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Response Count	평균	표준편차
	4	52	38	11	0	105	3.47	0.73
(백분율)	3.8%	49.5%	36.2%	10.5%	0.0%	100%		

기업 유치 유인책에 대한 설문 결과를 평균값을 기준으로 종합하면, 관련 공무원들은 지방세감면, 입지보조금, 금융지원제도를 다른 감면 및 보조금 정책에 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 기업유치 유인책 선호도



유치기업과 지방재정간 관련성에 있어서는, 현재 유치된 기업 중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국내 대기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9.0%(62명)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33.3%(35명)가 국내 중소기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국내의 기업군이 지방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5〉 지방재정에 미치는 기업군 문항

14. 귀하께서는 현재 유치된 기업 중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Options	Response Percent	Response Count
국내 대기업	59.0%	62
국내 중소기업	33.3%	35
외국기업	6.7%	7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0%	1

현재 지역에 유치된 기업 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제조업이 85.7%(90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6〉 업종에 관한 문항

15. 귀하께서는 현재 지역에 유치된 기업 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Options	Response Percent	Response Count
제조업	85.7%	90
서비스업	9.5%	10
관광업	4.8%	5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0.0%	0

현재 지역에 유치된 제조기업 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계·부품이 50.5%(53명)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7〉 제조업종에 관한 문항

16. 귀하께서는 현재 지역에 유치된 제조업 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Options	Response Percent	Response Count
전기·전자	29.5%	31
석유·화학	8.6%	9
기계·부품	50.5%	53
건설업	2.9%	3

유치된 기업의 고용유발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2.8%(64명)이 고용유발효과가 크다고 응답하였다.

〈표 5-18〉 고용유발효과에 관한 문항

17. 귀하께서는 유치된 기업의 고용유발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Options	매우크다	크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낮다	Response Count	평균	표준편차
	8	58	35	4	0	105	3.67	0.67
(백분율)	7.6%	55.2%	33.3%	3.8%	0.0%	100%		

기업유치의 고용유발효과가 낮은 경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사무자동화와 타지역의 인력고용이 각 42.9%(45명), 41.9%(44명)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표 5-19〉 고용유발효과 저조 원인에 관한 문항

18. 기업유치의 고용유발효과가 낮은 경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Options	Response Percent	Response Count
사업중단	11.4%	12
사무자동화	42.9%	45
타지역의 인력고용	41.9%	44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3.8%	4

제3절 설문조사 결과로부터의 시사점

98개 산업단지 입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먼저 지역단위에서 기업유치를 통해 지방재정에 미치는 편익 효과를 보는 인식은, 대부분 고용증가, 소득증가, 인구 증가 등에 높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오늘날과 같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증대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및 국외로 부터의 기업 유치가 지역에서의 고용 증대로 이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용 증가는 개인의 소득증가와 함께 외부 인구의 유입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유치 정책은 결국 지역의 경제활성화 정책과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결과다. 이는 기업유치 정책은 지역의 경제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는 결과들이기도 하다.

또한, 비용효과 문항에 있어서는 ‘인프라 설비’나 ‘토지 조성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초기의 세팅 비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초기 비용은 필요한 것이 당연한 부분이 될 것이나, 다음 항목으로 높은 값을 얻은 세금감면이나 보조금 지출 및 혼잡과 공해 비용 등은 대부분 지방재정에서의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단지 조성이 중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될 경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에 따른 부담 또한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 부담을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적 집행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유치에 따른 지방세 수입의 안정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42%로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기업유치는 상술한 바와 같이 기업입지 인프라 지원 등 재정적 부담은 되나 지방세 세입에는 긍정적 시각이 높다는 결과다. 그러나 지자체간 경쟁은 지방재정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세입을 고려할 때 기업유치는 필요하나 지자체간 과다 경쟁으로 인한 재정 감소에

는 주의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유치기업들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도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설문에서 예시한 지방세감면, 부담금감면, 입지보조금이나 기타 보조금 지원, 금융지원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 중, 지자체의 재정 환경에 적합한 지원책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물론 설문 결과 입지보조금지원이나 금융지원, 지방세감면과 같은 지원제도가 선호도가 높다는 결과를 얻고는 있으나 이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이며 여타 부담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기업유치 시 가장 규모가 크다고 인식하는 제도는 입지보조금이었다. 이것은 임대료 감면이나 분양가 차액보조 등인데 고스란히 지방재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기업 유치 시 임대료 감면이나 분양가 차액보조와 같은 입지보조금, 그리고 다음으로 규모가 크게 느낀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감소를 염두에 두고 유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기업군은 역시 대기업으로 인식하며, 업종별로는 기계·부품과 같은 제조업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소규모의 비제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대기업의 제조업이 지방재정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전략적으로 대기업 유치에 성공할 수 있는 중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로드맵에는 재정적 측면이 반드시 고려된 계획이어야 할 것이다.



제1절 기업유치와 지방재정 관계 규명에 대한 분석 결과 — Ⅱ

기업유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것은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특히 조계근(2003)의 폐광 개발이후 소규모의 카지노사례와 조세부담, 최영출(1994)의 투자유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로서의 업종 및 종업원규모 등에 미치는 효과 등에서는 그 크고 작음은 있으나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는 큰 차이는 없다. 이와 같이 사례연구, 실증연구, 설문연구 등에서 기대한 결과가 기존연구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사례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음성군과 일본의 사례를 대상으로 실제 기업유치 현황과 유치된 기업들의 납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우리나라의 음성군은 기존의 수도권 규제에 따른 서울, 경기, 인천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일부 지역이 수도권 규제에 해당되면서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보았다고 인식되는 지역 중에 한 곳이었다. 즉,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해 가는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충북 지역 중 수도권에 가장 근접한 지역이 되며, 그 중 한 곳이 음성 지역이다. 음성지역은 2000년 중반 이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출하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조세 징수 실적에도 영향을 주어 최근 2007년 이후 2013년까지의 추이를 볼 때 증가세를 함께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2009년과 2010년에 일시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것은 전국에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특히 2007년 이후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영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2005년 이후 유치

된 8개의 기업들을 사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산세나 지방소득세의 경우 연 평균 증가율이 각각 23.1, 19.1 등으로 높았으며, 자동차세 4.1, 주민세 -21.4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산이나 소득과세 부분의 순증은 인정되나 소규모의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종업원들의 지역 내 유입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2장의 이론 분석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소규모 기업의 유치에서는 직접적인 세제지원보다는 세액공제제도와 같이 간접적인 지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실증분석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내 소득 창출과 고용의 역외 유출이 이러한 사례분석에서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8개 기업의 매출액과 4개 주요 세목의 납세 현황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역시 지방소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0.72와 0.69로 4개 세목 중 높은 상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의 사례에서는 광역과 기초의 기업 유치에 있어 정책적 역할 분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역은 기업유치 정책으로 보조금이나 조성금, 저리융자 제도 및 세금경감 등이 우선순위에 올라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6년말 시점의 기업유치보조금이나 조성금의 상한액을 2007년에 일부 지자체가 상향 조정할 경우를 볼 수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는 차별화 및 독자적 입지우대조치를 실시하며 입지정보 입수 및 파악에 전념하고 있다. 이러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기업 유치를 통해 기업들이 부담하게 되는 지방세수는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 고정자산세(토지, 가옥, 감가상각자산), 사업소세 순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요 지방세에 있어서 세수액의 추이를 보면 개인주민세, 고정자산세, 법인세, 소비세 등의 순으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업유치 노력과 지방세 수입과의 관계 규명을 한 제4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과 지방세 수입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세수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 탄력성은 1에 미치지 못하여 탄력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를 얻었다. 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는 지방세수 탄력성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지방세제의 구조적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의 지방세수 탄력성의 변화로 반영되지만, 그 크기는 크게 탄력적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통제변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정도를 반영해주는 취업률을 추가하는 경우, 취업률은 총 지방세수 중에서 취득세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재산세나 주민세의 변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이 지역의 경제력에 미치는 영향(경제력 증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경제력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 탄력성은 1에 미치지 못하여 탄력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는 지방소비지출 탄력성의 차이가 존재하며 수도권의 탄력성이 높았다. 대도시권과 비도시권 사이에도 지방소비지출 탄력성의 차이가 존재하며 대도시권의 탄력성이 높았다.

수도권과 대도시권에 소비지출이 집중화되는 역외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소비 시설 지원 및 지방문화시설 활성화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서 생산 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을 역외 지역, 특히 중소 도시 보다는 대도시권으로 이동하여 소비하는 패턴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교통이 발달해 가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제3장의 국내외 사례분석과 제4장의 실증분석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기업유치가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을 통해 지역 담당 공무원의 인식 조사 결과와 통계적 실증분석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제5장의 설문조사 결과,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재정에 미치는 편익효과에 대해서는 고용증가, 소득증대, 인구증가, 유관기관 유입의 순을 보였다. 하지만, 제3장과 제4장의 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주민세나 취업률과 같이 실제 인구 유입과 직접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변수들은 상관관계와 탄력성이 낮은 값을 얻었다. 이러한 결론으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중소기업의 기업유치는 실제 인구 유입과 관련된 세입 부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

이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책 입안에 있어 고용증가가 크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 유치로 인한 지방재정의 비용효과는 인프라설비, 토지조성비, 세금 감면과 보조금지출, 혼잡 및 공해 비용 등의 순으로 비용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비용효과 측면에서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 항목별로 10% 이하로 나타나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재정의 비용효과에 대해서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업유치에 따른 지방세 수입이 안정적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보통 이상으로 대답한 경우가 7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과도한 지방정부간 유치 경쟁은 67% 이상이 오히려 재정 감소를 발생시킨다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기업유치를 위한 경쟁적 재정지출은 지자체에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유치에 있어서 기업들이 선호하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입지보조금지원, 지방세 감면, 금융지원 등을 선호하는 경우를 알 수 있었다. 즉 금전적 지원이 무엇보다 기업유치에 있어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보다는 국내 대기업이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것은 제3장 및 제4장에서 분석한 결과와 같은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제2절 분석 결과들을 통한 시사점



전술한 분석 결과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업유치와 지방재정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론은 기업이 유치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

함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것은 기업유치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중요한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미 2000년대 중반에 그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정량 분석을 통해 입증된 보고서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기업이 유치된 이후의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은 많지 않았다. 즉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역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실제 좀 더 세분화 한다면 소득 증대와 지역내 총생산과 같은 거시적 지표들은 증가할 수 있으나, 소비 및 지출과 관련한 지표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다음의 시사점이다.

둘째, 기업유치는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실제 이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지출을 반드시 한다는 보장은 없다. 즉 앞서 4장의 4.1 및 4.2의 분석을 토대로 결론을 내려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은 지방세원의 확보에도 큰 효과가 없고, 지방경제력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 분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의 결과가 지방세원으로 연계될 수 있는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이 지방경제력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같은 인프라 확충 정책이 필요하겠다. 특히 세대별 소비 패턴이 다양하고 추구하는 소비목적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중, 대도시로의 소비를 위한 이동은 이동비용 지출이 발생하며 결국 지역과 소비를 위해 이동하는 지역민들 모두에게 큰 손해를 불러온다. 결국 지역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게 하도록 하는 정책(地産地消)이 지역마다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지산지소뿐만 아니라 지득지소(地得地所)를 통해 지역 내에서 소비 및 지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음성군의 사례에서와 같이 대부분 유치되는 기업들이 중소기업들로서 납세 실적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취득등록세, 재산세 등에 있어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그 본거지는 수도권에 두고 있는 경

우가 많다. 따라서 이렇게 음성군에 유치된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시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 기업들이 성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할 수 있을 때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케어가 필요하게 된다. 김종용외(2009)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후 관리이다. 많은 기업들이 유치된 이후 2, 3년 내에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한 사례들은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즉 기업 유치와 함께 유치 후 지역에서 인큐베이팅 될 때까지의 케어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 기간 동안에 행·재정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 때 필요한 것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기업을 유치 한 이후 케어기간 동안에 어떠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지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계획

이 연구는 기업유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사례분석에 있어서는 국내 음성군 한 지자체만 사례로 분석하였다. 특히 실제 조세부담부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의 납부 현황 분석이 필요하나 기업의 자료 구득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이며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초 자료가 충분히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한 지자체간 기업유치에 에너지(재정지출) 소비가 최소화 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외 사례분석에 있어서는 일본의 사례만 들고 있어 미주 및 유럽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실증분석에서 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된 자치단체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당초 계획하였던 98개 자치단체가 유치한 기업

대상 설문까지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다음 연구에서는 이 설문을 확대하고, 실제 유치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과 지자체간의 ‘온도차이’를 줄이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다. 아울러 경쟁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도 정치화를 통해 사례분석과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대표 사례들에 대한 심층 조사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정적 정책 제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구본봉, 2005. '2005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 해설',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권제87호 : 87-107
- 김남욱, 2012.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에 대한 조세법적 과제', 공법연구, 40(3) : 163-189
- 김덕준, 1995. '지방재정정책과 기업유치와의 상관관계-미국지방정부의 재정정책이 "High-Tech" 산업의 유치와 고용증대에 미치는 영향 및 한국지방정부에의 시사점', 『한국행정학회 1995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1995.4:3-34.
- 김병윤, 2009. '지방정부의 해외투자유치전략', 『벤처창업연구』, 한국벤처창업학회, 4(3) : 1-6
- 김선배·정준호·송우경, 2003. 『OECD 국가의 지역발전정책 동향과 사례』, 산업연구원:1-52
- 김은경, 2007. '수도권에 대한 재정,조세정책 실태 분석과 개선 방향',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9(2) : 133-160
- 김은경, 2009. 『국내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김제안·채종훈, 2003.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연구, 8(2) : 203-225.
- 김종웅·신두섭·김신호, 2008. '기업투자유치와 지방재정정책의 방향', 한국지방재정학회, 13(3) : 91-117.
- 김진범·이동우·류승한, 2013. 『기업도시정책의 성과와 한계 및 발전방향 연구』, 국토연
- 김홍래, 2005. 지방재정과 민간자본투자유치. 지방재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5 : 30-44.
- 라휘문, 2013. '취득세 감면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한국정책연구, 13(3) : 93-112
- 문병근·하종원, 2009.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재정정책학보, 11(1) : 59-89
- 박완규·이삭, 2013. '지방세 지출이 지역경제 및 지방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재정정책논집. 15(2) : 31-60

- 박재근·이원빈, 2005. 『기업의 지방투자 실태와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 1-83
- 박재근·변창욱·허문구·최형재, 2008. 『지역설비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산업연구원 : 1-132
- 박재근, 2010. 『지역투자 결정요인과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전략』 산업연구원 : 1-73
- 박 훈·이선화, 2014.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이전 시 개편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 권46호:1-80
- 배인명·양기용, 1995. ‘지역경제의 지방재정수입에 대한 효과분석 : 시정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9(3)
- 변필성·변세일·이동우외, 2009. 『지역경제 살리기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국토연구원 : 1-167
- 심재희, 2004. ‘사회간접자본과 지역경제성장의 상관성 분석’, 산업경제연구, 17(2) : 387-399
- 엄태호, 2013.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국가정책연구, 27(2) : 189-214
- 오병기, 2008. ‘지방세지출과 지방재정지출의 동태적 효과 비교분석’, 지방행정연구, 22(3) : 207-230
- 윤갑식, 201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업종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4(4) : 616-627
- 이보환, 2011.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정책방향’, 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41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병기, 2005.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기업투자환경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 이삼주, 2000. ‘지방세감면의 효과분석; 지방공단에 대한 기업유치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5(1) : 49-60
- 이삼주, 2013.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172
- 이영희, 김대영, 2008. 『기업관련 지방세제 개편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123
- 이영희, 2009. ‘기업유치와 지방세의 연계 강화 방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201-220
- 이재원·김성우, 2013.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한 지역경제 구조변화에 따른 지방세 수입의 영향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18(1) : 69-99
- 이홍식·김종혁, 2003. ‘외국인투자유치 전략 로드맵: 주요 내용과 향후과제’,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3(34) : 1-11.
- 임성일, 1991. ‘지방세수입 탄력성 추정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6(3) : 69-76

- 임성일, 2002. '지방자치와 외국자본 투자유치 ;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자본 투자유치 전략', 『지방재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 : 59-72
- 임성일, 2013. 지역 간 경제력 격차문제에 대한 접근 : 격차측정기준과 정부간 재정이전제도를 중심으로, 『응용경제』, 한국응용경제학회, 2 : 175-209
- 오연천, 1988. '지방재정론', 서울 : 박영사
- 오병기, 2009. '실물경제 위축이 지방세수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정책과제', 지방재정과 지방세, 17권 : 7-21
- 장덕희·김태일·라휘문. 2012. '2008년 감세정책이 시군 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에 미친 영향분석', 지방행정연구, 26(2) : 111-134
- 정성호, 2012. 지방세 비과세 감면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국가기관, 종교, 문화재를 중심으로. 강원발전연구원 : 1-60
- 정성호, 2013.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강원도 18개 시군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 1-31
- 정원식, 2004. '경남의 외국인투자유치정책과 정부간 관계 연구 - 정부간 관리 모형 설정을 위한 시론',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지방정부학회, pp.223~237.
- 조기현·박희정, 2002. 수도권 규제완화의 영향과 비수도권의 대응전략(충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연구원 내부자료.
- 조계근, 2003. '폐광카지노세가 강원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8(1) : 49-72
- 조택희, 2011. '경제활동과 지방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충북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6(2) : 31-61
- 최명희·조계근·변용환, 2006.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세수 증대효과-하이트맥주 홍천공장을 사례로』, 『세무와회계저널』. 한국세무학회, 7(3) : 101-125
- 최병호·주만수, 2010. '지역경제와 지방세수입의 연계성 분석:지방세수입의 소득탄력성 추정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4(4) : 235-260
- 최영출, 1994.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방안 -지방재정과급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1994년도 하계지역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행정학회, 1994.6 : 155-169.
- 최외출, 1995. '자치단체의 지역기업유치와 지원 및 관리정책의 체계화' 『한국지역개발학회지』, 한국지역개발학회, 7(1) : 89-118.

- 하능식·임성일, 2007. ‘지역의 인구구조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재정논집. 12(1) : 77-98
- 한국개발연구원, 2007.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행정서비스 혁신방안 연구 : 1-255
- 한국산업단지공단, 2011.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활성화 방안 : 1-99

외국 문헌

- Barro, R. J. 1991, “Economic Growth in a Cross Section of Countri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
- Blume, Lorenz, 2006, “Local Economic Policies as Determinants of the Local Business Climate: Empirical Results from a Cross-section Analysis among East German Municipalities,” *Regional Studies*, 40(4) : 321-333.
- Groves, H.M. and Kahn, C.H. 1952, “The stability of state and local tax yield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42(1) : 87-102
- Hall, Robert E. and Dale W. Jorgenson, 1967. “Tax Policy and Investment Behavior,” *American Economic Review*, 57, pp.391~414.
- Hayter, Roger, *The Dynamics of Industrial Location: The Factory, the Firm and the Production System*, John Wiley & Sons: New York, 1997. BOOK
- Hirschman, 1958.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Originally published: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BOOK
- Jorgenson, Dale W., 1953. “Capital Theory and Investment Behavior,” *American Economic Review*, 53, pp.274~259
- Judge, G.G, R.C. Hill, W.E. Griffiths, H. Lutkepohl, and T. C. Lee, 1982, *Introduction to the Theory and Practice of Econometrics* (2nd ed.), John Wiley & Sons.
- Lucas Jr., R. E. 1988,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2 : 3-
- Mernard, S. W., 1995, *Appli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Quantitative Application in the Social Sciences 07-106, Sage Publication
- Porter, Michael E., 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Harvard Business Review*, Mar.-Apr.

Porter, Michael E., 1998. "Clusters and the New Economics of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Nov.-Dec.

UNCTAD. 1998. World Investment Report 1998: Trends and Determinants, United Nations

武者加苗(2010), '企業誘致政策の地域経済へ与えた影響 : 三重県亀山市の事例から', 経済學研究, 関西学院大学, 41: 107-128

廣瀬信己(2008), '企業立地と地域経済の活性化 —大阪府、福岡県の取組みを中心に—', 『レファレンス』 2008. 8: 53-72.

企業活力研究所(2012), '企業の地方税負担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財団法人企業活力研究所.

前川 聡子・真鍋 雅史(2008), 法人課税と設備投資—租税調整済み資本{コストを用いた設備投資関数の推定による法人税減税の評価— KISER Discussion Paper Series No.13.

인터넷 사이트

<http://www.dalseo.daegu.kr/economy/pages/support/page.html?mc=2043>

<http://www.comis.go.kr/>

<http://www.kicox.or.kr/>

<http://www.industryland.or.kr/index.jsp>

■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raction for Corporate Investment in Local Government and the Local Finance

This study attempts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behavior to attract corporate investment and the result, local finance. After restarting local self-government in 1995, all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taken active interest in increasing local financial resource. They wanted to make virtuous circulation structure which starts from attracting investment of private corporations, and then continues to channel the profits made from the investment to increase local tax revenue, and then allows local governments to make more incentives to attract investment of private corporations with the increased local tax revenue. However from the central government's point of view, these trials among local governments would be ended with the zero-sum game. If "A" local government can win the investment from "B" corporate, "C" local government and "D" local government which are located near to "A" will lose the possibility of getting investment from the "B" corporate. Therefore, the competition to win the investment from the "B" corporate among the "A", "C", and "D" local governments could be harmful for local finance. This study tested it with empirical economic modeling. The other problem is "outflow" of local benefit. Although "A" local government wins the investment from "B" corporate, if the employees of "B" corporate in "A" local government use their salary in "C" local government, the endeavor of the "A" local government to increase local financial resource or to develop local economy through corporate investment is useless.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result of this study, the endeavor to attract corporate investment in local government could not increase local tax revenue enough. Moreover, the endeavor to attract corporate investment in local government could not develop

local economy enough either. From this results, it would have been better for local government in Korea to rearrange or change their strategy for attracting corporate investment. Some suggestions from the finding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or the central government, changing local tax system is needed to connect local government's endeavor and local finance. Also for the local government, building cultural facilities is needed to decrease "outflow" effect.

【부록1】

※ 기업유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무원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하는 「기업유치와 지방재정의 관계에 관한 분석」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개인정보 및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분석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엄격히 보호됩니다.

귀하의 고견이 소중한 연구 자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정성껏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두섭 수석연구원 02-3488-7371

이희재 수석연구원 02-3488-7341



1. 귀하께서 소속 중인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기업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하는 곳에 ☑하여 주십시오.

문1. 귀하께서는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재정에 미치는 편익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크다	크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낮다
①고용증가					
②소득증가					
③인구증가					
④유관기관유입					

문2. 귀하께서는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재정에 미치는 비용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크다	크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①토지조성비					
②인프라설비					
③세금감면/보조금지출					
④사업지원비용					
⑤혼잡/공해비용					
⑥자원고갈					

문3. 귀하께서는 현재 기업유치에 따른 지방세 수입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문4. 귀하께서는 지방자치단체들간 기업유치 경쟁이 오히려 지방재정의 감소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문5. 귀하께서는 유치기업이 지방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문6. 귀하께서는 유치기업 지원제도 중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방세감면 ② 부담금감면 ③ 입지보조금지원 ④ 기타보조금지원 ⑤ 금융지원

문7. 귀하께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지역 기반 중 어떤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제반노동력 ② 산업기반시설 ③ 입지 및 토지 ④ 자본융자제도

II. 귀하께서 소속 중인 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지원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하는 곳에 하여 주십시오.

문8. 귀하께서는 지방정부에서 기업유치시 발생하는 '지방세 감면'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크다	크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문9. 귀하께서는 지방정부에서 기업유치시 발생하는 '부담금 감면'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크다	크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문10. 귀하께서는 기업유치시 발생하는 '입지보조금(임대료 감면, 분양가 차액보조 등)'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크다	크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문11. 귀하께서는 기업유치시 발생하는 '기타보조금(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크다	크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문12. 귀하께서는 지방정부의 '금융지원제도(창업·경쟁력강화자금/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와 금리 등)'가 기업유치의 유인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문13. 귀하께서는 지방정부의 '투자환경조성시책(수출시장확대, 전문인력조달 등)'이 기업유치의 유인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Ⅲ. 귀하께서 소속 중인 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기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하는 하는 곳에 ☑하여 주십시오.

문14. 귀하께서는 현재 유치된 기업 중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군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내대기업 ② 국내중소기업 ③ 외국기업 ④ 기타

문15. 귀하께서는 현재 지역에 유치된 기업 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제조업 ② 서비스업 ③ 관광업 ④ 기타

문16. 귀하께서는 현재 지역에 유치된 제조업 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은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기·전자 ② 석유·화학 ③ 기계·부품 ④ 건설업 ⑤ 기타

문17. 귀하께서는 유치된 기업의 고용유발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크다	크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문18. 기업유치의 고용유발효과가 낮은 경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사업중단 ② 사무자동화 ③ 타지역의 인력고용 ④ 기타

〈 기초 조사 〉

1. 귀하의 소속된 자치단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 () 시·군·구
2. 귀하의 현재 소속된 조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 () 계
3. 위 소속에서 근무한 기간(개월)은 어떻게 되십니까
()개월
4. 귀하의 공무원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5급 ② 6급 ③ 7급 ④ 8급 ⑤ 9급
5. 귀하의 현재 직렬을 무엇입니까?
① 세무직 ② 일반행정직 ③ 기타 ()
6. 위 직렬에 소속되어 근무한 기간(연수)은 어떻게 되십니까
()년
7.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여성 ② 남성
8.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투자 유치와 지방재정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발행일 : 2014년 12월 31일

발행인 : 이 승 종

발행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Tel. 02)3488-7300

판매처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02)394-0337

<http://www.gpcbooks.co.kr>

인쇄처 : 크리커뮤니케이션

Tel. 02)2273-1775

※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는 있으나 무단전제나 복제는 금합니다.

ISBN 978-89-7865-402-9